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 】

2019.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8. 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65.3조원, 총지출 434.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0.6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7.1조원, 7.9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기하방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절한 운용 방향 및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9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4대 공적연금, 일자리사업,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 34건의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 결산 개요 / 1

- 1. 현 황 1
-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5
-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6

II. 주요 현안 분석 / 7

- 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분석 7
 - 1-1. ODA 사업관리 강화 필요성 10
 - 1-2. ODA 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필요 18

III. 개별 사업 분석 / 21

- 1. 대테러활동에 대한 인권보호 수단 확대 필요 21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26

[국민권익위원회]

I. 결산 개요 / 29

- 1. 현 황 29
-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3
-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4

차 례

CONTENTS

II. 개별 사업 분석 / 35

- 1. 보다 적극적인 공익신고제도 운영 필요 35
- 2. 행정심판 처리 시 법정기간 준수 노력 필요 38

[국가보훈처]

I. 결산 개요 / 45

- 1. 현 황 45
-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52
-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53

II. 주요 현안 분석 / 54

- 1. 보훈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54
- 2. 보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모색 필요 61

III. 개별 사업 분석 / 65

- 1.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상 문제점 65
- 2. 국가보훈처 보훈선양 및 홍보 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71
- 3. 독립운동사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문제점 75
- 4.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 적극 추진 필요 79

차 례

CONTENTS

[공정거래위원회]

I. 결산 개요 / 83

- 1. 현 황 83
-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87
-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88

II. 주요 현안 분석 / 89

-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분석 89
 - 1-1. 사익편취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90
 - 1-2. 카르텔에 대한 규제 철저 필요 95
 - 1-3.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한 철저한 조사실시 필요 100
 - 1-4.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고액 환급금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105
 - 1-5. 임의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결정 필요 110

III. 개별 사업 분석 / 112

- 1. 소비자 후생 증진사업 분석 112

[금융위원회]

I. 결산 개요 / 121

- 1. 현 황 121
-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29
-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0

차 례

CONTENTS

II. 주요 현안 분석 / 131

- 1.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건전성 검토 131
 - 1-1. 보증기금별 적정 운용배수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133
 - 1-2. 보증기금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 141
 - 1-3. 보증기금별 여유자금운용 검토 145
- 2. 금융중심지 성과 제고 필요 152
- 3.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결성 지연 문제 160
- 4.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강화 필요 165
- 5. 공적자금 상환 분석 170
 - 5-1. 정부재정과 금융권 간 공적자금 상환부담비율 논의 필요 172
 - 5-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수적 계획 수립 개선 필요 178

III. 개별 사업 분석 / 182

- 1. 서민금융지원 홍보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노력 미흡 182
- 2. 신용보증기금 분석 187
 - 2-1. 특별협약보증 및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실적개선 방안 강구 필요 187
 - 2-2. 보증연계투자의 적정 규모 재검토 필요 193
- 3. 판매장려수당 요율 변경 등 제도개선 필요 196
-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20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I. 결산 개요 / 205

- 1. 현 황 20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5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0%인 5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526	526	526	0	0	100.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556억 2,800만원이며, 이 중 97.4%인 5,409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4억 4,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46,050	546,050	544,662	530,309	207	14,145	97.4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15,837	15,837	10,967	10,671	0	296	97.3
합계	561,887	561,887	555,628	540,980	207	14,441	97.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자산은 3,054억 6,200만원, 부채는 9억 5,300만원으로 순자산은 3,045억 9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300만원, 일반유형자산 3,016억 1,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0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4억 2,300만원(2.1%) 감소하였다. 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환경부 이관에 따른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당기 구입에 의한 증가 및 감가상각 등 무형자산 41억 7,400만원 감소, 구출물기계장차집기비품 감소 등 일반유형자산 16억 7,0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8,000만원, 장기차입부채 2,500만원, 장기충당부채 8억 4,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400만원(6.3%)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비 미지급금 감소 등에 따른 유동부채 6,5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05,462	311,885	△6,423	△2.1
Ⅰ. 유동자산	33	979	△946	△96.6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301,617	303,287	△1,670	△0.6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2,767	6,941	△4,174	△60.1
Ⅵ. 기타비유동자산	1,045	678	367	54.1
부 채	953	1,017	△64	△6.3
Ⅰ. 유동부채	80	145	△65	△44.8
Ⅱ. 장기차입부채	25	73	△48	△65.8
Ⅲ. 장기충당부채	849	799	50	6.3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304,509	310,868	△6,359	△2.0
Ⅰ. 기본순자산	129,110	129,612	△2,289	△0.7
Ⅱ. 적립금 및 양여금	7,832	13,454	△310,452	△2.0
Ⅲ. 순자산 조정	167,566	167,802	13,898	3.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484억 7,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667억 7,100만원, 관리운영비 819억 9,700만원, 비배분비용 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억 9,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66억 3,900만원(6.1%) 증가한 4,667억 7,100만원이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 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266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보조비 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6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프로그램(4,666억 3,400백만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프로그램(1억 37백만원)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68억 500만원과 경비 351억 9,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466,771	440,132	26,639	6.1
가. 프로그램 총원가	466,771	440,132	26,639	6.1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II. 관리운영비	81,997	87,096	△5,099	△5.9
III. 비배분비용	1	105	△104	△99.9
IV. 비배분수익	295	198	97	49.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548,474	527,136	21,338	4.0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548,474	527,136	21,338	4.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3,108억 6,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045억 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63억 5,900만원(2.0%)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213억 3,8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46억 1,9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18억 8,9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 조달 등 재원의 조달 5,475억 6,3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억 3,600만원,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순자산의 증감 △46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10,868	313,157	△2,289	△0.7
II. 재정운영결과	548,474	527,136	21,338	26.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46,971	525,082	21,889	△13.9
IV. 조정항목	4,855	236	△4,619	△1,957.2
V. 기말순자산(I-II+III+IV)	304,509	310,868	△6,359	△2.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②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사업 등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2017년 9월에 결정되어 2018년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높은 홍보효과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홍보비 등 총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다.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사업은 정당원 시민사회 연수지원비 감액 등 총 7,000만원이 감액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 등이 있다. 동 사업은 국내 공공시설·대중밀집시설 점검 등 테러대응 준비를 위해 8,700만원이 증액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감시단’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8년 소요경비는 예비비로 집행할 것” 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1) 정무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0.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정무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0.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①국정운영의 기획·관리 및 평가, ②사회통합 및 안전관리의 지속 추진, ③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④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⑤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및 체계적 관리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ODA 일부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ODA 종합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실시되었고, 사업별 집행실적이 면밀히 관리되고 있지 않는 등 ODA 사업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ODA 사업추진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ODA/GNI 비율이 DAC 28개 국가 평균 대비 저조한 수준인 반면 ODA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인식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ODA 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인권보호관 위촉 이후 개선권고 실적이 부진하고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 역시 민원건수 저조 등의 사유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테러 활동 시 문제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분석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¹⁾는 ODA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네 가지 조건(①공여주체, ②공여목적, ③공여대상, ④공여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ODA로 분류하고 있다.²⁾

[ODA의 요건]

구 분	내 용
공여의 주체	○ 중앙·지방정부, 산하기관 등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
공여의 목적	○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지원
공여의 대상	○ OECD DAC 협력대상(143개국)에 포함된 개도국 및 ODA 적격 국제기구
공여의 조건	○ 차관은 수원국 소득그룹별 적격 증여율 ¹⁾ 이상 만족

주: 1) 증여율은 원조조건 유연성을 표시하기 위한 지표로, 대부의 이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증여의 경우 증여율이 100%이다. 적격 증여율은 ODA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리 설정된다.

구 분	적용할인율	적격 증여율
최빈개도국/저소득국	9%	45%
하위중소득국	7%	15%
상위중소득국	6%	10%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20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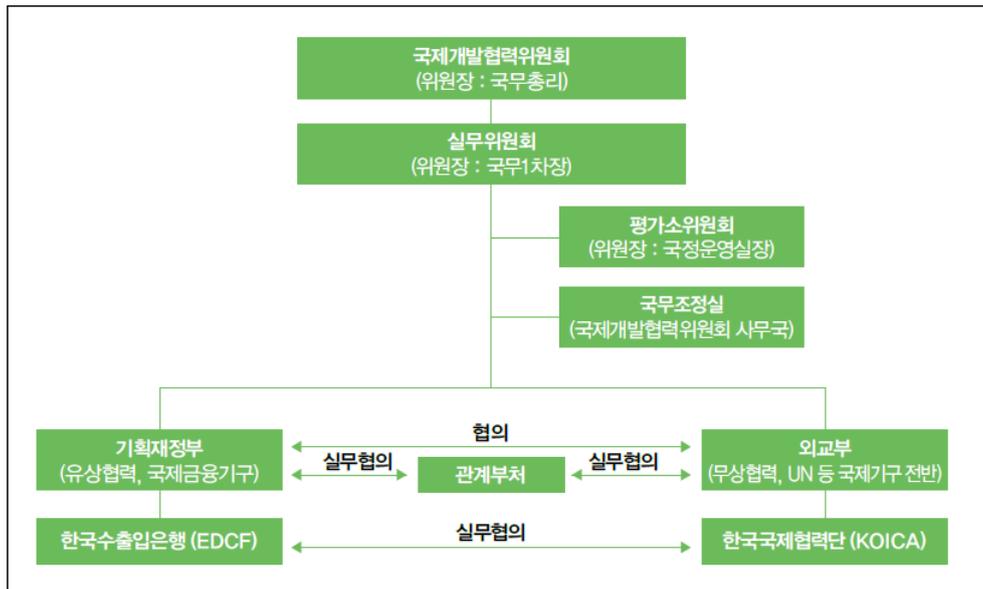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l@assembly.go.kr, 788-3736)

- 1) OECD의 3대 위원회 중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원조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ODA의 규모·질·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동료심사(Peer review), 평가(Evaluation)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2017.8.

ODA 사업방식은 ① 상환 조건 여부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② 전달경로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뉜다. 또한 ③ 원조의 구속성(입찰자격 제한여부 등) 여부에 따라 구속성 원조, 부분 구속성 원조, 비구속성 원조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 및 조정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의 3단계로 구분된다. ① 총괄 및 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각 분야별 사업을 심사 및 조정하여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③ 유상원조의 시행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일하며, 무상원조의 대표적인 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다. 그 외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ODA 사업추진체계]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2017.8.

시행기관은 ODA 사업을 편성코자 할 때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조정·심사(3~5월)를 받는다. 주관기관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유·무상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사·의결(5~6월)을 받는다.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심의를 거친 확정예산을 바탕으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있다.

[ODA 사업 수행 절차]

내용	시기
① 주관기관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시행기관에 통보	2월
↓	
② 각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3월
↓	
③ 주관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연간 국제개발 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	5월
↓	
④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작성	6월
↓	
⑤ 예산안 편성 및 심의(기재부·국회)	
↓	
⑥ 확정예산을 반영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12월

자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관계부처 합동,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2017.12)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을 통해 위원회 운영비와 업무협의·통합평가 및 해외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은 6억 5,700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3,1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억 8,800만원 중 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원은 이월, 8,500만원은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운영	657	657	31	0	688	592	11	85

자료: 국무조정실

1-1. ODA 사업관리 강화 필요성

가. 현황

2018년 ODA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정부는 총 2조 5,692억원을 집행하여 총 1,366개 사업(내역사업)을 추진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89.0%의 집행률을 보였다.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등 2개 부처는 100.0%의 집행률을 보였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3개 부처는 80.0% 이하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ODA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합 계	2,881,556	2,887,760	2,569,198	89.0
경찰청	3,642	5,162	4,607	89.2
고용노동부	14,393	14,393	11,505	79.9
공정거래위원회	70	70	66	9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909	18,909	18,909	100.0
관세청	5,124	5,124	5,093	99.4
교육부	67,891	67,891	67,790	99.9
국무조정실	9,445	9,858	8,929	90.6
국민권익위원회	77	77	75	97.4
국토교통부	12,217	13,133	11,262	85.8
기상청	5,035	5,035	4,879	96.9
기획재정부	1,232,694	1,247,135	1,036,866	83.1
농림축산식품부	80,400	80,400	80,126	99.7
농촌진흥청	20,999	21,000	20,759	98.9
문화재청	3,197	3,198	3,176	99.3
문화체육관광부	11,967	11,967	11,951	99.9
법무부	949	951	677	71.2
보건복지부	53,502	53,502	53,028	99.1
산림청	13,002	13,002	12,968	99.7
산업통상자원부	30,593	30,593	30,534	99.8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식품의약품안전처	2,309	2,309	2,235	96.8
여성가족부	6,445	6,445	6,310	97.9
외교부	1,223,061	1,212,028	1,115,584	92.0
인사혁신처	23,719	23,719	23,719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727	6,727	5,688	84.6
통계청	2,526	2,526	2,477	98.1
특허청	1,945	1,895	1,822	96.1
해양수산부	9,124	9,241	7,404	80.1
행정안전부	8,707	8,583	8,197	95.5
헌법재판소	38	38	26	68.4
환경부	12,849	12,849	12,536	97.6

주: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사업목록 기준 (지방자치단체 제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ODA 결산현황을 원조유형별로 보면 양자무상원조가 95.7%(1조 2,731억 원 집행)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고, 양자유상원조는 81.1%(8,579억원 집행), 다자원조는 87.7%(4,382억원 집행)의 집행률을 나타내었다.

[ODA 사업 결산현황(원조유형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양 자	무 상	1,335,234	1,329,996	1,273,120	95.7
	유 상	1,058,101	1,058,101	857,922	81.1
다 자		488,221	499,663	438,156	87.7
합 계		2,881,556	2,887,760	2,569,198	89.0

주: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사업목록 기준 (지방자치단체 제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ODA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ODA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ODA 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유상사업은 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전담하고 있고, 무상사업은 개별 기관(중앙부처 30개, 지방자치단체 11개)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들 사업의 총괄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종합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실제 사업실시 과정에서 위원회가 가지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조정 및 확정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인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동일한 세부사업 안에서 내역사업 간 사업규모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각 부처 차원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후보고 제도·절차 또한 미비하기 때문에 집행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한 예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018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개 내역사업에 대해 1,84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이는 수원국 요청 등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검토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후보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종합시행계획에 미포함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2018			2019 예산
		본예산	변경액	집행액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	2019~2026	0	84,000	82,475	55,573
콜롬비아 디지털 경제 및 연결성 개선 프로그램	2018	0	55,440	56,685	0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개선 프로그램차관	2018~2019	0	43,000	44,992	0

자료: 기획재정부

마찬가지로, 2018년 결산 현황을 보면 총 1,366개의 ODA사업(내역사업) 중 154개 사업에서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전·사후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ODA사업 예산액 대비 집행액 현황]

(단위: 건)

연도	총 사업수	예산액 대비 집행액			사업취소
		예산액=집행액	예산액 > 집행액	예산액 < 집행액	
2018	1,366	573	624	154	1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ODA 사업의 특성상 수원국 사정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집행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사후보고 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ODA 사업 추진구조 및 위원회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다음, 원조분절화로 인한 사업 중복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원조분절화란 국가를 대표하는 원조 전문기관 이외에도 다수의 원조기관이 한정된 원조재원을 선택·집중하지 않은 채 여러 수원국과 여러 분야에 개별적으로 분산지원 함으로써 원조 효과성을 저해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분절적 원조체계는 원조기관 간 불필요한 예산 확보 경쟁 및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원조성과에 대한 압력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원국의 개발수요나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을 어렵게 만들어 수원국의 우리나라 원조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30개 부처,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집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원조기관 간 협업부족으로 원조사업간 통합연계가 미흡

하고, 사업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며, 현지 사무소 중복 등으로 수원국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ODA 원조담당기관 현황]

ODA 형태	담당기관	원조분절화로 인한 현상
양자유상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① 원조사업 간 통합연계 부실 ② 사업관리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화 ③ 현지사무소 중복운영 등 비효율 ④ 수원국과의 협의 혼선 및 불만야기 ↓ 원조효과 저해
양자무상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30개 중앙부처, 11개 지자체 등	
다자	국제금융기구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UN 등 기타 국제기구 : 외교부 등 18개 개별기관	

자료: 감사원,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2017.4) 재구성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권한미비, 시행기관의 반발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통합·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7~2019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연계 및 중복사업 통합·조정 현황을 보면 ①부처의 사업 계속시행 유무와 관련이 적은 사업 간 연계·사업내용 조정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②사업 존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처 간 사업통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 역시 2018.11월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2017년 감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유사중복 사업 조정이 미흡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

[ODA사업 조정 현황]

(단위: 건, 개)

구 분		2017	2018	2019
사업 간 연계	유·무상 간	17(45)	12(33)	12(28)
	무상 간	7(17)	12(27)	38(77)
사업내용 조정	부처 간	15(34)	2(5)	2(4)
	부처 내	0(0)	0(0)	4(8)
사업 통합	부처 간	1(2)	0(0)	1(2)
	부처 내	0(0)	8(16)	3(8)

주: 1.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기준
 2. 괄호안은 연계·조정·통합의 대상이 된 사업수를 의미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www.odakorea.go.kr)

3) 감사원,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2018.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⁴⁾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① 기본계획·종합시행계획 수립, ② ODA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사업 준비단계와 평가단계에 대한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③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조정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가 총괄·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ODA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원조분절화 등 현 사업추진체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ODA 사업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사업의 집행·실집행실적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8년 ODA사업 결산현황을 사업시행기관별로 보면 한국수출입은행(대외협력기금을 통한 직접사업)은 8,892억원을 집행하여 80.9%의 집행률을 보였고, 개별 부처가 직접 수행한 사업의 집행액은 총 7,736억원(집행률 91.8%)으로 나타났다.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ODA 사업 결산현황(시행기관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한국수출입은행	1,089,794	1,099,028	889,200	80.9
부처 직접사업	828,476	842,326	773,639	91.8
한국국제협력단	728,420	717,445	681,398	95.0
부처 간접사업	227,114	221,209	217,347	98.3
합 계	2,789,287	2,780,897	2,495,299	89.7

주: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사업목록 기준 (지방자치단체 제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나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 수행한 사업을 제외하면 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집행한 사업은 95.0%의 집행률(6,814억원)을 보였고, ② 개별부처가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기타 간접사업의 집행률은 98.3%로 직접 사업의 집행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처나 KOICA 등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사업시행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의 경우 실집행을 기준으로 실적을 집계하는 것이 보다 성과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재정투입의 효과는 사업의 최종 집행단계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실집행실적에 앞서 집행실적 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다. ODA 통합관리시스템에는 현재도 집행률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있으나, 이에 대한 위원회의 법적 관리 권한이 미비한 상황으로 유상·무상사업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다. ODA 집행·실집행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19년 신규사업으로 ODA 통합관리시스템⁵⁾ 고도화(2019년도 예산 5억원)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동 시스템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시스템 구축 이후 효

5) OECD DAC 통계보고와 개별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2014년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시스템을 위탁운영중이다(매년 5천만원 내외 예산 편성).

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각 부처 사업담당자의 성실한 정보입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차년도 예산 편성 등에 가점·감점을 부여하는 등 정보입력 유인체계 마련도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ODA 통합관리시스템 개편방향]

구 분	현행 시스템	개편 시스템
관리주체	한국수출입은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보고 기능 위주 ○사업계획 입력기능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중복사업 관리기능 강화 ○사업계획 포함 전주기 정보입력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2. ODA 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필요

가. 현황

2018.4.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29개국)들의 2018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하였다.⁶⁾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양자원조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억불 증가한 23.5억불을 기록하여 DAC 국가 중 15위(2017년 15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5%로 전년(0.14%) 대비 0.01%p 증가하였다.⁷⁾

[ODA 실적(OECD 발표, 잠정)]

(단위: 백만불, %)

구 분	2017	2018	증감률	비중
■ ODA (a+b)	2,152	2,351	9.2	100.0
- 양자간 ODA (a)	1,566	1,728	10.4	73.5
무상원조	1,034	1,126	8.9	(65.2)
유상원조	532	602	13.3	(34.8)
- 다자간 ODA (b)	586	623	6.2	26.5
■ ODA/GNI	0.14	0.15	-	-

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2014년12월 양허성 차관의 적격기준 및 측정기준을 변경하였음
(2018년부터 적용) (기준) 순지출방식(총지출액-총상환액) 측정
(변경) 증여등가액방식(총지출액-현재가치로 환산한 원리금) 측정
2. 유상원조 인정비율, 집계시점의 차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등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ODA 인정금액 등으로 결산액과 OECD 발표 실적 간 차이 발생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편, 국제사회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GNI 대비 0.7%로 확대할 것을 규범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로도 재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3차 및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안건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2011년 부산원조총회’에

6) 2018년 ODA 확정통계는 2019년 12월에 발표

7)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1,530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평균은 0.31%이다.

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 달성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나, 2015년 11월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채택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5개년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0.20% 달성으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연차별 ODA/GNI 비율 목표 및 실적]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ODA/GNI	목표	0.15	0.16	0.17	0.18	0.20
	실적	0.15	0.14	0.15	-	-

주: 실적은 증여등가액 기준

자료: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시 GNI 대비 ODA 비율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2016년 이후 0.1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DAC 28개 국가들의 평균 ODA/GNI 비율(2018년 0.31%)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0% 달성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곧 2021~2025년 ODA의 방향을 정하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저조한 실적은 계획 수립에 있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ODA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인식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연구용역⁸⁾에서 ODA 전문가 집단은 2020년까지 0.2% 수준으로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대다수(69.6~75.2%)인 반면, 일반시민은 현재 수준의 지원이 적절(64.4%)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25.8%)한 비율이 높아 ODA에 대한 인식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8) 연구용역 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국제사회의 규범적 목표, 정부의 정책목표, 전문가·일반국민의 인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ODA 총괄기관(국가개발협력위원회) 및 주관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ODA 적정규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 분		현재(0.14)보다 축소	현재수준(0.14) 유지	목표수준(0.2) 까지 확대	권고수준(0.7) 까지 확대
전문가	1차(2017)	2.6	11.9	69.6	15.9
	2차(2018)	2.0	14.0	75.2	8.8
일반시민(2017)		25.8	64.4	8.7	1.1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III

개별 사업 분석

1

대테러활동에 대한 인권보호 수단 확대 필요

가. 현황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¹⁾은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대테러 인권보호관²⁾³⁾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예산 3억 6,700만원 중 3억 3,400만원을 집행(91.0%)하였고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인권보호관 지원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권보호관 지원	367	367	0	0	367	334	0	33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동 사업에 인권보호관 업무지원을 위한 인권보호관 지원반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있다. 인권보호관 지원반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4급 1인, 5급 2인 및 기간제근로자 2인, 전문임기제 나급 1인으로 구성된다.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l@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035-312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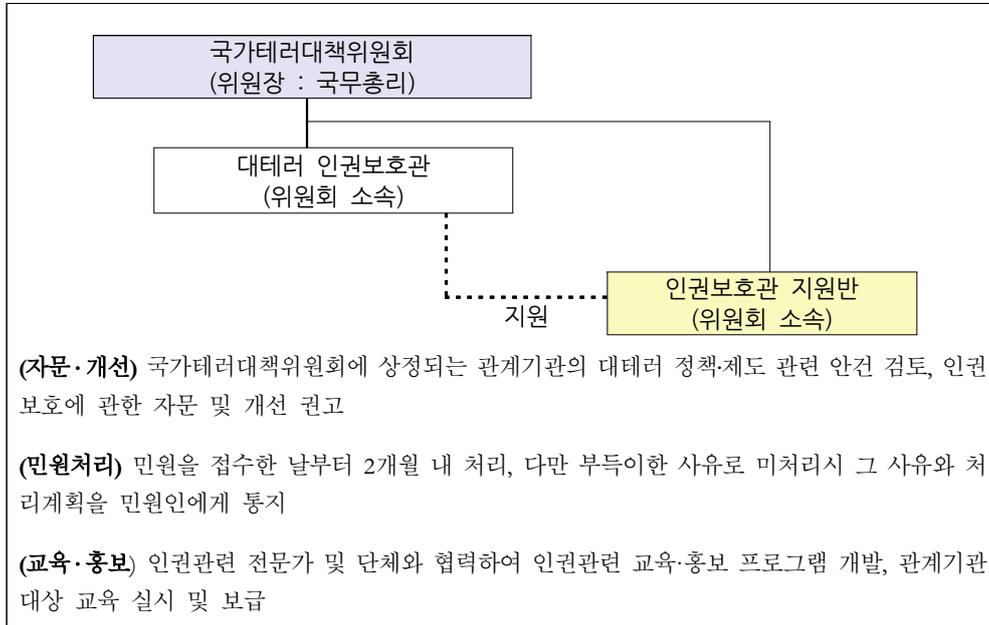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①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 집행절차]



자료: 국무조정실

나. 분석의견

대테러 활동 시 문제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인권보호관 제도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이다. 따라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해당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직무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하며 인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이고 구속력 있는 장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인권보호관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테러대책위원장(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데,⁴⁾ 2016년 7월 인권보호관 위촉 이후 2019년 7월 현재까지 시정권고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⁵⁾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9조(시정 권고) ① 인권보호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 역시 민원건수 저조 등의 사유로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비목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예산 불용률은 2017년 대비 상당부분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인권보호관 지원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조직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018회계연도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인건비	58	43	15	25.9	117	116	1	0.9
운영비	219	162	57	26.0	147	132	15	10.2
여비	15	2	13	86.7	7	3	4	57.1
업무추진비	15	4	11	73.3	9	6	3	33.3
직무수행경비	22	22	0	0.0	22	19	3	13.6
연구용역비	0	0	0	-	30	26	4	13.3
고용부담금	5	3	2	40.0	5	4	1	20.0
자산취득비	0	0	0	-	30	28	2	6.7
합계	334	236	98	29.3	367	334	33	9.0

자료: 국무조정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8년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동 연구용역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보호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구 분	내 용
제 목	○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연구용역 보고서
기 간	○ 2018-06-14 ~ 2018-09-11
비 용	○ 2,600만원
제도개선 제언	○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때부터 인권보호관과 사전 협의 진행 ○ 대테러 인권보호관 외에 3인의 위원 신설하여 업무 보조 ○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접근권 강화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5) 국무조정실은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시정권고 실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현행법 체계를 보면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어 있는데, 인권보호관을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감시·감독대상자와 감독자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의 역할·조직 강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인권보호관 제도와 함께 해외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독일의 “G-10 위원회(G-10-Kommission)”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개인 통신을 감시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판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은 연방의회에서 임명하며(임기 4년) 행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⁷⁾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조사·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도 입법·행정·사법 기관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다.⁸⁾ 인권보호관은 현행법에 따라 조직 내부에서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사항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

-
- 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 사실은 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시, 감독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논리에 부합한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 정부는 대테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 집행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46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시연구사업을 통한 개원 기념 행사 추진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49
3	한국행정연구원의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비를 사용한 청소 인력 등 경비 집행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59
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일반연구사업비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62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비를 활용한 학술대회 후원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65
6	한국교육개발원의 기본연구사업을 통한 국제회의 사업인 OECD 정례회의 사업 추진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73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퇴직자 석좌연구위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지급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81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한 기관 역사서 편찬 지양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88
9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고객만족도 조사, 채용 관련 비용 집행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92
10	한국교통연구원의 기관장 관사 매입 비용 등의 연구개발적립금 지출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100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채용세미나 실시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111
12	한국개발연구원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다 음연도에 사용될 전자자료 구독비용의 집행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118
13	통일연구원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122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설비를 통한 수도권 사회조사센터 임차시설 관리비 등 집행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129
15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정보시스템 관리 미흡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132



국민권익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억 4,100만원이며, 4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0.1%인 3억 5,700만원을 수납하고 8,9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41	841	841	445	357	89	0	80.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68억 2,100만원이며, 이 중 98.3%인 755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3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6,821	76,821	76,821	75,518	0	1,303	98.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라.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산은 308억 8,000만원, 부채는 900만원으로 순자산은 308억 7,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8억 6,000만원, 일반유형자산 222억 200만원, 무형자산 69억 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9억 1,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2억 6,900만원(6.8%) 감소하였다. 이는 감가상각 등에 따른 무형자산 21억 9,2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00만원(50.0%) 증가하였다. 이는 무기 계약직의 퇴직연금 가입 방식을 확정기여형(DC형)에서 확정급여형(DB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 9백만원 증가, 전기에 계상한 소송충당부채 6백만원이 당기에 환입됨에 따라 소송충당부채 6백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0,880	33,149	△2,269	△6.8
Ⅰ. 유동자산	860	1,054	△194	△18.4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22,202	22,266	△64	△0.3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6,905	9,097	△2,192	△24.1
Ⅵ. 기타비유동자산	913	733	180	24.6
부 채	9	6	3	50.0
Ⅰ. 유동부채	0	0	0	0.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0
Ⅲ. 장기충당부채	9	6	3	5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30,872	33,143	△2,271	△6.9
Ⅰ. 기본순자산	13,678	13,678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2,336	14,603	△2,267	△15.5
Ⅲ. 순자산 조정	4,858	4,862	△4	△0.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32억 8,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832억 2,300만원, 비배분비용 1억 4,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7,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5억 1,800만원(9.9%) 증가한 832억 8,800만원이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유 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 31억 2,000만원 및 전년도에 발생한 비배분 손실 72억 8,000만원 및 비배분수익 29억 4,700만원이 당기에 발생되지 않아 비배분 손익이 전년도 대비 43억 9,8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 832억 2,300만원은 모두 국민권익증진 프로그램원가이다.

그 밖에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집계된 원가는 없으며, 비배분비용은 전기오류수정손실 1억 2,100만원, 자산폐기손실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83,223	80,103	3,120	3.9
가. 프로그램 총원가	83,223	80,103	3,120	3.9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II. 관리운영비	0	0	0	0.0
III. 비배분비용	142	2,947	△2,805	△95.2
IV. 비배분수익	77	7,280	△7,203	△98.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3,288	75,770	7,518	9.9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83,288	75,770	7,518	9.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331억 4,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08억 7,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2억 7,100만원(6.9%)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832억 8,8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4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810억 2,100만원으로 집계되어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 수익 및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813억 7,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환입 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3,143	29,109	4,034	13.9
II. 재정운영결과	83,288	75,770	7,518	9.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1,021	79,809	1,212	1.5
IV. 조정항목	△4	△4	0	0.0
V. 기말순자산(I-II+III+IV)	30,872	33,143	△2,271	△6.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권익행정시스템 운영(정보화), ② 권익개선창구 운영, ③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등이 있다.

권익행정시스템 운영사업은 시급하지 아니한 외부연계 관련 구축예산 3억원이 감액(415백만원→115백만원)되었고, 권익개선창구 운영사업은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의 운영실적 저조에 따른 유희인력 발생 등으로 위탁운영예산 4,000만원이 감액(3,795백만원→3,755백만원)되었으며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일부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어 3,000만원이 감액(320백만원→290백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사업이 있다.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사업은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억 600만원이 순증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확충, 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청렴도 제고, ③ 국민고충의 실질적 해소 노력 확대, ④ 국민과의 최접점 소통 강화, ⑤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으면 사실확인을 마친 후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부처 등 소관 공공기관에 해당 내용을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근거 없이 송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둘째, 「행정심판법」은 재결기간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7~2018년 처리기간 현황을 보면 90일을 초과하는 사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평균재결기간도 82.6일로 전년 대비 5일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보다 적극적인 공익신고제도 운영 필요

가. 현황

공익신고제도 운영 사업¹⁾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을 실시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현액 23억 5,800만원 중 2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공익신고제도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익신고제도 운영	2,051	2,051	0	307	2,358	2,355	0	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나. 분석의견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에 공공기관 송부제도를 둬으로써 공익신고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통제하기 위해 관련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2011년 시행되었다.²⁾ 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관심으로 2014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일명 과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c@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6-365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되어 동일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를 10건 이하로 제한(*14.10월)하고, 내부 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제한(*16.1월)하는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는 연간 2,000~4,000건 가량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공익신고 처리 현황]

(단위: 건)

분야	처리 유형			
	소계	이첩	송부	종결
합계	27,927	644	14,492	12,791
2011~12	1,340	112	674	554
2013	2,509	73	1,427	1,009
2014	8,239	168	6,569	1,502
2015	7,089	90	3,190	3,809
2016	2,560	79	1,155	1,326
2017	2,238	85	534	1,619
2018	3,952	37	943	2,97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으면 사실확인을 마친 후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그런데 동법 시행령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부처 등 소관 공공기관에 해당 내용을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근거 없이 송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⁴⁾

3)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 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제도 도입이후 2018.12.31.까지 총 14,492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송부되었다. 이 중 사건을 송부 받은 공공기관이 공익침해 혐의가 있다고 본 건수는 6,238건(47.3%)으로 같은 기간 총 이첩건수(644건)의 10배에 달한다.

한편, 1,308건의 송부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익침해여부를 권익위로 통보하지 않아 사건이 미종결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이첩과 달리 송부 건에 대해서는 공익침해 혐의가 있는 때에만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공익침해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부 사건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⁵⁾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사안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공익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수사기관 이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송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송부처리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은 공익침해 여부와 무관히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를 둘 필요가 있다.

[송부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분야	처리 유형			
	송부	처리결과 미통보	권익위로 통보	
			공익침해 혐의 없음	공익침해 혐의 있음
합계	14,492	1,308	6,946	6,238
2011~12	674	-	344	330
2013	1,427	163	529	735
2014	6,569	457	3,242	2,870
2015	3,190	300	1,726	1,164
2016	1,155	100	489	566
2017	534	62	225	247
2018	943	226	391	32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가. 현황

행정심판 운영 사업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 9억 9,500만원 중 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행정심판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심판 운영	995	995	0	0	995	977	0	1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나. 분석의견

행정심판 운영사업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행정심판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을 초과하고 있어 기한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2018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23,043건을 접수하여, 25,153건을 처리하였다. 인용률은 16.8%로 2017년보다 1.0%p 상승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운전면허사건이 접수건의 대부분(7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필요적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²⁾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c@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1137-370

2)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최근 7년간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취하·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12	25,317	24,987	3,983	19,974	1,030	15.9	1,015
2013	25,570	24,405	4,227	18,820	1,358	17.3	1,089
2014	25,301	25,270	4,131	19,164	1,975	16.3	1,068
2015	24,425	24,947	3,933	18,627	2,387	17.4	1,433
2016	26,730	26,080	3,901	19,315	2,864	16.8	1,699
2017	27,918	25,775	3,584	19,105	3,086	15.8	1,307
2018	23,043	25,153	3,814	18,928	2,411	16.8	1,401

주: 접수건수와 심리·의결건수가 상이한 이유는 전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이 차년도에 심리·의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사건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운전면허사건		보훈사건		일반사건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접수	비율
2016	20,747	77.6	1,372	5.1	4,611	17.3
2017	20,742	74.3	1,445	5.2	5,731	20.5
2018	16,827	73.0	1,304	5.7	4,912	21.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은 재결기간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이러한 법규정도 불구하고 2017~2018년 처리기간 현황을 보면 90일을 초과하는 사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평균재결기간도 82.6일로 전년 대비 5일이 늘어났다.

3)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도별 사건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

구 분	총 처리건수	평균 재결기간	처리기간 내		처리기간 초과
			60일 이내	61~90일	90일 경과
2016	26,080	75.55일	15,101 (57.9)	6,553 (25.1)	4,426 (17.0)
2017	25,775	77.16일	15,981 (62.0)	3,986 (15.5)	5,808 (22.5)
2018	25,153	82.61일	15,774 (62.7)	3,277 (13.0)	6,102 (24.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접수 건수에 비해 실무인력 증원이 뒤따르지 않아 평균 재결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재결 소요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8년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직제 개정을 통해 운전심판팀(기존 운전심판 TF)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목표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심판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로 평균재결기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목표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위사업인 국민권익구제⁴⁾ 사업은 행정심판 운영 세부사업 하나로만 구성된다. 동 단위사업의 성과목표는 ①평균재결기간과 ②현장증거조사율이다. 증거조사율은 2018년 목표치인 1%를 달성하였으나 평균재결기간은 2018년 목표치인 73.5일을 초과한 82.6일로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균재결기간의 경우 2016년 이후 재결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2019년 목표치를 상향수정 하고 있다. 동 성과지표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하향지표인 점, 「행정심판법」이 원칙적인 재결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년도까지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하여 성과목표까지 완화해서 설정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⁵⁾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다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노력이 필요하다.

4) 코드: 일반회계 1137

5)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의 경우에는 평균재결기간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동일한 73.5일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국민권익구제(단위사업) 최근 3년간 성과달성도]

(단위: 건, %)

성과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평균재결기간	목표	65.2	73.5	73.5	81.0
	실적	75.6	77.2	82.6	-
	달성도	84.0	97.5	90.3	-
현장증거조사율	목표	-	-	1.00	1.10
	실적	-	-	1.09	-
	달성도	-	-	109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6억 9,000만원이며, 111억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1.7%인 68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38억 2,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억 2,7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580	7,580	7,580	11,052	6,801	3,826	425	61.5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10	110	110	51	49	-	2	96.1
합계	7,690	7,690	7,690	11,103	6,850	3,826	427	61.7

자료: 국가보훈처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2,962억 6,600만원이며, 이 중 97.5%인 5조 1,647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 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59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263,929	5,263,929	5,272,647	5,141,765	5,583	125,299	97.5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1,715	21,715	21,715	21,054	-	661	97.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04	1,904	1,904	1,904	-	-	100
합계	5,287,548	5,287,548	5,296,266	5,164,723	5,583	125,960	97.5

자료: 국가보훈처

나.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167억 2,200만원이며, 1,028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2.3%인 846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171억 2,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억 9,7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보훈기금	209,591	209,591	209,591	97,586	79,369	17,120	1,097	81.3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7,131	7,131	7,131	5,290	5,281	9	-	99.8
합계	216,722	216,722	216,722	102,876	84,650	17,129	1,097	82.3

자료: 국가보훈처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2,241억 2,700만원이며, 이 중 97.7%인 2,188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62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보훈기금	129,175	134,797	134,894	130,037	-	4,857	96.4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69,528	89,330	90,217	88,824	-	1,393	98.5
합계	198,703	224,127	225,111	218,861	-	6,250	97.2

자료: 국가보훈처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1,329억 1,300만원 (59.3%)이 감소한 914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65억 5,300만원 (28.6%)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450	7,690	7,690	6,849	△841	4,399
기금	125,602	216,722	216,722	84,650	△132,072	△40,952
합계	128,052	224,412	224,412	91,499	△132,913	△36,553

자료: 국가보훈처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총지출은 세출예산액 대비 1,280억 9,100만원(2.3%) 이 감소한 5조 3,83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605억 9,400만원 (9.4%)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4,788,251	5,287,548	5,287,548	5,164,723	△122,825	376,472
기금	134,739	224,127	224,127	218,861	△5,266	84,122
합계	4,922,990	5,511,675	5,511,675	5,383,584	△128,091	460,594

자료: 국가보훈처

라.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보훈처의 자산은 1조 9,268억 5,000만원, 부채는 570억 8,1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8,697억 6,9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78억 1,200만원(0.9%) 감소한 것으로 유동자산 2,773억 1,500만원, 투자자산 3,508억 5,700만원, 일반유형자산 1조 2,894억 700만원, 무형자산 45억 5,2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7억 1,9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자산의 감소는 유동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1,177억원 증가한 반면 유동성대체 및 용자금 감소 등에 따른 투자자산의 1,354억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20억 1,700만원(3.7%)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50억 4,100만원, 장기충당부채 5억 7,9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514억 6,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의 증가는 친일귀속재산 추가 매각에 따른 선수금 3억원과 기타유동부채 15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926,850	1,944,662	△17,812	△0.9
Ⅰ. 유동자산	277,315	169,342	107,973	63.8
Ⅱ. 투자자산	350,857	486,264	△135,407	△27.8
Ⅲ. 일반유형자산	1,289,407	1,279,693	9,714	0.8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Ⅴ. 무형자산	4,552	4,357	195	4.5
Ⅵ. 기타비유동자산	4,719	5,006	△287	△5.7
부 채	57,081	55,064	2,017	3.7
Ⅰ. 유동부채	5,041	3,216	1,825	56.7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
Ⅲ. 장기충당부채	579	386	193	50.0
Ⅳ. 기타비유동부채	51,461	51,462	△1	-
순 자 산	1,869,769	1,889,598	△19,829	△1.0
Ⅰ. 기본순자산	848,492	848,492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574,259	592,721	△18,462	△3.1
Ⅲ. 순자산 조정	447,018	448,385	△1,367	△0.3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조 2,427억 2,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5조 2,063억 4,200만원, 관리운영비 1,179억 1,600만원, 비배분비용 86억 7,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37억 9,900만원, 비배분수익 195억 500만원, 비교환수익 등 369억 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868억 3,800만원(10.2%) 증가한 5조 2,796억 2,8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가보훈처 사업예산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보훈심사 및 보상 프로그램(4조 1,276억 100만원)과 보훈의료복지 프로그램(7,952억 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24억 200만원과 경비 355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75억 7,900만원과 대손상각비 5억 7,000원, 기타비용 4억 1,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172,543	4,704,147	468,396	10.0
가. 프로그램 총원가	5,206,342	4,738,178	468,164	9.9
나. 프로그램 수익	33,799	34,031	△232	△0.7
II. 관리운영비	117,916	114,022	3,894	3.4
III. 비배분비용	8,674	3,366	5,308	157.7
IV. 비배분수익	19,505	28,745	△9,240	△32.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5,279,628	4,792,790	486,838	10.2
VI. 비교환수익 등	36,906	50,882	△13,976	△27.5
VII. 재정운영결과(V - VI)	5,242,722	4,741,908	500,814	10.6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1조 8,895억 9,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8,697억 6,9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98억 2,900만원(1.0%)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5조 2,242억 5,900만원, 조정항목이 △13억 6,700만원이었으나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5조 2,427억 2,2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5조 2,316억 5,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74억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6억 5,3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7억 2,40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889,598	1,839,183	50,415	3
II. 재정운영결과	5,242,722	4,741,908	500,814	1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224,259	4,809,221	415,038	9
IV. 조정항목	△1,367	△16,897	15,530	92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869,769	1,889,599	△19,830	△1

자료: 국가보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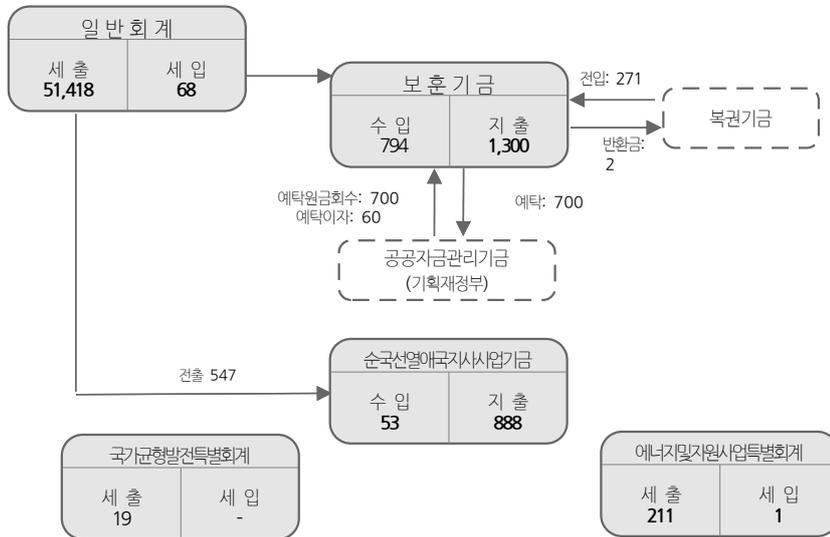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전출금 546억 8,600만원, 복권기금에서 보훈요양원 건립,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중상이자 편의시설 설치·공급 사업을 위하여 보훈기금으로 271억원 전출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1. 총계 결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②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 등이 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은 20억원이 감액(50억원→30억원)되었고,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3억 3,000만원이 감액(19억원→15억 7,0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②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등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은 2019년 예산을 일부 앞당겨 조기 배정하기 위하여 46억 2,900만원(27억 6,300만원→73억 9,200만원) 증액하였고,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지방보훈회관 신규건립을 위하여 28억 7,500만원(12억 5,000만원→41억 2,500만원) 증액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지원 사업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훈단체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1) 정무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2) 정무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3)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국가보훈처는 ①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②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③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④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2018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사업은 최초 총사업비 확정 이후, 건립주체·사업추진방식 및 총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사업 추진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고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불용·이월되었다.

둘째,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등을 통해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사랑 배움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가 질적 수준이 낮고 분류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콘텐츠 이용 횟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1

보훈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보상금·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예산은 4조 2,026억원으로 13억 5,000만원을 이용하여 예산현액은 4조 2,012억원이다. 이는 국가보훈처 전체 세출예산 5조 3,186억원의 79%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 중 4조 1,20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803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년 보훈급여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내역변경, 조정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보훈급여금 합계	4,202,598	-	△1,350	±10,800	±5,500	4,201,248	4,120,914	-	80,334
보상금	2,743,789	-	△1,350	△6,800	-	2,735,639	2,695,588	-	40,051
- 보상금	2,743,789	-	△1,350	△6,800	-	2,735,639	2,695,588	-	40,051
수당	1,434,940	-	-	△4,000	±5,500	1,430,940	1,394,133	-	36,807
- 간호수당	55,500	-	-	-	100	55,600	55,512	-	88
- 생활조정수당	16,364	-	-	-	5,400	21,764	21,670	-	94
- 6.25자녀수당	235,570	-	-	-	-	235,570	234,433	-	1,137
- 고엽제수당	286,015	-	-	-	△4,900	281,115	271,243	-	9,872
- 무공영예수당	72,180	-	-	-	-	72,180	70,714	-	1,466
- 참전명예수당	769,311	-	-	△4,000	△600	764,711	740,561	-	24,150
수시보상금	23,869	-	-	10,800	-	34,669	31,193	-	3,476
- 사망일시금	9,204	-	-	-	-	9,204	9,015	-	189
- 재해보상금	13,860	-	-	10,800	-	24,660	21,751	-	2,909
- 영주귀국정착금	805	-	-	-	-	805	427	-	378

자료: 국가보훈처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788-3736)

나. 분석의견

첫째, 보훈급여금 수준의 공식적인 결정절차가 정해져있지 않고 매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를 따라 보훈급여금이 결정되고 있다.

현재 보훈급여금 금액은 중장기 계획 및 공식적인 조정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매년 기획재정부와의 일반적인 예산 협의에 따라 정부안이 결정되어, 급여 대상별·연도별 인상률에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다.

최근 보훈급여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보상금은 지급대상이 유공자 본인인 경우 대상별로 매년 동일 비율로 인상되고 있으나, 지급대상이 유족인 경우에는 2015년, 2017년, 2018년 전몰·순직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인상률이 다른 대상들보다 2%p 더 인상되었다²⁾.

[2015~2018년 주요 대상 보상금 전년대비 인상률]

(단위: %)

대상		2015	2016	2017	2018
독립유공자(애국지사)		3.5	3.5	3.5	5.0
애국지사 유족		3.5	3.5	3.5	5.0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1급	3.5 (5.3~5.7)	3.5 (3.3)	3.5 (3.4~3.5)	5.0 (3.0~3.4)
	2~6급	3.5	3.5	3.5	5.0
상이군경 유족	전몰순직 배우자 (일반)	5.5	3.5	5.5	7.0
	1~6급 배우자 (일반)	3.5	3.5	3.5	5.0

주: 괄호는 보상금 외의 중상이부가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포함했을 때 전년대비 인상률
자료: 국가보훈처

한편 수당의 경우에는 수당별로 인상액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1만원만 상승하여 낮은 인상률을 보였으나,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2018년 8만원이 인상되는 등 동기간 지급액이 13만원 인상되어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2) 이는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경우에는 1급1항의 60% 수준이 적절하다는 KDI 연구결과(2003년)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격년 주기로 2~3%를 2017년부터 매년 2%의 보상금을 더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2014~2018년 주요 수당 지급액]

(단위: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인상률
간호수당		651,000~ 2,097,000	691,000~ 2,163,000	712,000~ 2,306,000	737,000~ 2,306,000	737,000~ 2,306,000	2.4~ 3.2%
생활조정수당		150,000~ 260,000	160,000~ 270,000	160,000~ 270,000	160,000~ 270,000	160,000~ 270,000	0.9~ 1.6%
6.25자녀수당	제적	1,065,000	1,102,000	1,141,000	1,181,000	1,240,000	3.9%
	승계	905,000	937,000	970,000	1,004,000	1,054,000	3.9%
	신규	-	-	114,000	118,000	124,000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	775,000	802,000	830,000	859,000	902,000	3.9%
	중등도	572,000	592,000	613,000	634,000	666,000	3.9%
	경도	375,000	388,000	402,000	416,000	437,000	3.9%
고엽제 2세환자	고도	1,381,000	1,429,000	1,479,000	1,531,000	1,608,000	3.9%
	중도	1,072,000	1,110,000	1,149,000	1,189,000	1,248,000	3.9%
	경도	862,000	892,000	923,000	955,000	1,003,000	3.9%
무공영예수당		230,000~ 250,000	240,000~ 260,000	260,000~ 280,000	280,000~ 300,000	360,000~ 380,000	11.0~ 11.9%
참전명예수당		170,000	180,000	200,000	220,000	300,000	15.3%

자료: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상이·체대군인 및 그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이 독립유공자·상이군경 및 그 유족,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 향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상별 보훈급여금 인상률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훈급여금 인상 수준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거나 저조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중·장기적으로 보훈급여금 지급대상별로 희생 및 공헌의 정도를 감안한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조정 기준(지표)을 마련하는 등 보훈급여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상이1급1항 보상금(기준보상금)이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3인기준)과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한 후, 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의 유지·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급여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상이 1급1항 보상금 목표는 이미 2016년도에 달성한 바 있고, 2018년 상이 1급1항 보

상금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대비 약 92.0% 수준으로³⁾, 현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인상기준을 고려하여 새로운 인상기준 마련 및 보훈급여금 지급대상별 적정한 목표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도별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가계생계비지수(cost of living adjustments:COLA)와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보훈급여금을 생계비와 연계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현재 보훈수혜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으로는 보상금 지급대상인 애국지사(독립유공자), 상이군경(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⁴⁾,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이 있고, 수당은 지급대상별로 6·25 전몰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2세환자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일람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애국지사	훈장(1~3등급)	4,742,000	4,908,000	5,080,000	5,258,000	5,521,000
	훈장4등급(애국장)	2,525,000	2,613,000	2,704,000	2,799,000	2,939,000
	훈장5등급(애족장)	1,997,000	2,067,000	2,139,000	2,214,000	2,325,000
	포장자	1,431,000	1,481,000	1,533,000	1,587,000	1,666,000
	표창자	940,000	973,000	1,007,000	1,042,000	1,094,000
애국	훈장자(1~3등급)배우자	2,100,000	2,174,000	2,250,000	2,329,000	2,445,000
	훈장자(1~3등급) 유족	1,818,000	1,882,000	1,948,000	2,016,000	2,117,000
	훈장4등급 배우자	1,548,000	1,602,000	1,658,000	1,716,000	1,802,000

3) 2016년 상이1급1항 보상금은 가계소비지출액 대비 약 100% 수준인 반면, 2018년은 약 92.0% 수준으로 낮아짐. 이는 2017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되면서 가계소비지출액이 2017년을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과의 비교(천원)」

구분	'14	'15	'16	'17	'18	'19
3인소비지출(A)	2,546	2,566	2,603	-	-	-
新3인소비지출(A)	-	-	-	3,101	3,075	-
상이1급보상(B)	2,429	2,514	2,602	2,693	2,828	2,927
(인상률)	(4.0)	(3.5)	(3.5)	(3.5)	(5.0)	(3.5)
보상률(B/A)	95%	98%	100%	87%	92%	-

출처: 국가보훈처

4) 재해사망(부상)군경 또는 공무원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퇴직(전역)한 사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 사 유 족	훈장4등급 유족	1,515,000	1,568,000	1,623,000	1,680,000	1,764,000	
	훈장5등급 배우자	1,260,000	1,304,000	1,350,000	1,397,000	1,467,000	
	훈장5등급 유족	1,231,000	1,274,000	1,319,000	1,365,000	1,433,000	
	포장자 배우자	885,000	916,000	948,000	981,000	1,030,000	
	포장자 유족	878,000	909,000	941,000	974,000	1,023,000	
	표창자 배우자	515,000	533,000	552,000	571,000	600,000	
	표창자 유족	504,000	522,000	540,000	559,000	587,000	
상 이 근 경 보 상 금	1급1항	고령	6,326,000	6,660,000	6,879,000	7,116,000	7,352,000
		일반	6,229,000	6,563,000	6,782,000	7,019,000	7,255,000
	1급2항	고령	5,554,000	5,853,000	6,044,000	6,252,000	6,449,000
		일반	5,457,000	5,756,000	5,947,000	6,155,000	6,352,000
	1급3항	고령	4,891,000	5,163,000	5,329,000	5,512,000	5,677,000
		일반	4,794,000	5,066,000	5,232,000	5,415,000	5,580,000
	2급	고령	2,718,000	2,806,000	2,898,000	2,996,000	3,104,000
		일반	2,621,000	2,709,000	2,801,000	2,899,000	3,007,000
	3급	고령	1,919,000	1,983,000	2,049,000	2,117,000	2,218,000
		일반	1,822,000	1,886,000	1,952,000	2,020,000	2,121,000
	4급	고령	1,626,000	1,680,000	1,735,000	1,792,000	1,877,000
		일반	1,529,000	1,583,000	1,638,000	1,695,000	1,780,000
	5급	고령	1,364,000	1,408,000	1,454,000	1,501,000	1,571,000
		일반	1,267,000	1,311,000	1,357,000	1,404,000	1,474,000
	6급1항	고령	1,253,000	1,293,000	1,335,000	1,378,000	1,442,000
		일반	1,156,000	1,196,000	1,238,000	1,281,000	1,345,000
	6급2항	고령	1,161,000	1,198,000	1,237,000	1,277,000	1,336,000
		일반	1,064,000	1,101,000	1,140,000	1,180,000	1,239,000
	6급3항	고령	810,000	835,000	861,000	888,000	928,000
		일반	713,000	738,000	764,000	791,000	831,000
7급	고령	459,000	481,000	494,000	514,000	535,000	
	일반	362,000	384,000	397,000	417,000	438,000	
유 족	전몰·순직	고령	1,312,000	1,376,000	1,419,000	1,489,000	1,583,000
		일반	1,163,000	1,227,000	1,270,000	1,340,000	1,434,000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고령	1,258,000	1,297,000	1,337,000	1,379,000	1,441,000
		일반	1,109,000	1,148,000	1,188,000	1,230,000	1,292,000
	6급비상이	고령	555,000	569,000	584,000	599,000	622,000
	7급상이사망	일반	406,000	420,000	435,000	450,000	473,000
	전몰·순직	고령	1,240,000	1,303,000	1,345,000	1,414,000	1,506,000
		일반	1,143,000	1,206,000	1,248,000	1,317,000	1,409,000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고령	1,188,000	1,226,000	1,266,000	1,307,000	1,368,000
		일반	1,091,000	1,129,000	1,169,000	1,210,000	1,271,000
6급비상이	고령	483,000	497,000	511,000	525,000	546,000	
7급상이사망	일반	386,000	400,000	414,000	428,000	449,00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녀	전몰·순직	일반	1,349,000	1,423,000	1,473,000	1,554,000	1,663,000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일반	1,288,000	1,333,000	1,380,000	1,428,000	1,499,000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일반	588,000	609,000	630,000	652,000	685,000	
재일학도의용군인		고령	1,161,000	1,198,000	1,237,000	1,277,000	1,336,000	
		일반	1,064,000	1,101,000	1,140,000	1,180,000	1,239,000	
4·19혁명공로자			156,000	161,000	167,000	173,000	300,000	
수당	간호수당		651,000~ 2,097,000	691,000~ 2,163,000	712,000~ 2,306,000	737,000~ 2,306,000	737,000~ 2,306,000	
	생활조정수당		150,000~ 260,000	160,000~ 270,000	160,000~ 270,000	160,000~ 270,000	160,000~ 270,000	
	6.25자녀수당	제적	1,065,000	1,102,000	1,141,000	1,181,000	1,240,000	
		승계	905,000	937,000	970,000	1,004,000	1,054,000	
		신규	-	-	114,000	118,000	124,000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775,000	802,000	830,000	859,000	902,000	
		중등도	572,000	592,000	613,000	634,000	666,000	
		경도	375,000	388,000	402,000	416,000	437,000	
	고엽제2세환자	고도	1,381,000	1,429,000	1,479,000	1,531,000	1,608,000	
		중도	1,072,000	1,110,000	1,149,000	1,189,000	1,248,000	
		경도	862,000	892,000	923,000	955,000	1,003,000	
	무공영예수당		230,000~ 250,000	240,000~ 260,000	260,000~ 280,000	280,000~ 300,000	360,000~ 380,000	
	참전명예수당		170,000	180,000	200,000	220,000	300,000	
사망일시금			927,000~ 3,068,000	1,127,000~ 3,268,000	1,127,000~ 3,268,000	1,127,000~ 3,268,000	1,127,000~ 3,268,000	

자료: 국가보훈처

주1: 보상금의 경우, 상이군경 1급은 간호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을, 2급의 경우 간호수당을 합산한 금액

주2: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보다 유족인 배우자·자녀·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높은 경우(6·7급 국가유공자가 상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임.

한편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 이외에도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 교육, 의료, 대부, 양로, 수송시설이용, 묘비제작 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 기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대상별로 복잡·다양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보훈수혜 대상이 상이군경·제대군인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다른 국가와 달리 보훈 지원대상 집단과 보훈지원의 종류가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유로는 ① 한국의 경우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독립유공자, 상이군경·제대군인, 민주유공자 등 특성이

상이한 집단이 보훈수혜대상이 된 점, ② 과거 국가재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가,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후 정치적 요구에 의하여 다양한 보훈수혜집단과 각종 수당이 추가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훈 지원체계가 지나치게 산만하고 복잡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보훈 지원대상과 각종 수당이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집단간·개인간 지급액 비교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과거 유공자 본인보다 유족에게 더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금이 보상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된 사례⁵⁾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보상금 지급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⁶⁾.

따라서 유공자 본인과 가족, 국민의 의견,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행 보훈급여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위의 표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일람표」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으로,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7급 국가유공자가 상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보다 배우자·자녀·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높은 경우가 있으나,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이후에는 상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함.

6)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 2018.10.

가. 현황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보상 법률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혜자 부담금·정부 출연금·국민성금 등을 재원으로 1981년 「보훈기금법」(舊 원호기금법)을 제정하여 보훈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훈기금은 법적근거가 구체성을 띠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운영, 장학지원,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체대군인 대부지원 등 사업 운영이 보다 신속적인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보훈기금의 수입은 골프장수입금, 복권수입, 보훈성금, 대부 및 예탁이자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4가지 계정(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체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나누어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보훈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총계는 3,355억 4,400만원이다.

[2015~2018년 보훈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수납액 및 지출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수 입	합계	187,189	207,346	356,957	335,544
	자체수입	96,645	91,326	89,892	79,369
	정부내부수입 ¹⁾	19,973	49,970	72,054	103,092
	여유자금회수	70,571	66,050	195,011	153,083
지 출	합계	187,189	207,346	356,957	335,544
	사업비	110,603	107,093	113,831	129,061
	기금운영비	1,071	1,058	983	976
	정부내부지출	30,266	30,982	57,268	70,187
	여유자금운용	45,249	68,213	184,875	135,320

주: 1) 복권기금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등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첫째, 보훈기금의 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의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향후 기금운용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훈기금의 연기금위탁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예탁금¹⁾은 기금의 운용규모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기금위탁금과 공자기금예탁금 규모는 2010년 3,025억원에서 2018년 4,090억원으로 35.2% 증가하였다. 이 중 공자기금예탁금은 2018년 2,300억원으로 2010년(800억원) 대비 1.9배 증가하였다. 2018년 보훈기금의 주요지출규모가 1,300억원임을 감안하면 보훈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인 연기금위탁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 운용규모는 주요지출규모의 약 3.15배를 차지한다.

[보훈기금 운용규모 및 여유자금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보훈기금			
	기금 운용규모	여유자금 운용 등		
		연기금위탁금	공자기금예탁금	소계
2010	567,541	222,493	80,000	302,493
2011	651,953	219,760	150,000	369,760
2012	589,421	233,970	150,000	383,970
2013	611,177	256,102	150,000	406,102
2014	610,104	220,519	200,000	420,519
2015	677,875	217,249	230,000	447,249
2016	575,409	211,569	230,000	441,569
2017	584,222	192,320	230,000	422,320
2018	600,930	178,956	230,000	408,956

주: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평잔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1) 공자기금예탁금은 정부의 여유자금 운용규모 산출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의 하나로 넓은 의미에서 기금 여유자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하여 위탁대부²⁾ 실시로 인해 보훈기금 주요 사업인 직접 대부 사업의 규모가 감소하여 대출원금이 회수된데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보훈기금의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 규모가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있어³⁾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간 주요지출규모의 3배 이상의 자금을 기금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 연기금위탁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기금 설치목적과 기회비용의 발생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재원구조와 관련하여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적정수준인 654억~1,102억원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

따라서 이와 같은 보훈기금의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예탁금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의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일부 복지사업을 보훈기금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이 보유한 여유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 회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보훈기금으로 이관하여 수행하

2) 민간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기존에 보훈관에서 직접 시행하던 국가유공자 대부가 '07년 이후 민간은행을 통한 위탁대부와 보훈관서를 통한 직접대부로 이원화되었다. 위탁대부의 경우 민간은행의 재원을 활용하고, 이후 부실채권(6개월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시 보훈기금에서 이를 매입하고 있다.

3) 국가보훈처는 그 원인으로 2007년 7월 위탁대부 실시에 따른 우량채권인 기존대부채권액 감소와 부실채권인 직접대부채권 및 양수대부채권 증가로 인한 대부원리금 수입의 급격한 감소, 노후복지인력 인건비 상승과 보훈대상자 고령화 및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편입으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에 노후복지 사업비 지출 증가 등을 들고 있다.

4) 기획재정부,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7.5., pp243-252.

5) 정부의 기금존치평가의 적정 중기가용자산 규모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사업성 기금>
 NR_t (t년도 순수지차) = (t년도 경상지출) - (t년도 자체수입)
 SNR_t (T년도 누적순수지차) = $\sum_{t=1}^T NR_t$
 * 평가년도부터 향후 5년간($t=1, 2, 3, 4, 5$)
 적정 기금규모최소기준 () = $\text{MAX}\{SNR_t\}$
 적정 기금규모최대기준 () = $\text{MAX}\{SNR_t + 1.65 \cdot \delta \cdot \sqrt{T}\}$
 * $T=1, 2, 3, 4, 5$
 δ : 최근 5년 순수지차의 표준편차

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에는 공통된 사업목적과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는데, ① 보훈대상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일반회계의 종합재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과 보훈기금의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② 신체장애를 입은 유공자에게 보청기, 의족, 휠체어 등을 지급하는 일반회계의 보철구 지급과 보훈기금의 중상이자편의시설 공급, ③ 보훈대상자에게 교육비, 교재비 등을 지급하는 일반회계의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 면제),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과 보훈기금의 장학금 사업이 그 사례이다.

[공통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일반회계·보훈기금 구분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목적	구분	사업명	2018 집행액
보훈대상자의 재활 지원	일반회계	종합재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1,923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1,727
	보훈기금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608
신체장애 유공자에 보철구·휠체어 등 지급	일반회계	보철구 지급	6,003
		체대군인 의료지원(보철구 지급 내역사업)	69
	보훈기금	중상이자편의시설 공급	3,733
보훈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일반회계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 면제)	28,023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	1,628
	보훈기금	장학금	447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이러한 구분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의무지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수행하고 재량지출 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향후에는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의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보훈기금 구성에 기여한 보훈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동일한 사업목적 가진 사업을 일반회계와 보훈기금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칸막이식 재원운용으로 인한 비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이와 같은 사업들 중 보훈기금으로 이관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보훈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상 문제점

가. 현황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사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충시설 건립 사업¹⁾의 내역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은 6억 2,900만원으로 이 중 3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억 2,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18년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현충시설 건립	11,147	11,147	4,100	466 △1,131	14,582	7,710	808	6,064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7,392	7,392	368	△1,131	6,629	397	808	5,424

자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6년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건립사업의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기간, 연면적, 총사업비 등을 검토하였다. 2016년 7월 서울특별시가 기획재정부에 구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지와 교환을 제안하고 2017년 10월 합의함에 따라 건립부지가 확보되었다. 2017년 7월에는 사업추진방식이 민간보조사업에서 국가 직접 건립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1월에는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방식 변경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국가보훈처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증액 및 타당성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3146-405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타당성 재조사 결과 2018년 9월 총사업비 증액이 확정되었다.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념관 설계 공모가 실시되었으며, 2018년 12월 설계 공모 결과 당선작이 확정되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 경과]

일정	내용	비고
2015. 12.	국회에서 2016년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	
2016. 7.	(서울시) 서대문구 의회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 제안 (기획재정부) 건립예산 반영 및 국가 직접 건립·운영시 부지 교환 검토	서울시→ 기획재정부
2016. 11.	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	
2017. 7.	민간보조사업에서 국가 직접 건립 사업으로 변경 결정	
2017. 10.	기획재정부-서울시 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부지 교환 합의	
2018. 1.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	
2018. 2.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증액 의결	
2018. 3.	총사업비 증액 및 타당성재조사 요청,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통보	보훈처→ 기재부→KDI
2018. 4.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에서 사업방식 변경(턴키→기본설계기술제안) 의결	
2018. 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 교환·변경 요청 군부대 점유지 및 도로 제외(5,696㎡→3,656㎡)	
2018. 8.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확보 결정	
2018. 9.	총사업비 증액 확정(364억원 → 473억원)	
2018. 9.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축 설계공모 실시	
2018. 12.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자료: 국가보훈처 및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동 사업의 2016년 예산 편성 이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건립부지 선정 지연, 사업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였다.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2016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기념관의 완공 계획일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인 2019년이었으나, 2019년 현재에는 202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16~2018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집행률	편성내역	이월 및 불용사유
2016	1,000	20	980	0	2.0	타당성 조사 용역비	건립부지 선정 지연
2017	1,000	0	632	368	0.0	설계비	사업방식 변경 (보조→국가직접건립)
2018	6,629	397	5,424	808	6.0	건설비 등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및 사업방식 변경 (턴키→ 기본설계 기술제안)에 따른 설계공모 실시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동 사업은 건립주체·사업추진방식 및 총사업비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이월되었다.

동 사업은 2016년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고 이를 국립으로 건립하여야 한다는 서울시 측의 주장이 있어 2017년 7월 기념관을 국립으로 건립하고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부지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017년에는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건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동 사업이 주요 국정과제(11-2)로 채택됨에 따라 총사업비를 364억원으로 하여 턴키²⁾방식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6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에 기념관 건립 계획의 수립, 설계 및 공사,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추진 상황의 점검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기념관

2) 건설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하여 수주하는 방식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를 마련, 2018년 1월 구성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정부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다목적홀 확보 및 법정 지하주차장 면적 확보 등을 위해 기념관 건립 규모를 당초 6,236㎡에서 9,000㎡로 변경하고, 사업방식을 당초 턴키방식에서 기본설계기술제안³⁾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⁴⁾, 타당성 재조사 및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당초 예정되었던 설계·건축이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이월되고, 준공일자가 2021년 8월로 연기되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일정 변경현황]

	'18. 1분기	'18. 2분기	'18. 3분기	'18. 4분기
당초 (2017.10)	기본계획 수립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국토부) 및 턴키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 * 실시설계 기간 중 기존건축물 철거 및 우선시공분 착공
변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재조사		건축 설계 공모
	'19. 1분기	'19. 2분기	'19. 3분기	'19. 4분기
당초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계속)			
변경	기본설계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국토부) 및 기술제안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
	'20년		'21년	
당초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계속)	준공		
변경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계속)			준공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기본설계서를 작성·교부하고 시공사가 이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한 공사에 적용
- 4) 건립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은 턴키 방식은 시공사 중심 구조로 다수의 건축가 참여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설계공모를 걸쳐 다수의 작품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기념관 건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8년 예산에는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만 73억 9,200만원 편성되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4억 6,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도 발생하였다⁵⁾.

[2018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및 운영 기반 구축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립대한민국임시 정부기념관 건립	7,392	7,392	368	△1,131	6,629	397	808	5,424
국립대한민국임시 정부기념관 운영 기반 구축	-	-	-	466	466	396	-	70

자료: 국가보훈처

둘째, 최초 총사업비 확정 후 사업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최초 계획에 비해 크게 증액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임시정부 기념관의 기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목적홀 면적 확대, 법정 지하주차장(2,000㎡)을 추가로 반영하여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목적홀은 당초 200㎡ 면적으로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사업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됨에 따라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매년 거행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식을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당초 계획된 200㎡는 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기념식을 개최하기에 협소한 공간으로 파악되었다⁶⁾.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정 지하주차장 2,000㎡ 면적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6,200㎡로 건설 계획하던 기념관을 지상 5층, 지하 3층, 연면적 9,000㎡로 변경하고자 총사업비 증액

5) 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의 경우 2018년도 예산안 정무위 예비심사결과 1억원 증액조정 되었지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6)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은 통상 참석인원이 약 1,000명 정도로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인원은 약 10,000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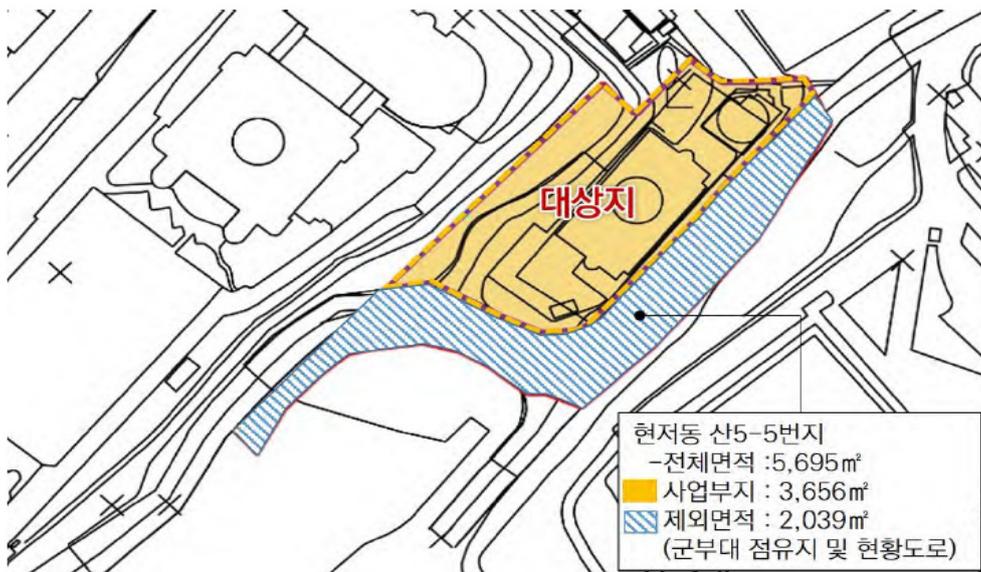
(364억원→483억원) 및 타당성재조사⁷⁾⁸⁾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8년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설 계획 변경]

구분	최초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시 요구안	최종 건설 계획
사업 기간	2017~2020년	2017~2021년	2017~2021년
총사업비	364억원	483억원	473억원
사업 규모	부지면적	5,696㎡	3,656㎡
	건물규모	지상 5층, 지하 1층	지상 5층, 지하 3층
	연면적	6,200㎡	9,000㎡
			8,774㎡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부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7)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 또는 이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
- 8) 동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2.7% 증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게 됨.

가. 현황

보훈선양자료 및 프로그램 사업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후세대에게 독립·호국·민주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보훈선양 학습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보훈정책 홍보 사업²⁾은 보훈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고,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보훈선양자료 및 프로그램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은 18억 3,600만원으로 이 중 18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보훈정책 홍보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은 4억 8,500만원으로 이 중 4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18년도 보훈선양자료 및 프로그램, 보훈정책 홍보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훈정신계승발전	2,086	2,086	0	0	2,086	2,081	0	5
보훈선양자료 및 프로그램	1,836	1,836	0	0	1,836	1,831	0	5
보훈정책홍보	416	416	0	69	485	482	0	3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첫째,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분류를 체계화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및 보훈정책홍보 사업을 통해 각종 보훈 콘텐츠를 제작하여 나라사랑배움터 홈페이지³⁾ 등 SNS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 그런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3145-401

2) 코드: 일반회계 7167-433

데 일부 교육용 애니메이션 및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가 게재 이후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사업을 통한 보훈선양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독립운동가 및 국가유공자 관련 콘텐츠의 경우에는 조회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⁴⁾, 2019.6.15. 기준 나라사랑 배움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립운동가 관련 애니메이션은 2017년 연말 게재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30개 중 17개의 조회수는 100회 이하, 이중 6개⁵⁾는 20회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운동가 관련 웹툰의 경우에도 총 65개 중 8개만이 조회수가 100건 이상이고, 6·25 전쟁영웅 관련 웹툰은 총 20개 중 3개만이 조회수 1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가 개설한 YouTube 채널에 업로드한 이달의 독립운동가·전쟁영웅 관련 영상, 뉴스·행사 및 교육·홍보 영상 등은 총 650개로 이 중 조회수 1,000회 이상을 기록한 영상은 200개인데 반해, 이외의 영상은 게재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회수가 10회~1,000회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처 콘텐츠의 조회수가 낮은 이유를 파악해 보면, 일부 콘텐츠의 낮은 품질, 자료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 노력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경우 최근의 트렌드와 어린이·청소년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영상과 음성의 싱크가 맞지 않는 콘텐츠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점이 일부 국민들의 댓글을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나라사랑배움터의 메뉴도 구성이 체계적이지 않아, 일부 보훈 관련 영상자료들이 그 내용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배움나라와 자료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 YouTube 채널의 플레이리스트도 독립운동 항목에 4·19, 5·18 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등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영상을 찾는 데 있어 불편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3) 나라사랑배움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들은 홈페이지 자체 업로드 방식이 아닌 YouTube에 업로드한 영상을 링크하여 제공하고 있다.

4) 백범 김구 선생 관련 애니메이션 조회수는 2019.6.15 기준 나라사랑 배움터 62,925건, YouTube 16,09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독립운동가 이강년, 이상설, 이승훈, 신규식, 이동녕, 정명운 애니메이션 영상

[나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메뉴 구성]

나라사랑배움터		소개 나라	알림 나라	배움 나라	자료 나라
🏠	자료 나라	국가보훈처 소개	새소식	카드뉴스	영상자료
[Red Blurred Area]		보훈이란 무엇인가?	보훈달력	애니메이션	책자
			이달의 인물	웹툰	노래
				영상	체험 활동
				보훈기념일	

자료: 나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제작하는 콘텐츠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공하는 콘텐츠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나라사랑배움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SNS 상의 콘텐츠들을 재분류하며, 초·중·고교의 학습과정과 연계된 콘텐츠 개발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훈처 제작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훈선양 자료 및 프로그램 사업은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의 반복적인 세목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바, 계획된 집행방식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보훈선양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서는 각종 콘텐츠 제작 보급 등의 업무를 2017년부터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2018년 편성된 일반용역비는 5,500만원에 불과하여 일반수용비로부터 5억 2,600만원을 세목 조정하여 총 5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년의 경우에도 2억 1,700만원을 세목 조정하여 3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이와 같은 세목조정이 2년 연속 발생하였다. 2019년 예산의 경우에도 일반수용비 10억 2,900만원, 일반용역비 6,000만원이 편성되어 3년 연속 동일한 세목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세목간 조정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조정·집행 가능하나, 이와 같은 사례는 예산 편성 당시에 이미 어느 세목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편성·집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예산 편성시 계획된 예산 집행 방법에 부합하게 세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보훈선양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비(210목) 세목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목-세목 코드	목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7	210	운영비	2,510	2,510	-	△77	2,433	2,387	-	46
	210-01	일반수용비	2,354	2,354	-	△304	2,050	2,010	-	40
	210-14	일반용역비	156	156	-	217	373	367	-	6
	210-15	관리용역비	-	-	-	10	10	10	-	-
2018	210	운영비	1,092	1,092	-	-	1,092	1,088	-	4
	210-01	일반수용비	1,027	1,027	-	△527	500	496	-	4
	210-14	일반용역비	55	55	-	526	581	581	-	-
	210-15	관리용역비	10	10	-	1	11	11	-	-
2019	210	운영비	1,099	-	-	-	-	-	-	-
	210-01	일반수용비	1,029	-	-	-	-	-	-	-
	210-14	일반용역비	60	-	-	-	-	-	-	-
	210-15	관리용역비	10	-	-	-	-	-	-	-

자료: 국가보훈처

가. 현황

독립운동 사료수집 사업과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국내외에서 수집한 독립운동사료를 수집, 분석, DB화하여 기록으로 보존하여 독립운동 참여자를 새롭게 발굴·포상하고 공적 입증 자료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홍보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독립운동 사료수집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은 1억 5,800만원으로 이 중 1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은 3억 7,800만원으로 이 중 3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18년도 독립운동사료 사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홍보	1,602	1,602	0	0	1,602	1,537	0	65
독립운동 사료 수집	158	158	0	0	158	154	0	4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378	378	0	0	378	356	0	22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첫째, 외국지역에서 생산된 독립운동 사료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수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의 외국지역 생산 독립운동 사료에 대한 생산지역별 수집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자료수집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지역에서 생산된 독립운동 사료는 매년 상시적으로 수집되어 수집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148-345

러시아에서 생산된 독립운동 사료 수집은 23,292면으로 그 수집이 낮게 나타나는 한편 러시아 지역과 미주·유럽 지역의 사료는 수집이 낮게 나타나는 연도가 있다.

[외국지역 생산 독립운동 사료 생산지역별 수집 현황]

(단위: 면수)

지역	1992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중국 대만	65,727	77,680	16,987	630	11,723	59,665	26,234	31,938	290,584
일본	113,345	46,143	9,452	88	22,580	48,284	20,771	6,780	267,443
러시아	13,998	0	0	0	0	520	6,153	2,621	23,292
미주 유럽	41,750	0	3,800	47,601	9,064	689	25,348	1,201	129,453
합계	234,820	123,823	30,239	48,319	43,367	109,158	78,506	42,540	710,772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중국과 일본 지역은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확인이 용이한 수집대상이 많은 상시수집 지역이고 러시아, 미주·유럽 지역은 현지 기록보존소, 문서보관소 등의 문서접근이 어렵고 국정과제 등 중장기적 수집 방향과 준비를 거쳐 수집되는 특별수집 지역에 해당하여 사료수집에 편차가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지역 못지않게 러시아·미주 지역에서도 독립군 활동, 독립자금 모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다수 전개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사료 상시 수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국 기록보존소, 문서보관소, 도서관 등과의 협정 체결 등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여 독립운동 사료를 안정적·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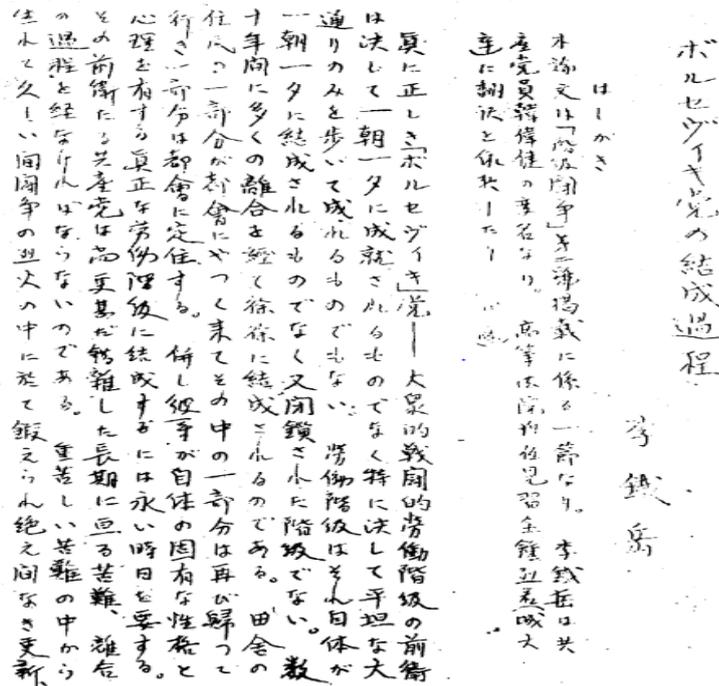
둘째, 공훈전자사료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원문사료 및 독립운동관련연표의 가독성을 제고하고, 독립운동관련연표의 구분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사료 수집 사업과 독립운동사료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수집, DB화된 자료를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http://e-gonghun.mpva.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공개 중인 독립운동 사료들 중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사료들은 대부분이 한문 또는 국한문 혼용,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고 일부 사료들은 활자

본이 아닌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사료들이 텍스트 형태가 아닌 원문의 이미지 스캔본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해당 사료들을 독해·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원문사료들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원문사료들의 번역, 스캔본의 텍스트화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훈전자사료관 공개 원문사료 중 일부]



자료: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

한편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제공되는 독립운동관련연표는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제60 권) 한국독립운동사 연표(이만열 저, 2009)’를 전산화한 것으로 1863년부터 1945년까지의 8,499개의 역사적 사건을 제공하고 있다. 독립운동관련연표에서는 역사적 사건들을 독립운동, 일본·세계 동향,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광복 이후 소련군의 원산상륙 등이 독립운동으로 분류되어 있고, 일부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이 유사·동일하거나 연속되는 사건임에도 분류가 다르게 되어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해 이용자들이 쉽게 사건을 분류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독립운동관련연표의 역사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리하고, 사건의 단순나열뿐만 아니라 관련성·연속성이 있는 사건들을 함께 묶어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독립운동관련연표의 사건 정보와 독립유공자 정보를 연결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훈전자사료관 등록 독립운동연표 일부]

독립운동관련연표

HOME > 원문사료실 > 독립운동관련 연표

년
월
사건

TOTAL 41건 [4/5]

순번	년도-월-일	사건	구분	연표보기
31	1945-08-17	제39차 임시의정원 개최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표보기
32	1945-08-17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앙 명의로 미국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전후 문제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표보기
33	1945-08-17	인도네시아, 독립 선포(대통령 수카르노)	일본-세계 동향	연표보기
34	1945-08-18	임시정부 주석 김구, 시안(西安)에서 중징(重慶)으로 귀환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표보기
35	1945-08-18	한국광복군 국내정진대(國內挺進隊), 미국 OSS원과 함께 C47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표보기
36	1945-08-20	박헌영(朴憲永) 등, 공산당재건협의회(재건파)결성	독립운동	연표보기
37	1945-08-20	소련군, 원산 상륙	독립운동	연표보기
38	1945-08-21	임시정부 주석 김구, 임시의정원 회의에 출석하여 '임시정권을 해방된 국내 인민에게 봉...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표보기
39	1945-08-24	임시정부 주석 김구, 장제스(蔣介石)에게 임시정부의 귀국 문제 및 교포들의 보호를 요청...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표보기
40	1945-08-25	미군 일부, 인천 상륙	독립운동	연표보기

자료: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

가. 현황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은 안중근의사의 유해 발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등사망시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은 1억 700만원으로 이 중 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18년도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지원	1,947	1,947	-	-	1,947	1,843	-	104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	107	107	-	-	107	103	-	4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실제 발굴작업 및 사업의 성과없이 매년 1억원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유해발굴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및 중국과 공동으로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을 추진하여,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 서측(원보산)을 공동 발굴 시도 하였으나 유해가 미확인되었다. 이후 2010년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다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계약직 인건비 4,700만원, 자료수집·번역료 2,700만원 유해발굴추진단 운영 등에 1,500만원, 해외 자료수집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2010년 이후 매년 자료조사·관계부처 또는 중국과의 협의에 1억원 안팎의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으나, 실제 발굴은 추진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내역사업 예산으로 채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3250-145

용한 계약직 직원은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관련 업무 외에 국외 안장 묘소실태조사, 관리 및 유해봉환 추진 등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2010	-	131	104	27	-	79.3
2011	351	332	175	157	49.8	52.7
2012	183	175	96	33	52.4	54.8
2013	141	141	75	66	53.2	53.2
2014	137	137	105	32	76.6	76.6
2015	114	114	94	20	82.5	82.5
2016	120	120	93	27	77.5	77.5
2017	104	104	92	12	88.5	88.5
2018	107	107	103	4	96.3	96.3

자료: 국가보훈처

이와 같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THAAD 도입 등으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로 중국정부가 안중근 의사 매장지로 예상되는 지역 일대의 GPR(지면투과레이더) 조사 발굴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입장으로, 실제 매장추정지에 대해서 조사·발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동 사업으로 자료조사와 업무협의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 따른 사업집행 차질뿐만 아니라 안중근의사 순국 이후 109년이 경과하였고 유해 위치 및 유해 안치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유해 발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국가가 끝까지 나서서 찾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는 큰 의미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동 사업이 단순자료조사업무와 업무협의만을 관성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실제 발굴 업무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125억 9,700만원이며, 5,354억 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5.1%인 2,415억 7,000만원을 수납하고 2,913억 9,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4억 9,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12,597	512,597	512,597	535,461	241,570	291,394	2,496	45.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48억 4,200만원이며, 이 중 95.8%인 1,196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4,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21,445	121,445	124,842	119,613	1,083	4,145	95.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은 2,209억 700만원, 부채는 780억 7,800만원으로 순자산은 1,428억 2,9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692억 9,100만원(45.7%)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2,115억 4,700만원, 일반유형자산 50억 1,700만원, 무형자산 26억 2,9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7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과징금 등의 체재금수익 징수결정으로 인한 미수체재금(미수채권)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688억원 증가, 집기비품 감소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9억 감소, 관사 재계약에 따른 기타비유동자산 12억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3억 3,200만원(0.4%)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10억 8,300만원, 장기충당부채 769억 9,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미지급금 감소로 인한 유동부채 21억원 감소, 소송충당부채로 계상된 소송 사건들 중 일부가 환급(124억원)되고 신규로 발생한 소송 사건들에 대해 소송충당부채를 계상(149억원)함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20,907	151,616	69,291	45.7
Ⅰ. 유동자산	211,547	143,319	68,228	47.6
Ⅱ. 일반유형자산	5,017	7,125	△2,108	△29.6
Ⅲ. 무형자산	2,629	599	2,030	338.9
Ⅳ. 기타비유동자산	1,714	573	1,141	199.1
부 채	78,078	77,746	332	0.4
Ⅰ. 유동부채	1,083	3,280	△2,197	△67.0
Ⅲ. 장기충당부채	76,995	74,466	2,529	3.4
순 자 산	142,829	73,870	68,959	93.4
Ⅰ. 기본순자산	7,933	7,933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32,281	63,304	68,977	109.0
Ⅲ. 순자산 조정	2,615	2,632	△17	0.6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331억 3,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602억 100만원, 관리운영비 633억 4,500만원, 비배분비용 1,237억 4,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41억 5,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26억 800만원(54.9%) 증가한 2,331억 3,200만원이며,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 변경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812억 2,900만원 증가하였고, 소손충당부채 환입 증가 등에 따라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66억 1,4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소비자후생 증진프로그램(482억 3,400만원)과 경쟁촉진 프로그램(106억 4,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38억 2,500만원과 복리후생비 74억 4,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829억 3,300만원과 기타비용 383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0,201	56,880	3,321	5.8
가. 프로그램 총원가	60,201	56,880	3,321	5.8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II. 관리운영비	63,345	58,673	4,672	8.0
III. 비배분비용	123,744	42,515	81,229	191.1
IV. 비배분수익	14,158	7,544	6,614	87.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33,132	150,524	82,608	54.9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33,132	150,524	82,608	54.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738억 6,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428억 2,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689억 6,000만원(93.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 결과는 기초 대비 826억 8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757억 9,9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제재금수익 4,174억 9,300만원 등 재원의 조달 5,436억 7,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2,415억 7,000만원 등 재원의 이전 2,415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7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73,869	198,101	△124,232	△62.7
II. 재정운영결과	233,132	150,524	82,608	54.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02,109	26,310	275,799	1,048.3
IV. 조정항목	△17	△17	0	0
V. 기말순자산(I-II+III+IV)	142,829	73,869	68,960	93.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②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등이 있다.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취지 및 타 부처의 편성사례 등을 고려하여 UNCTAD 전문관 체재비용이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사업으로 이관되어 7,500만원 감액되었고,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은 소비자중심경영(CCM)이 홍보보다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1억원 감액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사업, ②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 등이 있다.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사업은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 중 UNCTAD 전문관 체재비용 및 기존의 청사관리 예산의 전액 이관, 직원 개인명의 휴대폰 요금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2억 4,300만원 증액되었고,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은 기업집단국의 신설로 해당업무가 시장감시국으로부터 이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목구조 개편을 통해 독과점시장감시체계 운영 세부사업 중 하나의 내역사업에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7,000만원만 증액되었다.²⁾

1) 정무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0.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정무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0.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②갑을관계 개혁, ③혁신 경쟁 촉진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①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②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③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이나 시행령 상의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임의적 과징금 감경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반복법 위반자에 대한 감면제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동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해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납부기간을 초과한 임의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누적체납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정액을 산정하는 반면, 과징금·과태료 미납으로 발생한 가산금의 경우에는 체납된 과징금이 실제 수납된 건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액을 산정하고 있어 과징금 임의체납액에 비해 가산금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징금·과태료 임의체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 현황을 매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에 총 181건, 3,104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결하였다. 2018년 과징금 부과금액 규모는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4~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처분건수	113	202	111	149	181
부과금액	804,387	588,959	803,852	1,330,827	310,448

주: 1. 과징금 부과처분건수는 사건번호 기준

2. 자진신고 감면금액 제외 금액

3. 2017년 쉼집사에 대한 1조 31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1. 사익편취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가. 현황

사익편취 행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비율(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¹⁾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는 2014년 2월부터 실시되었다. 법령 신설 당시 요건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으나 2017년 법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규제대상이 확대되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시장감시국 내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2017년 9월, 정원 54.5명 증원)하였고, 사익편취행태개선사업을 신설하여 현장조사, 기업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2018회계연도 사익편취행태개선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익편취 행태개선	70	70	61	0	131	131	0	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나. 분석의견

사익편취 행태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익편취 행태를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 도입(2014.2.)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2018.6.25.)하였다. 동 발표에 따르면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법률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2015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거래규모 역시 규제 이전 수준 이상으로 복귀하였다.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규제도입 당시		규제도입 이후							
	2013년 (160개 사)		2014년 (159개 사)		2015년 (147개 사)		2016년 (80개 사)		2017년 (203개 사)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거래규모(조원)	12.4	0.08	7.9	0.05	8.9	0.06	7.5	0.09	14.0	0.07
거래비중(%)	15.7		11.4		12.1		14.9		14.1	

주. 1. 내부거래비중은 각 집단별 대상회사 내부거래금액 합계액을 매출액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계

2. 2016년 내부거래 비중은 지정기준 상향으로 자산 5~10조원 기업집단이 제외된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분석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회사수)]

(단위: %, 개)

연도	규제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		
		총수일가 지분 29~30% 상장사 ¹⁾	규제도입 이후 규제 제외 회사 ²⁾	규제대상회사 50% 초과지분보유 자회사 ³⁾
2014	11.4(159)	20.5(6)	29.5(8)	16.3(141)
2015	12.1(147)	21.4(7)	27.9(8)	16.9(151)
2016	14.9(80)	20.6(4)	26.4(8)	24.2(79)
2017	14.1(203)	21.5(4)	26.6(8)	15.1(214)

주. 1. 규제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기준에 다소 미달되도록 지분율을 관리하는 회사

2.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규제 도입 이후 총수일가 지분율이 하락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계열사로 남아있는 회사

3. 규제대상회사인 모회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²⁾ 동 법률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 총수일가 지분비율이 확대(비상장사 20%, 상장사 30% → 모두 20%)되고, 이들 계열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규제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여 모든 내부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거래의 부당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의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표함으로써 사익편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 전문경영인 등과의 꾸준한 대화노력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현황]

일시	장소	대상	참여기업
2017.6.23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2017.11.2.	대한상공회의소	5대 그룹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2018.5.10.	대한상공회의소	10대 그룹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2019.5.23.	대한상공회의소	10대 미만 그룹(15개)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오씨아이, 카카오,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의안번호 제20169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8.11.30. 정부제출

둘째,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중한 법해석 및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 이후 총 4건, 16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실시하였다. 이 중 3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확정판결이 내려진 처분이 없어 관련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부과대상	금액	소제기여부	소송결과
2016	현대 계열사 (4개)	1,281	×	
2017	한진 계열사 (3개)	1,430	○	고법패소/대법계류
2018	효성 계열사 (3개)	2,987	○	고법계류
	하이트진로 등 3개 사업자	10,733	○	고법계류
합 계		16,43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부당지원금지(법 제23조제1항제7호3) 규제와 달리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는 부당성에 대한 별도입증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한진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은 부당성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일반 국민입장에서 다소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엄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금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한 법해석과 함께 관련 행정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 부당지원금지 규제와의 관계]

구 분	부당지원금지규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관련 규정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의2
규제내용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하는 행위 금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행위 금지
지원주체	제한없음 (모든 사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 요건 불필요)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보유한 계열회사
부당성 판단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입증 필요	부당성에 대한 별도입증 불필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2. 카르텔에 대한 규제 철저 필요

가. 현황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이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공급물량 등 경쟁요소에 대한 사업자 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카르텔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공모를 통해 이러한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 자원배분의 비효율, 불법적인 독점이윤 등을 야기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⁴⁾

이와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로 다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18년 업무계획에서 기술혁신을 저해하거나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총 94건의 카르텔에 대하여 2,3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카르텔 사건은 과징금 부과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적발하였다. 금액을 기준으로 2014년~2016년 실적에 비해 2017년~2018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카르텔	건수	56	63	45	52	94
	금액	769,428	504,919	756,040	229,439	237,950
총부과과징금		804,387	588,959	803,852	1,330,827 (299,727)	310,448

주: 1.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금액 제외 금액
 2. 2017년 팔호안은 웰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1조 311억원) 제외금액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인 범위반자의 과징금 감면 제한규정을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내부의 신고를 유도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Leniency)’를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이다.⁵⁾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조항⁶⁾이 신설된 2007년 이후 활성화 되었다. 2007년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은 총 504건인데 이 중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되어 적발된 사건은 322건으로 63.9%에 이른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된 카르텔 사건 수]

(단위: 건, %)

연 도	과징금 부과건수	감면제도 적용건수	비율
2007	24	10	41.7
2008	43	20	46.5
2009	21	13	61.9
2010	26	18	69.2
2011	34	29	85.2
2012	24	12	50.0
2013	28	23	82.1
2014	56	44	78.6
2015	63	48	76.1
2016	43	27	56.3
2017	52	41	78.8
2018	90	37	41.1
계	504	322	63.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감면제도 적용대상을 ① 조사 시작 전 범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자(1순위 자진신고자), ② 조사시작 후 증거확보 전 조사에 협조한 자(1순위 조사협조자), ③ 조사시작 후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2순위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로 세분하여 감면수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자진신고자 신고유형 별 감면제도 적용기준]

구 분	1순위 자진신고자	1순위 조사협조자	2순위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과징금	면제	면제	50% 감경
시정조치	면제	감경 또는 면제	감경
형사고발	면제	면제	면제

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구성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악용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경감받는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 12. 30.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⁷⁾의 규정을 개정하여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가격담합)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반복 법 위반자에 대한 감면제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반복 법 위반자에 대한 감면제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1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반복 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반복 법 위반을 이유로 감면을 제한한 사건은 한건도 없었다.⁸⁾

구체적으로 보면, 시행령은 “법 제19조제1항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담합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 규정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5년 이내에 “당해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로 그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¹⁰⁾하고 있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8) 감사원,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 실태」, 2018.1.18.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3(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당해 시정조치”의 의미를 시정조치 대상인 입찰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로 해석할 경우 입찰담합을 금지하는 시정조치의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 목적을 형해화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법 위반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감면 여부 결정 시 감면제한 대상이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 해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1-3.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한 철저한 조사실시 필요

가.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① 하도급 분야, ② 유통 분야, ③ 가맹분야, ④ 대리점 분야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와 관련한 47건의 사건에 대하여 총 1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도급, 가맹,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하도급	건수	20	56	23	37	28
	금액	10,445	8,152	4,364	9,615	11,000
가맹	건수	2	4	-	4	10
	금액	1,992	300	-	1,696	4,157
유통	건수	3	11	5	13	9
	금액	6,058	16,695	23,888	3,048	1,540
계	건수	25	71	28	54	47
	금액	18,495	25,147	28,252	14,359	16,69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사례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에는 1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중소기업간 거래 행태 개선 및 동반 성장 시책추진	1,336	1,336	0	0	1,336	1,308	0	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하도급 분야의 전속거래 및 대리점 분야의 계속적 거래관계 등은 범위반 행위 입증에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것이 요구된다.

전속거래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일시적인 전속계약은 중소기업에 성장시킬 수도 있으나,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저하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2018년 7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신설로 부당한 경영간섭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의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였다.¹¹⁾¹²⁾

대리점 분야는 2013년 있었던 남양유업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 사건 등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¹³⁾이 시행(2016.12.23.)되었다. 이에 따라 본

11)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경영간섭을 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 제한, ②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의 거래강요, ③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요구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각 항 생략)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각 항 생략)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각 항 생략)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각 항 생략)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각 항 생략)

사의 ① 구입의사 없는 상품구입 강요, ②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③ 판매목표 강제, ④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⑤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등이 금지된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금액의 정도는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실적은 저조하다. 최근 5년 간 하도급 분야 과징금 부과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①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나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증거수집이 다소 용이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③ 부당한 경영간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한 건도 없다. 대리점 분야 역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17~2018년 기간 동안의 과징금 부과실적이 전무하다.

[하도급 분야 과징금 부과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건)

위반유형	2014	2015	2016	2017	2018
서면발급 관련 (제3조)	0 (0)	0 (0)	0 (0)	2,554 (12)	3,663 (8)
부당한 대금결정 (제4조)	354 (1)	8,152 (54)	541 (3)	882 (4)	3,043 (5)
부당한 위탁취소 (제8조)	2,080 (1)	0 (0)	0 (0)	0 (0)	0 (0)
부당한 감액 (제11조)	0 (0)	0 (0)	364 (3)	279 (2)	51 (1)
부당한 경제적 요구 (제12조의2)	0 (0)	0 (0)	0 (0)	148 (1)	0 (0)
기술자료 제공요구 (제12조의3)	0 (0)	0 (0)	0 (0)	0 (0)	882 (2)
대금지급 관련 (제13조)	8,011 (18)	0 (2)	3,459 (17)	5,582 (17)	3,362 (12)
탈법행위 (제20조)	0 (0)	0 (0)	0 (0)	170 (1)	0 (0)
합계	10,445 (20)	8,152 (56)	4,364 (23)	9,615 (37)	11,000 (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전속거래 관계나 본사-대리점 관계 등 계속적 거래 중에 있는 당사자는 보복조치 또는 향후 사업영위에 대한 우려로 원사업자나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보면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60.5%)로 전속거래를 유지한다고 응답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해'(70.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품질유지', '원가경쟁력유지' 등을 전속거래 사유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당성에 대한 혐의입증도 '하도급 대금지급' 등 객관적 증거가 수집 가능한 다른 범위반사례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적발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¹⁴⁾

[전속거래 사유]

(단위: %)

구분	원사업자 응답				하도급업체 응답		
	품질유지	원가경쟁력 유지	기술유출 방지	기타	원사업자 전속거래 요구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기타
전체	70.8	12.5	4.2	12.5	60.5	21.4	18.1
제조	58.3	16.7	8.3	16.7	64.3	16.4	18.8
용역	81.8	9.1	0.0	9.1	60.0	24.0	16.0
건설	100.0	0.0	0.0	0.0	16.7	72.2	11.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 중 하나 이상의 하도급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을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6.9%) 회사로 나타났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순으로 10년 이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속거래가 한 번 시작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기간]

(단위: %)

구분	하도급업체 응답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21.9	16.9	20.9	32.7
제조	19.5	16.7	21.4	36.7
용역	32.0	12.0	22.0	16.0
건설	22.2	33.4	11.1	33.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둘째,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선정 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1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동반성장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협약평가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 체감도조사결과를 합산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매년 6월 경 전년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데 2019.6.27. 발표된 「2018년 동반성장 평가결과」에 따르면 31개 기업¹⁵⁾이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2018년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 중 7개의 기업이 2017~2018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최대 30점을 감점하고 있으며, 동 감점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우수하게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부 규정에 따라 등급 강등 심의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강등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을 주요 추진과제로 들고 있는 만큼 경쟁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동반성장지수 우수·최우수 기업에 대한 2017~2018년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회사명	2017	2018	부과사유
대상	520	0	불공정 거래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만도	80	0	하도급법 위반
CJ제일제당	211	0	불공정 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GS건설	1,592	0	하도급법 위반
대림산업	0	9	하도급법 위반
현대모비스	0	500	불공정 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부당이용행위)
LG전자	0	3,324	하도급법 위반
합계	2,403	3,83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5)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1-4.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고액 환급금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가. 현황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과징금 과목¹⁶⁾에 수납된다. 2018년도에는 2018년 처분금액과 2017년까지의 미수납금액 등을 합산한 5,295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2,393억원을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과징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과징금	508,531	508,531	508,531	529,465	239,342	287,627	2,496	45.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미수납액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①과징금 납부기한인 60일 이내의 납기미도래¹⁷⁾, ②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¹⁸⁾로 인한 납기미도래, ③집행정지에 따른 징수유예, ④재력부족 등을 이유로 한 임의체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다른 해에 비하여 11~12월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집중됨에 따라 다른 해에 비해 과징금 납부기한(60일) 이내의 납기미도래 건(1,477억원, 총 미납액의 51.3%)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16) 코드: 일반회계 56-563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 4. (각 호 생략)

[최근 4년간 과징금 미수납액 유형별 분류]

(단위: 백만원)

연도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집행정지)	임의체납	합 계
	60일초과	60일이내			
2015	125,382	32,772	6,890	54,146	219,189
2016	213,527	34,462	2,269	22,163	247,989
2017	50,577	46,846	15,012	28,742	141,177
2018	84,356	147,690	16,963	38,618	287,62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에 근거가 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징금 환급결정을 통해 납부 금액을 반환하고 있다. 해당 환급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¹⁹⁾에 따른 과오납금으로 취급되어 환급결정을 내린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통상적으로 징수결정액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2018년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미도래 건이 많아 징수결정액(5,295억원)의 72.4%에 불과한 3,836억원만이 실제로 수납되었다.

[2015~2018회계연도 과징금 징수·환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A)	환급액 (B)	재산징액 (C)	실제수납액 (A+C)	순수환급액 (B-C)	결산상수납액 (A-B+C)
2015	547,881	674,069	357,240	11,656	685,725	345,584	328,485
2016	627,074	667,688	330,395	39,533	707,221	290,862	376,826
2017	1,299,380 (268,235)	1,346,765 (315,620)	251,347	62,763	1,409,528 (378,383)	188,584	1,158,181 (127,036)
2018	529,465	305,162	144,286	78,466	383,628	65,820	239,342

주: 괄호안은 쉼표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1조311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9)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분석의견

과징금 세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쉐컴사에 대한 1조 331억원의 과징금부과 건을 제외한 최근 4년간 과징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5.2~60.1%로 매우 저조하다. 특히, 2018회 계연도 과징금 수납률은 45.2%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4년간 과징금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2015	653,240	547,881	328,485	60.0
2016	629,161	627,074	376,826	60.1
2017	481,300	1,299,380 (268,235)	1,158,181 (127,036)	89.1 (47.3)
2018	508,531	529,465	239,342	45.2

주: 괄호안은 쉐컴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1조311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재산부족 등을 이유로 한 임의체납 규모 역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²⁰⁾ 2018년 결산기준 2015년 이전 징수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137억원에 달하는 등 386억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체납되고 있다.

[2016~2018년 임의체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5.1.1.이전	2015.1.1.이후	소 계
임의체납액	22,163	28,742	13,656	24,962	38,61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 2016년 222억원 → 2017년 287억원 → 2018년 386억원

임의체납 건의 대부분이 범위반사업자의 재력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체납과징금을 완벽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징금의 부과 취지가 범위반행위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박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사건처리절차 진행으로 적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인 징수 시도를 통해 사업자의 고의적인 납부회피를 방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범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한도(비율·정액과징금)를 일률적으로 현행법보다 2배 상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상향조정된다면 수납률이 현재보다 더욱 저조해 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행법과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한도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비율한도	정액한도	비율한도	정액한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관련매출액 대비)	3%	10억원	6%	20억원
기업집단규제 (범위반금액 대비)	10%	-	20%	-
카르텔 (관련매출액 대비)	10%	20억원	20%	40억원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매출액 대비)	2%	5억원	4%	10억원
부당지원행위 등 (평균매출액 대비)	5%	20억원	10%	40억원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쉐컴사에 대한 고액의 과징금 부과사건 소송추이에 따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12월 쉐컴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²¹⁾에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9.1.31. 대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

21)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과명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²²⁾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3.21.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조기에 행정처분을 확정하고자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7억원을 직권취소하였다. 환급가산금은 153억원으로 이를 합한 환급총액은 640억 원에 달한다.²³⁾

[퀄컴사에 대한 2009년 행정처분 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원처분 과징금	재산정 과징금	환급금 총액		
		계	과징금 직권취소액	환급가산금
273,197	224,539	63,991	48,658	15,33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에도 퀄컴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²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과징금 부과규모(총 1조 311억원)가 2009년 사건의 4배에 달하는 대형 사건으로 행정소송에서 총 부과과징금의 일부만 취소되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한 회계연도 과징금 수납액을 넘어서는 대규모 환급가산금 및 지연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앞으로 남은 2차례의 변론(8.12 / 8.14)을 끝으로 변론기일이 종료될 예정이다.

동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선진 경쟁정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송추이에 따라 채원 확보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추가적인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세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2) ① CDMA 모델칩은 원심판결 인정, ② RF칩은 원심 파기환송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24) CDMA, WCDMA 및 LTE 관련 모델칩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계약상대방(제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의 조건요구

1-5. 임의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결정 필요

가. 현황

가산금²⁵⁾은 과징금·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일정비율(과징금: 연 7.5%, 과태료: 고정 3%, 매월 1.2% 증가산금)을 부과하는 과목이다. 2018년에는 2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3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43.5%의 수납률을 보였다.

[2018회계연도 가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가산금	247	247	247	283	123	160	0	43.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누적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규모를 징수결정액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쟁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납부기간을 도과한 임의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누적체납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정액을 산정한다. 반면, 과징금·과태료 미납으로 발생한 가산금의 경우에는 체납된 과징금이 실제 수납된 건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액을 산정하여, 과징금 임의체납액(2018년 결산 기준 386억원)에 비해 가산금 징수결정액(2억 8,300만원)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²⁶⁾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가산금을 산정하도록

25) 코드: 일반회계 58-681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가산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징수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실제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산금 징수결정액이나 미수납액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수입결산보고서에 담기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임의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징수결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 이상 임의체납된 과징금 등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결정을 실시하고, 과징금·과태료 임의체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 현황을 매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에 반영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가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국세청 (일반회계)	982,000	982,000	982,000	5,105,440	828,625	3,924,806	352,010	16.2
관세청 (일반회계)	5,202	5,202	5,202	418,195	2,706	409,486	6,003	0.6
경찰청 (일반회계)	38,950	38,950	38,950	154,148	29,373	121,205	3,571	19.1
국토교통부 (균특회계)	4,189	4,189	4,189	72,376	3,952	67,167	1,258	5.5
환경부 (환특회계)	934	934	934	35,497	410	35,086	2	1.2

주: 가산금 징수결정액 기준 상위 5개 부처 결산현황을 정리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III

개별 사업 분석

1

소비자 후생 증진사업 분석

가.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자 후생증진 프로그램(1400)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후생증진 프로그램은 ①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사업(2018년 결산 4억 6,800만원), ②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2018년 결산 20억 7,300만원), ③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사업(2018년 결산 52억 3,300만원), ④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사업(2018년 결산 7억 2,800만원), ⑤ 한국소비자원 출연사업(2018년 결산 416억 5,200만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¹⁾된다.

[2018회계연도 소비자 후생 증진 프로그램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472	472	0	0	472	468	0	4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2,127	2,127	0	0	2,127	2,073	0	54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3,497	3,497	1,529	210	5,236	5,233	0	3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1,069	1,069	0	△210	859	728	0	131
한국소비자원 출연	41,652	41,652	0	0	41,652	41,652	0	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광근 예산분석관(scolll@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일반회계 1431-600)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일반회계 1431-610)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일반회계 1451-620)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일반회계 1451-621) / 한국소비자원 출연(일반회계 1461-630)

나. 분석의견

소비자 후생증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을 구축(1단계 2016년 말 구축, 2단계 2017년 말 구축)하였다. “행복드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생성한 정보 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90여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행복드림”의 상품정보는 상품정보/리콜정보/인증정보로 구성되는데 국가기술 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2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1,000만 건의 상품·안전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상품정보는 물품, 금융상품, 의료기관, 여행사 보험가입 현황과 관련한 500만 건 이상의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거나 상품명 등을 입력하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 이용과정에서 철자나 띄어쓰기가 시스템 연계기관이 입력한 정보와 상이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정보가 대부분 검색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4월부터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대체검색어 6,878건 및 연관검색어 4,141건을 축적하였다고 설명하나 개별 상품검색 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행복드림 내 상품정보 현황]

(단위: 개)

구 분	물품	금융상품	의료기관	여행사 보험가입현황	합 계
갯 수	5,291,545	920	70,991	22,229	5,385,685

주: 2018.6.22. 기준

자료: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행복드림” 어플리케이션은 2017.3.21.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8.1.12. 기능을 확장하여 재출시 되었는데, 2018.4월 최종 업데이트 이후 1년 이상 기능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의 번거로움,²⁾ 첨부파일 용량 제한(30MB)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 등의 이유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률도 다른 중앙부처 공공앱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모바일 대민 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결과’에 따르면 “행복드림”의 앱 다운로드 수는 309,998건, 현 유지 수는 17,857건으로 다운로드 대비 유지 수가 5.8%에 불과하여 중앙부처 공공앱 163개 중 140위에 그쳤다. “행복드림”과 다운로드 건수가 비슷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국민신문고”의 경우 다운로드 수 422,213건, 유지 수 100,268건(23.7%)으로 대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

(단위: 건, %)

구분	소관부처	다운로드 수(A)	현 유지 수(B)	비율(B/A)
행복드림	공정거래위원회	309,998	17,857	5.8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422,213	100,268	23.7
중앙부처 공공앱(163개) 평균		426,337	246,539	28.4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공공앱) 성과측정 및 정비결과’, 2018.12.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는 정보량도 중요하지만 해당 정보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운영방식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신뢰할만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인 ‘참가격’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9년 서민물가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에는 웹페이지 운영 등에 2억 8,570만원을 집행하였다.

2) 스마트폰 기반 어플리케이션임에도 최초인증 시 반드시 PC환경 필요

[2018년 참가격 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예산	집행	잔액
일반수용비	289,490	280,937	8,553
여비	3,050	2,631	419
업무추진비	2,282	2,132	150
일용임금	610	3	607
소계	295,432	285,703	9,729

자료: 한국소비자원

먼저, 물가관리 차원에서 보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과 소비자단체 ‘물가감시센터’가 같은 목적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관계부처 합동, 2009.6.25.)을 발표하면서 석유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판매가격 정보공개시스템을 여타 생필품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참가격’의 전신인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T-Price)을 구축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13.3.28.)을 발표하면서 물가안정화를 위한 민간 시장감시 기능 강화계획을 밝히고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가분석팀을 물가감시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참가격’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사업이 중복 운영되고 있다.

[참가격과 물가감시센터 비교]

구분	참가격	물가감시센터
운영주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2018결산	2억 8,570만원	4억 2,600만원
법적근거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공자료	전국단위 유통업체 155개 품목, 450개 상품	서울특별시 유통업체 37개 품목, 90개 상품
자료수집방법	조사업체 위탁(일반경쟁입찰)	9개 회원단체 모니터링 요원

자료: 참가격(www.price.go.kr)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price.consumer.or.kr)

「소비자기본법」³⁾은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모두 가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두 사업이 모두 법적근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통합 또는 역할조정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가격정보 제공 차원에서 보면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경로에 비해 접근성·활용도가 다소 떨어진다.

‘참가격’은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편의점) 1,378개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생필품 155개 품목(450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매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참가격 가격정보 제공 판매점 현황]

(단위: 개)

구 분	대형마트	SSM	백화점	전통시장	편의점	합 계
업체수	411	899	30	35	3	1,378

자료: 참가격(www.price.go.kr)

‘참가격’이 제공하는 정보를 ① 온라인 측면에서 비교하면 대형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제한적인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가 유용하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의 경우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참가격을 통한 정보제공이 갖는 의미가 사업초기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② 오프라인 측면에서 비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가격’은 오프라인 매장가격을 국민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생필품 구매시 대부분 거주공간에서 근접한 매장을 이용하며, 한 곳에서 여러 물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참가격’은 기초지자체(시·군·자치구) 단위로 정보를 취합 공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제35조(업무) 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개하고 있으나 실제 가격비교는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물가정보’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스템에 비해 실제 효용이 낮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85억 8,500만원이며, 620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9.3%인 429억 6,500만원을 수납하고 177억 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3억 3,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8,585	28,585	28,585	62,013	42,965	17,708	1,339	69.3

자료: 금융위원회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4,469억 5,700만원이며, 이 중 99.9%인 2조 4,439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376,906	2,446,906	2,446,957	2,443,968	237	2,752	99.9

자료: 금융위원회

나.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4조 2,162억 4,500만원이며, 43조 5,417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1.9%인 22조 5,785억 4,400만원을 수납하고 18조 8,817억 3,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조 9,542억 3,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2,234,613	3,454,399	3,454,399	3,534,909	3,427,209	0	0	99.2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84,681	82,961	82,961	102,521	82,961	0	0	80.9
신용보증기금	7,716,140	7,827,790	7,827,790	24,060,360	8,118,699	14,194,361	1,747,300	33.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984,581	984,581	984,581	2,982,624	1,026,371	1,915,735	40,518	34.4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455,612	4,455,612	4,455,612	6,960,379	4,024,360	2,769,737	166,283	57.8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7,410,902	7,410,902	7,410,902	5,900,978	5,898,944	1,902	131	99.9
합계	22,886,529	24,216,245	24,216,245	43,541,771	22,578,544	18,881,735	1,954,232	51.9

자료: 금융위원회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24조 2,162억 4,500만원이며, 이 중 93.2%인 22조 5,785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731억 4,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2,234,613	3,454,399	3,454,399	3,427,209	0	26,118	99.2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84,681	82,961	82,961	82,961	0	0	100.0
신용보증기금	7,716,140	7,827,790	7,827,790	8,118,699	1,541	379,101	103.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984,581	984,581	984,581	1,026,371	0	15,058	104.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455,612	4,455,612	4,455,708	4,024,360	82	121,526	90.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410,902	7,410,902	7,410,902	5,898,944	0	131,346	79.6
합계	22,886,529	24,216,245	24,216,341	22,578,544	1,623	673,149	93.2

자료: 금융위원회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08억 8,300만원 (14.9%)이 감소한 621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32억 7,000만원 (41.0%)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00,843	28,585	28,585	42,965	14,380	△57,878
기금	4,614	44,485	44,485	19,222	△25,263	14,608
합계	105,457	73,070	73,070	62,187	△10,883	△43,270

자료: 금융위원회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4억 5,900만원 (0.8%)이 감소한 4,079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777억 6,300만원(77.2%)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29,800	276,906	346,906	343,968	△2,938	114,168
기금	357	62,170	64,473	63,952	△521	63,595
합계	230,157	339,076	411,379	407,920	△3,459	177,763

자료: 금융위원회

라.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금융위원회 자산은 21조 9,617억 4,900만원이고, 부채는 55조 1,333억 400만원이며, 순자산은 △33조 1,715억 5,5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3조 4,344억 8,000만원, 투자자산 6조 9,982억 5,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조 681억 1,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대비 1조 7,372억 900만원(7.3%)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정부내장기예탁금 만기도래와 유동자산으로의 유동성대체로 투자자산이 전기 대비 2조 7,243억 8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9조 9,675억 8,400만원, 장기차입부채 41조 7,724억 9,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대비 6조 3,610억 9,100만원(10.3%)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가 정부 내 장기에수금 등의 감소로 전기 대비 9조 9,617억 2,1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1,961,749	23,698,958	△1,737,209	△7.3
Ⅰ. 유동자산	13,434,480	12,579,668	854,812	6.8
Ⅱ. 투자자산	6,998,250	9,722,558	△2,724,308	△28.0
Ⅲ. 일반유형자산	449,312	448,034	1,278	0.3
Ⅳ. 무형자산	11,595	8,203	3,392	41.4
Ⅴ. 기타비유동자산	1,068,112	940,494	127,618	13.6
부 채	55,133,304	61,494,395	△6,361,091	△10.3
Ⅰ. 유동부채	9,967,584	6,035,328	3,932,256	65.2
Ⅱ. 장기차입부채	41,772,498	51,734,219	△9,961,721	△19.3
Ⅲ. 장기충당부채	3,345,116	3,688,019	△342,903	△9.3
Ⅳ. 기타비유동부채	48,106	36,830	11,276	30.6
순 자 산	△33,171,555	△37,795,438	4,623,883	12.2
Ⅰ. 기본순자산	76,948,724	76,948,723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08,346,114	△113,196,411	4,850,297	4.3
Ⅲ. 순자산 조정	△1,774,165	△1,547,750	△226,415	△14.6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4,979억 6,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조 9,832억 7,800만원, 관리운영비 1,507억 6,400만원, 비배분비용 1조 1,973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조 8,701억 7,000만원, 비배분수익 3,597억 6,400만원, 비교환수익등 3조 5,994억 6,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44억 4,000만원(0.7%) 감소한 2조 1,014억 9,500만원이며, 이는 비배분비용이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등 이자비용 감소로 전기 대비 2,019억 6,1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주택금융지원프로그램 등의 순원가가 3,623억 1,000만원 감소하였으나 산업금융지원프로그램 등의 순원가가 3,990억 6,100만원 증가하여 전기 대비 367억 5,100만원 증가하였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76억 4,000만원과 경비 731억 2,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1조 1,621억 2,800만원과 자산처분손실 117억 7,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113,108	1,076,357	36,751	3.4
가. 프로그램 총원가	2,983,278	3,192,738	△209,460	△6.6
나. 프로그램 수익	1,870,170	2,116,381	△246,211	△11.6
II. 관리운영비	150,764	145,584	5,180	3.6
III. 비배분비용	1,197,387	1,399,348	△201,961	△14.4
IV. 비배분수익	359,764	505,354	△145,590	△28.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101,495	2,115,935	△14,440	△0.7
VI. 비교환수익 등	3,599,460	3,391,740	207,720	6.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497,965	△1,275,805	△222,160	△17.4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37조 7,954억 3,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3조 1,715억 5,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조 6,238억 8,300만원(12.2%) 증가하였는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2,221억 6,0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전기 대비 3,480억 7,500만원 증가하고 조정항목이 2조 5,638억 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과 제재금수익인 재원의 조달 2조 4,938억 6,100만원, 국고이전지출과 출자금 등 재원의 이전 3,029억 6,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항목은 9,350억 2,200만원으로 투자증권평가손익은 감소하였으나 출연금 등의 증가로 전기 대비 2조 5,638억 700만원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7,795,438	△39,285,278	1,489,840	3.8
II. 재정운영결과	△1,497,965	△1,275,805	△222,160	△17.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190,896	1,842,821	348,075	18.9
IV. 조정항목	935,022	△1,628,785	2,563,807	157.4
V. 기말순자산(I-II+III+IV)	△33,171,555	△37,795,438	4,623,883	12.2

자료: 금융위원회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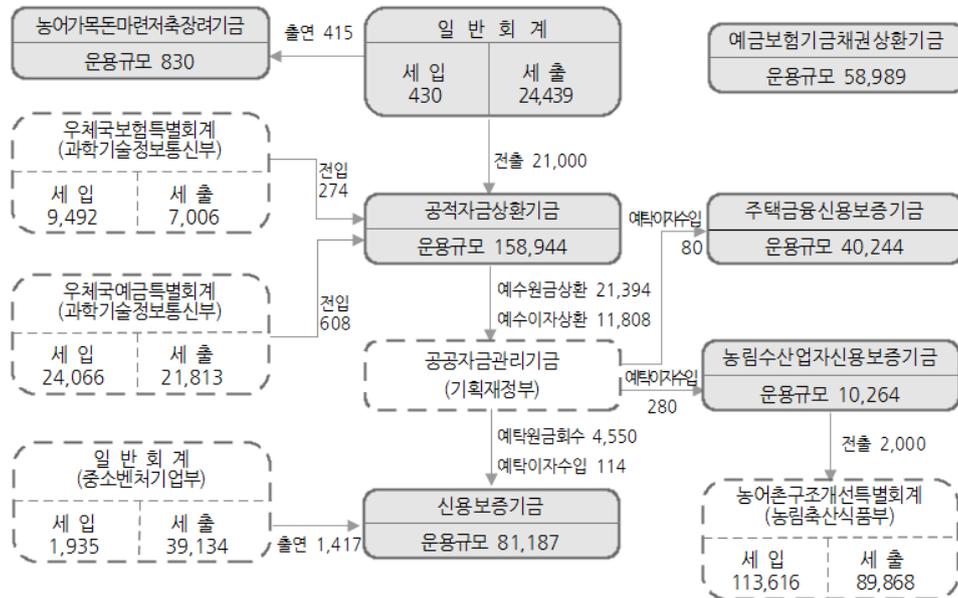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1,000억원 전출되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415억원 출연되었다. 반대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2,000억원을 전출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부터 1,417억원을 출연받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 274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 608억원을 전입받았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80억원의 예탁이자수입을 받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이자수입 280억원을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550억원의 예탁원금을 회수하고 114억원의 예탁이자수입을 받았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자본시장조사단운영(정보화) 사업,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등이 있다.

자본시장조사단운영(정보화) 사업은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포렌식 조사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억 5,600만원이 감액(3억 7,200만원→2억 1,600만원)되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은 정부의 대출 규제강화 부동산 정책이 정책모기지의 공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0억원 감액(1,000억원→900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 ② 서민금융지원 홍보 사업 등이 있다.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고, 서민금융지원 홍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홍보 강화를 위해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²⁾.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업으로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본예산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낮고, 추가 출자로 인한 민간자금 유치 효과가 기대보다 미흡할 우려가 있어 100억원 감액(2,000억원→1,900억원)되었다³⁾.

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5.

금융위원회는 ①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 확대**, ②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③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 증가**, ④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 유지**를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각 보증기금별 적정 운용배수를 도출하고 산출된 운용배수에 기반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의 경우 2018년 내에 결성이 완료되지 못한 자펀드가 일부 있어 향후 금융위원회의 사업 관리가 요구되며,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건전성 검토

금융위원회는 ① 농림수산업자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② 기업의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 ③ 전세자금 및 건설자금에 대한 보증 등을 수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3개 보증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3개 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 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금을 지출하고 있다.

[금융성기금별 설치 목적 및 조성 자원·지출 용도]

기금명	설치 목적	조성 자원	지출 용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소요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	◦ 정부출연금 ◦ 금융기관 출연금 ◦ 기금운용수익	◦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 지급 ◦ 구상권관리비 등
신용보증기금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 도모	◦ 정부출연금 ◦ 법정출연금 ◦ 기타 자체수입 ◦ 기금운용수익	◦ 기업의 채무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금 지급 ◦ 구상권관리 등 기타 사업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 정부출연금 ◦ 법정출연금 ◦ 기타 자체수입 ◦ 기금운용수익	◦ 보증료 환급 ◦ 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권관리 등 ◦ 기타 사업비

자료: 각 기금별 제출 자료

2018회계연도 3개 보증기금의 수입은 13조 1,694억원이며, 여유자금 회수 수입이 8조 9,442억원(6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자체수입 3조 5,811억원(27.2%), 정부 내부수입 6,441억원(4.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수입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수입 계
보증기금 합계	35,811	6,441	0	89,442	131,69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015	780	0	6,468	10,263
신용보증기금	21,502	6,081	0	53,604	81,18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1,294	80	0	28,870	40,244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018회계연도 3개 보증기금의 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여유자금 운용이 9조 4,021억원(7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사업비 3조 845억원(23.4%), 기금운영비 4,329억원(3.3%), 정부 내부지출 2,500억원(1.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지출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사업비	정부 내부지출	기금 운영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여유자금 운용	지출 계
보증기금 합계	30,845	2,500	4,329	0	0	94,021	131,69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039	2,500	512	0	0	4,213	10,263
신용보증기금	25,462	0	3,189	0	0	52,536	81,18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344	0	628	0	0	37,272	40,244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1-1. 보증기금별 적정 운용배수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가. 현황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금은 공급된 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¹⁾하며, 이행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²⁾을 행사한다.

기금이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소송, 경매 등), 채무자면담 등 채권회수 활동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되는데, 대위 변제율, 구상채권 회수율이 낮게 유지되고, 기금의 운용 배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가의 여부로 기금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2018년 3개 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9.7~14.8배로 법정배수 이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별 보증 운용 실적]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실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A)	101,471	110,122	121,804	133,968	141,500	148,906	
	기본재산(B)	24,513	25,252	22,974	19,357	17,241	15,306	
	운용배수(A/B)	4.1	4.4	5.3	6.9	8.2	9.7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A)	484,545	491,862	495,041	508,463	500,913	505,317	
	기본재산(B)	57,017	54,380	50,133	51,214	44,377	50,909	
	운용배수(A/B)	8.5	9.0	9.9	9.9	11.3	9.9	
주택 금융 신용 보증 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 계정	보증잔액(A)	433,800	542,867	669,559	716,207	700,026	775,180
		기본재산(B)	44,906	51,028	56,974	61,140	70,148	71,125
		운용배수(A/B)	9.7	10.6	11.8	11.7	10.0	10.9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계정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계정	보증잔액(A)	11,699	15,187	20,561	26,969	37,376	34,286
		기본재산(B)	982	1,185	1,564	1,785	2,719	2,312
		운용배수(A/B)	11.9	12.8	13.1	15.1	13.7	14.8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 1)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 제43조의3
- 2)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기금의 보증공급 여력은 대위변제율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대위변제율이 낮을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있으므로 적정 운용배수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대위변제율이 1%인 경우 이론상 1억원의 자본으로 1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안정적인 보증운용을 위하여 통상 일정 수준의 완충(buffer)을 두어 보다 낮은 수준의 운용배수를 설정한다.

각 기금의 설치 근거법에서는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보증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 한도는 20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보증 한도는 40배이다. 그러나 각 기금은 기금 운용 시 자체적으로 적정 운용배수를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12.5배, 신용보증기금 10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11~15.4배의 범위를 적정 운용배수로 설정·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간 보증기금별 운용배수]

(단위: %, 배)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율	1.3	1.4	1.2	1.6	1.9	
	운용배수	4.1	4.4	5.3	6.9	9.7	
	자체 적정운용배수	12.5	12.5	12.5	12.5	12.5	
	법정배수	20	20	20	20	20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율	3.2	2.6	3.2	3.2	3.8	
	운용배수	8.5	9.0	9.9	9.9	9.9	
	자체 적정운용배수	10	10	10	10	10	
	법정배수	20	20	20	20	20	
주택 금융 신용 보증 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 계정	대위변제율	0.9	0.6	0.4	0.3	0.2
		운용배수	9.7	10.6	11.8	11.7	10.9
	신용보증 계정	자체 적정운용배수	11~15	11~15	11~15	11~15	11~15
		법정 배수	40	40	40	40	40
		시행령상 배수	30	30	30	30	30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계정	대위변제율	0.2	0.2	0.2	0.1	0.2
		운용배수	11.9	12.8	13.1	15.1	14.8
		자체 적정운용배수	14.7~15.4	14.7~15.4	14.7~15.4	14.7~15.4	14.7~15.4
		법정배수	40	40	40	40	40
		시행령상 배수	30	30	30	30	30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나. 분석의견

첫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배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과거 사고율, 대위변제율, 회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운용배수를 산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2018년 운용 배수는 9.7배로 신용보증기금(10.6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계정 10.9배, 주연보계정 14.8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보증 잔액의 증가와 농특회계 반환금 편성³⁾에 따른 기본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2014년 4.1배에 불과했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2018년 9.7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총 1조 4,000억원이 전출되었으며, 2019년에도 2,000억원이 추가 반환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연도별 보증 운용 실적]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실적
보증잔액(A)	101,471	110,122	121,804	133,968	141,500	148,906
기본재산(B)	24,513	25,252	22,974	19,357	17,241	15,306
운용배수(A/B)	4.1	4.4	5.3	6.9	8.2	9.7
사고율	1.73	1.70	1.50	1.84	2.20	2.09
대위변제율	1.30	1.40	1.21	1.56	1.34	1.86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농신보기금에서 농특회계로의 연도별 반환 추이]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계획)
농신보기금에서 농특회계로 반환금	5,000	1,000	3,000	3,000	2,000	2,000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2018년 4월 정부는 농어업분야 창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농신보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농신보의 보증한도 및 보증대상, 보증비율 확대,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1972~2010년 간 정부 출연금으로 총 5조 4,196억원을 출연받았으며, 농신보기금에서 농특회계(농특세계정)로 반환금 사업을 통해 기금의 여유재원을 반환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편 방안]

전략	세부 방안																																								
1.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	○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에 대한 보증비율을 상향 (농어업 85→90%, 비농어업 80→85%)																																								
② 창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개선	○ 창업 우대보증 지원대상 확대(연령제한 완화) ○ 기존 우대보증 보증비율 상향(90→95%) ○ 보증한도 3억원으로 상향																																								
③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제도 마련	○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를 감면(최대 75%)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 마련																																								
2.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① 환경변화에 맞추어 농신보의 보증대상 확대	○ 농림수산업 新성장 분야가 보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등 정의 유연화 ○ 농촌융복합사업자, 농수산물 가공품을 원료로 2차 가공하는 중소기업을 보증대상에 포함																																								
② 스마트팜 등 농어업 혁신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스마트팜 보증한도 확대(법인 50억원→70억원) ○ 스마트팜 사업자 중 농어업계 전문교육 이수자 보증비율 상향 지원(85→90%)																																								
3.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① 전액보증 한도 확대를 통한 소액자금 조달 원활화	○ 농신보가 전액보증하는 소액자금 한도 상향 (2천만원→3천만원)																																								
② 필요자금 규모 확대에 맞추어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	○ 동일인 보증한도를 확대하되, 보증심사시스템 고도화 (개인 10억원→15억원, 법인 15억원→20억원)																																								
③ 보증료 체계 변경을 통한 보증료 부담 경감	○ 보증료 할증구간을 조정하여 약 7% 수준 경감 <참고 : 농신보 기준 보증료율* 체계 개선안>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현행</th> <th colspan="2">개 선안</th> </tr> <tr> <th>보증금액</th> <th>분야</th> <th>보증금액</th> <th>분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개인</td> <td>1억원 이하</td> <td>농림어업 0.3, 유통가공 등 0.4</td> <td>2억원 이하</td> <td>농림어업 0.3, 유통가공 등 0.4</td> </tr> <tr> <td>1~5억원</td> <td>0.4, 0.6</td> <td>2~7억원</td> <td>0.4, 0.6</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0.6, 0.9</td> <td>7억원 초과</td> <td>0.6, 0.9</td> </tr> <tr> <td rowspan="3">법인</td> <td>1억원 이하</td> <td>0.5, 0.8</td> <td>2억원 이하</td> <td>0.5, 0.8</td> </tr> <tr> <td>1~5억원</td> <td>0.7, 1.0</td> <td>2~7억원</td> <td>0.7, 1.0</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1.0, 1.2</td> <td>7~10억원</td> <td>0.9, 1.1</td> </tr> <tr> <td></td> <td></td> <td></td> <td>10억원 초과</td> <td>1.0, 1.2</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개 선안		보증금액	분야	보증금액	분야	개인	1억원 이하	농림어업 0.3, 유통가공 등 0.4	2억원 이하	농림어업 0.3, 유통가공 등 0.4	1~5억원	0.4, 0.6	2~7억원	0.4, 0.6	5억원 초과	0.6, 0.9	7억원 초과	0.6, 0.9	법인	1억원 이하	0.5, 0.8	2억원 이하	0.5, 0.8	1~5억원	0.7, 1.0	2~7억원	0.7, 1.0	5억원 초과	1.0, 1.2	7~10억원	0.9, 1.1				10억원 초과	1.0, 1.2
구분	현행		개 선안																																						
	보증금액	분야	보증금액	분야																																					
개인	1억원 이하	농림어업 0.3, 유통가공 등 0.4	2억원 이하	농림어업 0.3, 유통가공 등 0.4																																					
	1~5억원	0.4, 0.6	2~7억원	0.4, 0.6																																					
	5억원 초과	0.6, 0.9	7억원 초과	0.6, 0.9																																					
법인	1억원 이하	0.5, 0.8	2억원 이하	0.5, 0.8																																					
	1~5억원	0.7, 1.0	2~7억원	0.7, 1.0																																					
	5억원 초과	1.0, 1.2	7~10억원	0.9, 1.1																																					
			10억원 초과	1.0, 1.2																																					
4.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①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	○ 의무기간제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 등																																								
② 경영컨설팅 기능 강화	○ 농어업 경영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 컨설팅 대상자 확대(보증금액 5억원 ↑→3억원 ↑)																																								
③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를 통한 기술 심사능력 강화	○ 기술신용평가기관(ICB),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I) 외부기술평가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																																								
④ 예외보증 정비를 통한 보증지원의 효율성 제고	○ 유사한 성격의 예외보증을 통합, 단순화 (14개→8개로 통합, 보증비율 85%로 통일)																																								

자료: 관계부처 합동, 「농림수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2018.4.을 바탕으로 제작성

이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농업인과 어업인의 준용규정을 변경⁴⁾하여 곤충사육업자, 관상 어양식업 등 전통적인 농·어업이 아닌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② 농림수산물 2차 가공업자를 보증대상에 포함하며, ③ 농촌체험마을 사업자 등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증 대상이 확대되었다.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21년에는 추세증가액을 제외하고 보증잔액이 7,68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추가적인 농특회계 반환 없이도 보증배수가 2019년 13.0배, 2020년 15.7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과정에서 대위변제금 역시 증가⁵⁾하고 있어 기금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정한 적정 BIS비율 8%의 역수인 12.5배를 자체 적정운용배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증 대상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운용배수 설정으로, 기금의 건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향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 대상별 과거의 대위변제율, 부실률, 회수율 등 계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적정 운용배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운용배수에 기반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보증기금은 적정 운용배수 설정 시 대위변제율, 회수율 등 정량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법정배수는 20배이나 자체 적정운용배수를 10배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8년 결산 기준 운용배수는 9.9배이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같이 BIS비율을 고려하여 자체 적정운용배수를 10배로 설정하고 있는데,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BIS 권고(8%)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도 최소 10배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부실률이나 대위변제율, 회수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4) (기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5) 2014년 1,303억원 → 2018년 2,77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6년 연구용역⁶⁾에 기초하여 적정 운용배수를 산정한 것이며, 산정 근거로 단순히 BIS 비율만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부실률, 계정구분 효과⁷⁾ 등 여러 고려사항과 제도적·역사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2017년 운용배수 예측치를 산출하였을 뿐 장기적인 운용배수의 전망이 담겨있지 않고, 적용된 시나리오(기준, 충격, 심각, 금융위기) 중 기준 시나리오를 제외하고는 기본재산 잠식 등 극단적 가정 하에 작성⁸⁾되어 목표 운용배수 설정과 직접적 연관은 크지 않다.⁹⁾

따라서 과거 대위변제율, 부실률, 회수율 등 운용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 운용배수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 신용보증기금 연구용역,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 성과분석과 적정보증운용배수」, 2016.12.
- 7)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부터 일반보증 계정을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창업, 성장, 위탁, 안정 보증 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 ① 창업보증 계정: 업력 7년 이내 창업 기업 보증 중 안정계정 제외 보증
 - ② 성장보증 계정: 업력 7년 초과 성장기 기업 보증 중 위탁/안정 계정 제외 보증
 - ③ 위탁보증 계정: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장기 이용기업 중 위탁보증 전환 대상 기업
 - ④ 안정보증 계정: 천재지변, 경기악화, 고용불안 등에 대한 각종 특례보증, 제도전지원 및 정책성 특화보증, 시장실패영역 기업

8)

[시나리오별 2017년 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추정]

(단위: 억원, %, 배)

시나리오	항목	계정별				전체
		창업	성장	위탁	안정	
기준 ¹⁾	보증잔액	111,000	262,000	10,000	32,000	415,000
	추정부실률	5.40	3.59	3.59	6.58	4.30
	운용배수	8.8	8.9	11.6	68.7	9.5
충격 ²⁾	보증잔액	56,150	261,260	10,000	155,930	483,340
	추정부실률	5.60	5.23	5.23	26.64	12.18
	운용배수	3.8	10.0	13.7	기본재산 잠식	47.2
심각 ³⁾	보증잔액	33,440	190,600	10,000	292,740	526,780
	추정부실률	5.59	6.26	6.26	42.74	26.49
	운용배수	2.1	7.0	9.5	기본재산 잠식	기본재산 잠식
금융 위기 ⁴⁾	보증잔액	48,580	207,370	10,000	230,620	496,570
	추정부실률	5.61	5.48	5.48	34.56	19.00
	운용배수	3.2	7.5	10.1	기본재산 잠식	기본재산 잠식

주: 1) 주요 거시지표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
 2) 주요 거시지표가 미래 예측치 신뢰구간 80%(±1.3σ)에서 최극한을 나타낸다고 가정
 3) 주요 거시지표가 미래 예측치 신뢰구간 95%(±2.0σ)에서 최극한을 나타낸다고 가정
 4) 2007년 4사분기~2010년 3사분기까지 12분기 기간의 거시변수 적용
 자료: 신용보증기금 연구용역,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 성과분석과 적정보증운용배수」, 2016.12.을 바탕으로 제작됨

- 9)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예산을 통해 「신용보증의 적정운용배수 산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나 2019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

셋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적정 운용배수와 실제 운용배수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 보증 운용이 필요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부도율¹⁰⁾·대위변제율·회수율(주신보계정), 주택가격·금리·사망률(주연보계정)을 고려하여 적정 보증운용배수¹¹⁾를 산출하였다. 2018년 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9년부터 주신보계정 11.7~16.3배¹²⁾, 주연보계정 13.2~15.4배¹³⁾로 운용배수를 관리할 예정인데, 적정운용배수 산출 시 신용등급, 대위변제율, 회수율, 주택가격 등 보증업무의 다양한 사업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적정 보증배수 정의]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용역, MCG컨설팅, 「적정 보증배수 재산출 및 건전성 관리 강화」, 2019.3.

- 10) 주택신용보증 포트폴리오 특성과 경기 사이클을 포함하는 장기평균 부도율(개인보증은 신용등급별 부도율 적용, 사업자보증은 포트폴리오 장기평균 부도율 적용)을 적용하여 11개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 11) 신용보증잔액(주연보계정은 연금지급잔액)을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보증(연금)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를 의미한다.
- 12)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보증 부도상관계수를 바젤 기준인 30%로 적용할 경우 16.3배, 보수적 기준인 40%를 적용할 경우 11.7배가 도출된다.
- 13) 주택 가격이 연 1.05%의 비율로 10년 간 상승하고 고정된다는 보수적 가정 하에 13.2배, 바젤 표준법 적용 시 15.4배가 도출된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이 설정한 적정 운용배수와 실제 운용배수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계정별 운용배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10.9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14.8배였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경우 기금이 적정 운용배수로 설정한 13.2~15.4배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보증 잔액의 대부분(2018년 기준 95.8%)을 차지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운용배수는 10.9배로 적정 운용배수(11.7~16.3배)보다 낮다.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별 보증 운용 실적]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실적
주택금융 신용보증 계정	보증잔액(A)	433,800	542,867	669,559	716,207	700,026	775,180
	기본재산(B)	44,906	51,028	56,974	61,140	70,148	71,125
	운용배수(A/B)	9.7	10.6	11.8	11.7	10.0	10.9
	대위변제율	0.9	0.6	0.4	0.3	0.4	0.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계정	보증잔액(A)	11,699	15,187	20,561	26,969	37,376	34,286
	기본재산(B)	982	1,185	1,564	1,785	2,719	2,312
	운용배수(A/B)	11.9	12.8	13.1	15.1	13.7	14.8
	대위변제율	0.2	0.2	0.2	0.1	0.2	0.2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적정 운용배수와 실제 운용배수 간 괴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증가와 관계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10년 1조 6,550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8년 5조 7,610억원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금리 기조 및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보증부실률 하락으로 계획 대비 대위변제 지출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1-2. 보증기금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

가. 현황

금융위원회 소관 3개 보증기금은 공급된 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¹⁴⁾하며, 이행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¹⁵⁾을 행사한다. 이 때 기금이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소송, 경매 등), 채무자면담 등 채권회수 활동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¹⁶⁾으로 수납하게 된다.

2018년 3개 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액은 수정계획 기준 9,832억 500만원으로 21조 5,970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630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17,401	117,401	117,401	2,057,415	101,161	1,915,735	40,518	86.2	4.9
신용보증기금	642,690	642,690	642,690	16,460,021	518,360	14,194,361	1,747,300	80.7	3.1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223,114	223,114	223,114	3,079,593	143,574	2,769,737	166,283	64.4	4.7
주신보계정	216,265	216,265	216,265	3,067,016	138,578	2,762,158	166,280	64.1	4.5
주연보계정	6,849	6,849	6,849	12,577	4,996	7,579	3	72.9	39.7
합 계	983,205	983,205	983,205	21,597,029	763,095	18,879,833	1,954,101	77.6	3.5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14)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 제43조의3

15)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16) 코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9-596

신용보증기금 59-59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9-596

나. 분석의견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성실한 채무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금융위원회 소관 3개 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지급 후 구상채권(특수채권 포함)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주신보계정 63.0%, 주연보계정 60.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은 31.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31.5%로 상대적으로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기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로부터 “금융위원회 및 소관 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받았음에도 최근 5년 간 구상채권 회수율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하고 하락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74.2%에서 2018년 31.5%로,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32.7%에서 2018년 31.8%로 하락하였다.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기금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회수액	967	991	973	919	874	
	회수율	74.2	64.2	66.1	43.9	31.5	
	(누적)	(23.1)	(23.9)	(24.8)	(25.3)	(25.5)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회수액	5,725	5,640	5,159	5,009	4,881	
	회수율	32.7	35.3	29.9	33.0	31.8	
	(누적)	(32.9)	(33.0)	(32.8)	(32.8)	(32.8)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주신보 계정	회수액	1,679	1,969	1,908	1,405	1,179
		회수율	41.4	60.8	63.8	65.3	63.0
		(누적)	(41.9)	(43.4)	(44.8)	(45.8)	(46.5)
	주연보 계정	회수액	18	42	25	41	48
		회수율	78.3	120.0	55.6	128.1	60.0
		(누적)	(50.0)	(78.8)	(70.0)	(81.5)	(74.7)

주: 1. 특수채권회수액 포함

2. 회수율 = 연도중 회수액 / 연도중 대위변제액

3. 누적 회수율 = 회수액 누계 / 대위변제 누계

4. 원리금 기준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각 보증기금은 실물경기 침체와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 및 연대보증인 면제¹⁷⁾ 등 구상채권 회수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상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상채권 회수는 ① 기본재산의 유지 및 보증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② 구상채권 회수율이 하락할 경우 보증료 인상 및 신규보증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③ 성실한 채무이행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각 기금관리주체는 주어진 환경에서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회수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구상채권 회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법」¹⁸⁾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¹⁹⁾에서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 17) 2012.5. **개인사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 책임자 1인** 이외 연대보증 제한, 신규대출부터 적용하되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5년 간 단계적으로 해소
- 2013.7.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 2014.2.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면제(2014.2. 시행일 이후 신규창업 기업 적용)
 (Track1) **창업 후 1년 이내 초기 기업**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 보유
 (Track2) **창업 3년 이내의 전문가 창업기업**으로서 우수 기술력이 기(既) 입증된 기업
- 2015.11. 2016년부터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연대보증 폐지
- 2017.4. 연대보증면제 대상기업을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 2017.11. 2018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연대보증제 전면 폐지** 계획 발표(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8.4.2. 시행
- 18)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기금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과세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2018년 신용보증기금은 8,167건의 재산세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46억원을 회수하였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5,234건의 재산세 과세정보와 1,336건의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6억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였고²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최초로 과세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과세정보 요청 및 활용을 통한 구상채권 회수 실적]

(단위: 건, 억원)

기금명	과세정보		2015	2016	2017	2018
신용보증 기금	재산세 과세정보	제공건수	159,681	22,468	14,831	8,167
		회수금액	144	78	40	46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건수	-	-	-	-
		회수금액	-	-	-	-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재산세 과세정보	제공건수	-	-	-	5,234
		회수금액	-	-	-	3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건수	-	-	-	1,336
		회수금액	-	-	-	3

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정보를 2018년 12월에 제공받아 2019년 1월부터 활용 중임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과세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할 경우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용이하여 구상권 회수 실적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각 기금은 공공기관 및 행정안전부, 국세청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금의 과도한 자료 제공요구가 채무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및 자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20)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조항이 2014년 신설되어 신규정보 제공을 통해 첫째인 2015년 회수금액이 높았으며, 이후 이전 제공자료와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여 활용 중이므로 회수금액의 감소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3. 보증기금별 여유자금운용 검토

가. 현황

금융위원회 소관 3개 보증기금의 2018년도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2조 6,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93억원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신용보증기금이 6조 59억원으로 가장 많은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조 7,607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544억원 순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전년 대비 여유자금 운용평잔이 감소하였으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평잔은 증가하였다.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연도별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기금명	연도별 여유자금 운용평잔					증감 (B-A)
	2014	2015	2016	2017(A)	2018(B)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3,113	16,328	12,691	9,903	8,544	△1,359
신용보증기금	58,747	59,559	62,576	62,494	60,059	△2,43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7,748	45,020	47,831	51,320	57,607	6,287
합 계	119,608	120,907	123,098	123,717	126,210	2,493

주: 1. 연중 운용평잔 기준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제외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기금별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세 기금 모두 양(+)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0.1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0.1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0.07%)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연도별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단위: %, %p)

기금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실현	초과								
	수익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47	0.13	2.59	0.43	1.66	0.20	1.45	0.11	2.04	0.12
신용보증기금	4.49	0.39	3.12	0.21	1.80	0.04	1.38	0.11	1.98	0.1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83	0.19	2.66	0.22	1.66	0.06	1.31	0.03	2.06	0.07

주: 초과수익률 = 실현수익률 - 기준수익률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참고로 여유자금 현황 집계에서는 제외²¹⁾하였으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말 기준 일부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8년 말 예탁잔액은 1조 6,761억원(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조 1,500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261억원)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현황]

(단위: 억원)

기금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 예탁액	연말 여탁잔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6,000	6,000	5,000	11,000	0	11,000	0	11,000	500	11,500
신용보증기금	4,550	4,550	0	4,550	0	4,550	0	4,550	0	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	0	0	0	5,261	5,261	0	5,261	0	5,261
합 계	12,500	12,500	5,000	17,500	5,761	22,761	0	22,761	500	16,761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통한 이자수입 및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78억원), 신용보증기금(114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80억원) 순으로 이자수입이 많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수익률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55%, 신용보증기금 2.54%로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았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수익률이 1.52%로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률 2.06%보다 낮았다.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수익률]

(단위: 억원, %)

기금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예탁 이자수입	평균 수익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4	3.15	203	2.70	276	2.55	280	2.55	278	2.55
신용보증기금	98	2.74	115	2.54	115	2.54	115	2.54	114	2.5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	0	0	0	43	1.52	80	1.52	80	1.52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2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은 각 기금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의 하나로, 넓은 의미에서 기금 여유자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여유자금에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 계산 등 자료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여유자금 운용규모 산출 시 각 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을 제외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운용 방식별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자금 운용 방식별 투자 비중을 신중적으로 조정하는 등 여유자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소관 3개 보증기금은 여유자금의 75.5%인 9조 5,340억원을 직접운용하고 19.7%인 2조 4,866억원을 연기금투자쪽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방식별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기금명	직접운용		연기금 투자		개별위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6,899	69.7	3,001	30.3	0	0.0
	신용보증기금	47,456	75.9	8,980	14.4	6,058	9.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9,699	74.2	13,801	25.8	0	0.0
	합 계	94,054	74.7	25,782	20.5	6,058	4.8
201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6,551	76.7	1,993	23.3	0	0.0
	신용보증기금	42,760	71.2	11,295	18.8	6,004	1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6,029	79.9	11,578	20.1	0	0.0
	합 계	95,340	75.5	24,866	19.7	6,004	4.8

주: 운용평잔 기준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그러나 모든 기금에서 직접운용의 실현수익률 및 초과수익률이 연기금투자쪽 위탁 방식보다 높았으며, 연기금투자쪽은 모두 음(-)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연기금투자쪽의 수익률이 저조하였다. 연기금투자쪽의 2018년 초과수익률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0.10%), 신용보증기금(△0.1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0.29%)에 불과하다.

[2018년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방식별 수익률]

(단위: %, %p)

기금명	직접운용		연기금투자		개별위탁	
	실현수익률	초과수익률	실현수익률	초과수익률	실현수익률	초과수익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6	0.14	1.46	△0.10	-	-
신용보증기금	2.25	0.21	0.16	△0.17	3.66	0.1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42	0.19	0.91	△0.29	-	-

주: 1. 초과수익률 = 실현수익률 - 기준수익률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이와 같은 수익률 차이는 기금별로 운용 방식에 따라 자산군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기금 모두 연기금투자품을 통해 국내 채권형 또는 혼합형 수익증권을 운용하고 있는데, 특히 2018년 국내 혼합형 수익증권 수익률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16%, 신용보증기금 △1.7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67%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운용 방식별·자산군별 수익률 현황]

(단위: %, %p)

기금명 (계정)	운용 방식		2017		2018			
			실현수익률	초과수익률	실현수익률	초과수익률		
농림 수산 업자 신용 보증 기금	직접 운용	단기	현금성(3개월 미만)	1.07	0.08	0.99	△0.06	
			유동성(3개월~1년)	1.42	0.38	-	-	
		중장기	확정금리형	1.78	0.33	2.01	0.22	
			국내채권형	1.24	△0.12	2.72	△0.44	
	소 계			1.63	0.21	2.16	0.14	
	연기금 투자품	단기	현금성(3개월 미만)	1.72	0.42	1.72	0.10	
			국내채권형	1.01	0.23	2.38	△0.12	
		중장기	국내혼합형	-	-	△3.16	△0.15	
			소 계	1.02	△0.12	1.46	△0.10	
	신용 보증 기금	직접 운용	단기	현금성(3개월 미만)	1.10	△0.16	1.47	△0.07
확정금리형				1.79	0.22	2.05	0.27	
중장기			국내채권형	0.86	△0.05	3.27	△0.07	
			소 계	1.67	0.18	2.25	0.21	
연기금 투자품		단기	현금성(3개월 미만)	1.27	△0.02	1.72	0.18	
			국내채권형	0.77	△0.03	2.94	△0.14	
		중장기	국내혼합형	1.43	0.74	△1.72	△0.08	
			소 계	0.77	△0.03	0.16	△0.17	
개별 위탁		중장기	국내채권형	0.65	△0.06	3.66	0.12	
			소 계	0.65	△0.06	3.66	0.12	
주택 금융 신용 보증 기금 (주신보)	직접 운용	단기	현금성(3개월 미만)	1.25	0.45	1.50	0.55	
			확정금리형	1.82	0.17	2.14	0.18	
		중장기	국내채권형	1.11	△0.11	3.26	0.20	
			소 계	1.50	0.04	2.42	0.19	
	연기금 투자품	단기	현금성(3개월 미만)	1.10	△0.20	1.72	0.08	
			국내채권형	0.76	△0.02	2.90	△0.12	
		중장기	국내혼합형	-	-	△1.67	△0.29	
			소 계	0.76	△0.02	0.91	△0.29	
	주택 금융 신용 보증 기금 (주연보)	직접 운용	단기	현금성(3개월 미만)	1.25	0.45	1.50	0.55
				확정금리형	1.79	0.18	2.17	0.20
중장기			국내채권형	1.41	0.14	2.75	0.08	
			소 계	1.70	0.17	2.23	0.19	
연기금 투자품		단기	현금성(3개월 미만)	-	-	1.72	0.06	
			국내채권형	0.68	△0.02	3.00	△0.10	
		중장기	소 계	0.68	△0.02	3.00	△0.10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위변제 준비금의 성격으로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²²⁾, 「신용보증기금법」²³⁾, 「한국주택금융공사법」²⁴⁾에 따르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기금별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²⁵⁾에서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기금투자폴 중간운용사별 자금을 재배분하고,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전술적 자산배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간운용사별 자금 배분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은 2년 단위로 연기금투자폴 중간운용사별 성과를 평가하여 자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매년 운용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신규자금 배분 및 기존자금 재배분을 실시하고 있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기금의 사용)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3)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차목·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채·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5) 「국가재정법」 제79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①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②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지침을 정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장상황을 고려한 자금배분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채권 금리 전망에 따라 자산군별 허용범위 내에서 예금과 채권 비중을 조정하고 있으나 혼합형 펀드(채권 80%, 주식 20%)로 운용하는 주식은 중장기 전망에 따라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자금계획 수립 시 자산군별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자산군별 비중을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중에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군별 허용범위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고 연초 자산군 배분과 유사한 수준²⁶⁾으로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있다.

혼합형 수익증권은 주식 및 채권이 혼합된 자산으로 자산군의 다양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다른 자산군에 비하여 경기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기금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연도 중 탄력적으로 자산군을 변경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증공급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 등 여유자금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10년 1조 6,550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8년 5조 7,610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운용규모	1,655	2,154	2,721	3,335	3,775	4,502	4,783	5,132	5,761
수익률	6.66	4.50	4.64	3.00	3.84	2.66	1.66	1.31	2.06

주: 1. 연중 운용평잔 기준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www.openfiscadata.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의 지속적 증가는 저금리 기조 및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보증부실률 하락으로 계획 대비 대위변제 지출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지출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대위변제 계획과 지출액이 1,000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6) 2018년 중장기 예치금과 유가증권 간 자산배분 비중을 일부 변경하였다.(계획 대비 유가증권 운용 비중 주신보계정 0.2%p, 주연보계정 5.6%p 증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계획 대비 지출 추이]

(단위: 십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A)	171	167	398	285	310	330	386	399	296
지출(B)	212	222	261	434	408	328	303	218	195
차이(B-A)	41	55	△137	149	98	△2	△83	△181	△101

주: 계획은 당초계획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수요 발굴, 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여유자금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사업¹⁾은 국제금융감독 공조체제 강화 및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한편, 금융중심지(financial hub)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지원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을 위한 금융중심지센터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현액 12억 2,900만원 중 10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1,229	1,229	±15	1,229	1,062	86.4	127	4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동법 제5조²⁾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4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이 시행 중이다. 2019년 현재 서울특별시(여의도)와 부산광역시(문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황준연 예산분석관(scolll@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431-301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 등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중심지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등 국제금융거래 규모의 변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유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 규모(2017년 1.8조 달러, 세계 9위) 및 상장회사 수(2017년 2,114개, 세계 7위)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고, 펀드순자산 규모는 2017년 4,185억 달러로 세계 13위를 기록하였다. 주식 외국인 보유액, 국채 외국인 보유액,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등 금융 국제화 지표 역시 개선되었다.

[금융 국제화 지표 현황]

(단위: 조원, %, 개)

주요 지표	2003	2017	증가율(배)
주식 외국인 보유액	143	636	4.4
국채 외국인 보유액	0.5	78.3	156.6
코스피200선물 외국인 투자비중	16.36	63.37	3.9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 비중	0.89	22.56	25.3
해외 거래소 제휴 ¹⁾	-	74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213	431	2.0

주: 1) 2003년은 거래소 통합 이전으로 해외 거래소 제휴건수 실적 없음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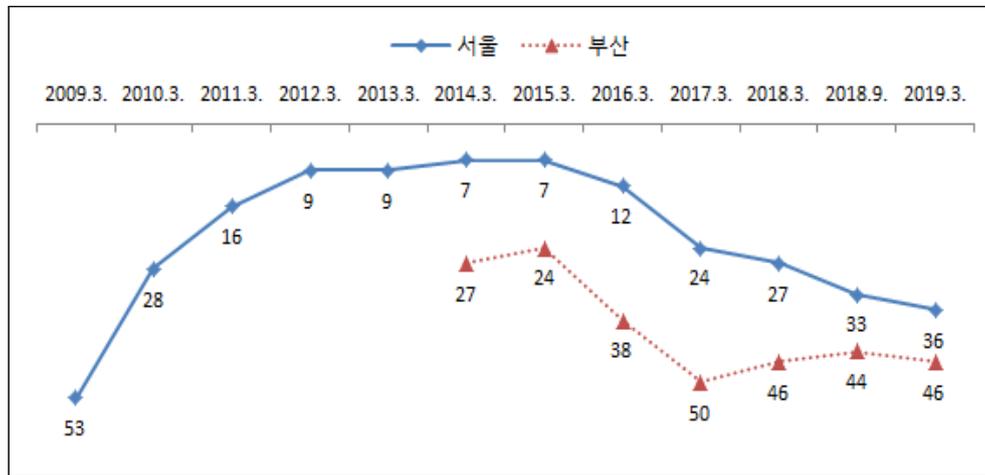
그러나 아래 지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① 우리나라 금융의 국제화 성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영국제 컨설팅 기관인 Z/Yen 그룹의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³⁾에 따르면 2019년 3월 서울의 순위는 36위, 부산의 순위는 46위로 모두 하락하였다.

특히 서울은 2015년 3월 7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여 2019년 29계단 하락한 36위에 불과하다. 이는 홍콩(3위), 싱가포르(4위), 상하이(5위), 도쿄(6위) 등 동아시아 지역 도시의 순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⁴⁾이다.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2009~2019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3) 영국제 컨설팅 기관인 Z/Yen 그룹이 City of London의 의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측정지수이다.

① (정량지표) World Bank, OECD, IMD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5개 분야 평가

영업환경	인적자본	인프라	금융부문 발전도	평판
정치적 안정성 및 관료법규	숙련노동자 활용 가능성	유형 인프라	금융산업 집적의 넓이 및 깊이	도시 브랜드 및 매력도
제도 및 규제 환경	고용시장 유연성	ICT 인프라	자본 조달 가능성	혁신수준
거시경제 환경	교육 및 발전	교통 인프라	시장 유동성	유인력 및 문화적 다양성
조세 및 비용 경쟁력	생활의 질	지속가능성	경제 규모	타 도시대비 장점

② (정성지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가 잘 알고 있는(familiar with) 금융도시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집 [10점 만점, 등간격 척도 활용: 1 = very poor, 10 = excellent]

4)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발표한 「제4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에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GFCI 순위는 전반적인 대내외 경제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적 요인, 타 금융중심지의 발전 추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꾸준한 개선을 추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아시아 도시별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2019.3.)]

순위	도시	순위	도시	순위	도시
3	홍콩	6	도쿄	29	칭다오
4	싱가포르	9	베이징	31	오사카
5	상하이	24	광저우	34	타이페이

자료: 금융위원회

해외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등 자본시장의 국제화 지표 역시 저조하다. 세계거래소연맹(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207개의 상장기업 중 해외기업은 21개(1.0%)에 불과하여 홍콩(154개, 6.7%), 싱가포르(259개, 35.0%), 타이페이(34개, 4.4%), 호주(142개, 6.6%)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②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4년 이후 36개의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철수를 하는 등 매년 외국계 금융회사의 철수 또는 영업 축소가 발생하고 있다.⁵⁾ 외국계 금융회사의 철수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회사의 집적을 촉진하여 금융중심지 발전을 도모하려는 동 사업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금융회사 진입 및 철수 현황]

(단위: 개)

연도	진입	철수	합계
2014년	8	5	+3
2015년	9	7	+2
2016년	9	7	+2
2017년	7	10	△3
2018년	5 ¹⁾	7 ²⁾	△2
합계	38	36	+2

주: 1)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외국계 금융사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한 실질적 진입은 3개사

2) 사무소에서 지점·현지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인수·합병된 경우를 제외한 실질적 철수는 2개사

자료: 금융위원회

5) 다만 금융위원회는 진입형태 전환(사무소·지점 ↔ 현지법인), 인수·합병에 따른 변경 등을 제외하면, 2017년 실질적 진입 4개사, 실질적 철수 4개사, 2018년 실질적 진입 3개사, 실질적 철수 2개사로 실질적인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에서 매력적인 경영·생활환경 조성 및 금융홍보 내실화를 통해 외국계 금융사 유치·정착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금융중심지는 지역별 특화전략⁶⁾을 수립·추진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서울 SIFC에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다수 입주하고 있으나, 부산 BIFC는 국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위주로 입주해 있으며, 외국계 기관은 비금융기관 2개(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칭다오 공상센터⁷⁾)에 불과하여 외국 기관의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

[서울 SIFC 및 부산 BIFC 입주 기업 현황]

(단위: 개)

지역	구분		금융	금융지원 ¹⁾	비금융	합 계
서울	국내 기관	민간	31	23	16	70
		공공	0	0	0	0
	외국계		26	21	31	78
	소계		57	44	47	148
부산	국내 기관	민간	12	1	5	18
		공공	8	-	2	10
	외국계		-	-	2	2
	소계		20	1	9	30

주: 1) 회계, 컨설팅, 금융관련 IT기관

1. 2018년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외국 금융회사의 유치를 위해 매년 해외 IR(투자자설명회)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외 IR 이후 실제 국내 진입까지 다소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국내 진출 성과 역시 부진한 측면이 있다. 그간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수행한 해외 IR은 2009~2018년 간 총 34건으로 13억 1,030만원의 비용을 해외 IR에 지출하였다. 이를 통해 총 34건의 MOU(금융회사 23건, 비금융회사 11건)를 체결하

서울	종합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인프라를 지속 구축함과 동시에 핀테크 산업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
6) 부산	해양·선박·물류산업을 활용하여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지역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전략 수립

7) 부산에 진출하고자 하는 칭다오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서비스와 해외자본 투자유치, 정보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였으나 2018년 말 기준 8개 금융회사가 국내에 진출해 있으며, 특히 부산은 진출 실적이 전무하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IR을 통한 MOU 체결이 실제 국내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외 IR을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 등과의 MOU 체결 현황]

연도	서울	부산
'09년	- 맥쿼리 그룹	- 칼리온(現 크레디아그리콜)
'10년	- CLSA - BNY Mellon	- Orbeo(탄소배출 관련 회사)
'11년	- 피델리티(피라미스) - 알라딘 캐피탈 - Legal&General Investment Mgt.	- 뉴욕 한인 경제인연합회
'12년	- 쓰레드니들 자산운용 - 허미스 자산운용 - 보세라 자산운용 - 아부다비 국립은행	-
'13년	- 중국 국태군안증권 - ICICI은행 - Hastings 자산운용	- 중국 국태군안증권 - 부국기금 자산운용
'14년	- 호주 금융서비스협회 - ARGA자산운용 - BBCN Bank	-
'15년	- ACR(아시아 캐피탈 재보험) - ENTIQ(핀테크 창업 컨설팅 업체) - FOSUN(중국계 금융투자회사)	- 차이나 유니버설(중국 자산운용사) - DNB(노르웨이 금융회사)
'16년	- Tyro Fintech Hub - ERA(벤처 핀테크 컨설팅 업체)	-
'17년	- 파리 유로플레이스(파리 금융중심지 추진 단체) - 룩셈부르크 포 파이낸스(룩셈부르크 금융중심지 추진 단체) - 나틱시스(Natixis) - 마블스톤(싱가포르 투자기업)	- JIAM(일본 자산운용 국제화 추진단체)
'18년	- 프로스트앤설리번(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	-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금융사가 2018년 말 국내에 진출한 기업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금융중심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⁸⁾에 따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두고 금융중심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4명), 유관기관(6명), 민간위원(10명)⁹⁾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구분	직위	구분	직위	구분
당연직 정부위원 (5명)	금융위원회위원장	유관기관 위원 (6인)	은행연합회장	민간위원 (10인)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투자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생명보험협회장	
	서울특별시시장		손해보험협회장	
	부산광역시시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2014년 이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7회), 2017년(5회)를 제외하고는 매년 2~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그쳐 개최 실적이 미흡하다. 특히 2018년 개최한 3회 중 2회, 2017년 개최한 5회 중 3회가 서면회의로 실시되어 관계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간 논의를 통해 금융중심지의 발전 방안 및 성과를 심의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¹⁰⁾가 있다.

8)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민간위원은 대학 교수, 회계법인 대표, 은행 지점장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10)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서면회의 방식을 지양하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대면회의 방식으로 심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향후 중요 안건의 경우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회)

연도	본회의			분과회의			합 계
	출석	서면	소계	출석	서면	소계	
2014	2	0	2	0	0	0	2
2015	1	2	3	0	0	0	3
2016	1	2	3	4	0	4	7
2017	2	3	5	0	0	0	5
2018	1	2	3	0	0	0	3
2019.3.	1	0	1	0	0	0	1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¹¹⁾에서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019년 6월 기준으로도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분과위원회가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성과 저조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현황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¹⁾은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본예산은 1,000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억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1,700억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8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100,000	170,000	0	170,000	170,000	1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신규 벤처투자가 주요국 수준까지 확대²⁾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펀드와 금융위원회의 성장지원펀드로 구분되는데, ① 혁신창업펀드(2조원 규모)는 창업초기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출자 사업³⁾을 통해 모태펀드 내에 구분·조성되고, ② 성장지원펀드(8조원)는 성장 벤처기업·M&A 등 성장·회수 단계의 투자를 위한 펀드로서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⁴⁾이 운영한다.

황준연 예산분석관(scolll@assembly.go.kr, 788-4623)

- 1) 코드: 일반회계 2414-309
- 2)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3%로 미국(0.33%), 중국(0.2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혁신모험펀드 조성·투자 시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20~2022년 중 0.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5264-301)
- 4)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공동 사무국을 통해 운영되던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법인화하여 2016년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018년 본예산 기준 약 2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자 예산이 700억원 증액되어 1차연도 펀드 조성 계획을 3,500억원 확대하였다.

[2018년 리그별 펀드 조성계획]

(단위: 억원)

구 분	리그 분류	주요 투자대상	운용사 선정 수	조성액			
				재정	정책자금	민간	합 계
2018 본예산	중견	중견(예비)	3개	450	3,150	5,400	9,000
	성장	중소·중견	4개	300	2,100	3,600	6,000
	벤처	중소(벤처)	5개	200	1,300	2,250	3,750
	루키	-	3개	50	450	500	1,000
	합 계		15개	1,000	7,000	11,750	19,750
2018 추경 증액분	중견	중견(예비)	-	-	-	-	-
	성장	중소·중견	2개	500	700	1,800	3,000
	벤처	중소(벤처)	1개	200	-	300	500
	루키	-	-	-	-	-	-
	합 계		3개	700	700	2,100	3,500

주: 벤처리그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리그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영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2018년 내에 결성이 완료되지 못한 자펀드가 일부 있어 향후 계속사업 추진 시 금융위원회의 사업 관리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본예산을 통해 15개 운용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 운용사를 선정하여 총 2조 3,2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2018년 당초 조성 목표액인 2조 3,250억원을 상회하는 2조 8,748억⁵⁾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18개 운용사 중 2개 운용사(큐캐피탈파트너스,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가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추경을 통해 선정된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5월에도 결성 규모가 최소결성금액(1,500억원)에 미달한 1,108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의 경우 1,108억원의 조성액 중 508억원(45.8%)이 공공부문 출자로 당초 공고 비율(40%)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5) 2019년 6월 28일 기준으로는 2조 9,351억원을 조성하였다.

[하위펀드별 세부 결성 실적]

(단위: 억원)

리그	운용사	펀드 최소 결성 금액	결성액				결성 완료	투자 기간	존속 기간
			정부재정	정책자금	민간	합계			
중견 (MidCap)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3,000	150	1,050	3,300	4,500	'18.9.3.	4년	8년
	큐캐피탈파트너스	3,000	150	1,050	1,800	3,000	'19.4.26	4년	8년
	프리미어파트너스	3,000	150	1,050	1,800	3,000	'18.12.28.	4년	10년
성장 (Growth -Cap)	신영증권&우리프라 이빗에퀴티자산운용	1,500	75	525	1,030	1,630	'18.12.27.	4년	8년
	아주아이비투자	1,500	75	525	1,150	1,750	'18.12.31.	4년	10년
	엔에이치투자증권	1,500	75	525	1,600	2,200	'18.12.28.	4년	10년
	코스톤아시아	1,500	75	525	1,574	2,174	'18.12.28.	4년	10년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1,500	250	350	350	950	'19.5월	4년	8년
	인터베스트	1,500	250	350	900	1,500	'18.12.28.	4년	8년
벤처	케이티비네트워크	875	46	304	1,600	1,950	'18.12.28.	4년	8년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875	46	304	800	1,150	'18.12.21.	4년	10년
	스미일캐피탈인베스트먼트	750	40	260	940	1,240	'18.12.28.	4년	8년
	지애펙벤처투자	750	40	260	812	1,112	'18.12.20.	4년	8년
	플래티넘기술투자	500	28	172	425	625	'18.11.9.	4년	8년
	스톤브릿지벤처스	500	200	-	650	850	'18.12.21.	4년	7년
루키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	300	15	135	215	365	'18.12.13.	4년	8년
	무렉스파트너스	300	15	135	151	301	'18.10.19.	4년	8년
	이상파트너스	400	20	180	251	451	'18.11.9.	4년	10년
합 계		23,250	1,700	7,700	19,348	28,748			

주: 1. 2018년 말 기준

2. 회색 음영은 추정예산 증액분에 따라 선정된 펀드를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하위펀드별 세부 투자 실적 역시 2018년 말 기준으로는 1,120억 5,300만원(결성액 대비 3.9%), 2019년 3월 말 기준 2,655억 7,900만원(결성액 대비 9.1%)이다. 성장지원펀드의 조성 목적이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벤처투자 자금을 확대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사업 관리가 요구된다.

[하위펀드별 세부 투자 실적]

(단위: 백만원, 개, %)

리그	운용사	총 결성 금액(A)	투자 기업수(B)	투자 금액(C)	투자율 (C/A)	기업당 투자액 (C/B)	운용사 제안		투자 실적	
							주목적 투자분야	비율	주목적 투자액	비율
중견 (MidCap)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450,000	3	106,803	23.7	35,601	M&A 메자닌	50 60	106,803 106,803	100.0 100.0
	큐캐피탈파트너스	300,000	-	-	-	-	중견기업 M&A 등	50	-	-
	프리미어파트너스	300,000	-	-	-	-	4차산업 경영권	40 40	-	-
성장 (Growth -Cap)	신영증권&우리프라 이빗에쿼티자산운용	163,000	-	-	-	-	4차산업	40	-	-
	아주아이비투자	175,000	-	-	-	-	신성장 TCB	60 80	-	-
	엔에이치투자증권	220,000	-	-	-	-	4차산업	40	-	-
	코스톤아시아	217,400	-	-	-	-	중소중견 M&A	50	-	-
	에스비아이 인베스트먼트	95,000	-	-	-	-	신성장	50	-	-
	인터베스트	150,000	-	-	-	-	4차산업	40	-	-
벤처	케이티비네트웍	195,000	-	-	-	-	성장단계 해외진출	50	-	-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115,000	-	-	-	-	초기투자 사업초기	40 50	-	-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24,000	-	-	-	-	4차산업 바이오	60	-	-
	지애텍벤처투자	111,200	-	-	-	-	바이오 세컨더리	40 30	-	-
	플래티넘기술투자	62,500	-	-	-	-	4차산업	40	-	-
	스톤브릿지벤처스	85,000	-	-	-	-	4차산업	60	-	-
	메티스톤에쿼티 파트너스	36,500	-	-	-	-	커머스 사업	40	-	-
루키	뮤렉스파트너스	30,100	3	5,250	17.4	1,750	1인가구	60	5,250	100.0
	이상파트너스	45,100	-	-	-	-	중소중견 사업재편	70	-	-

주: 1. 2018년 말 기준
 2. 회색 음영은 추경예산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금융위원회는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9년 6월 말 기준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705억원(결성액 대비 2.4%, 5건)이 해외 기업에 투자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목적에 따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 자펀드에 의무투자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운용사는 중소·중견기업과 주목적 투자분야에 펀드자산의 50%와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는 펀드 자산의 일정범위(통상 30%) 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장지원펀드의 결성 목적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자금 부족 해소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고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¹⁾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과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²⁾ 분석,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³⁾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예산 5억 3,800만원 중 5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금세탁방지추진	538	538	±12	538	537	99.9	0	1

자료: 금융위원회

황준연 예산분석관(scoll@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331-303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 2019.4.24.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조정됨

2018년 금융회사로부터 953만 8,806건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97만 2,320건의 의심거래보고(STR)가 접수되었다.

[연도별 금융회사의 CTR, STR 접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CTR	STR
2009	6,782,848	136,282
2010	11,640,839	236,068
2011	11,354,419	329,463
2012	10,305,278	290,241
2013	9,215,317	378,742
2014	8,641,746	501,425
2015	8,900,767	624,076
2016	8,943,105	703,356
2017	9,584,095	519,908
2018	9,538,806	972,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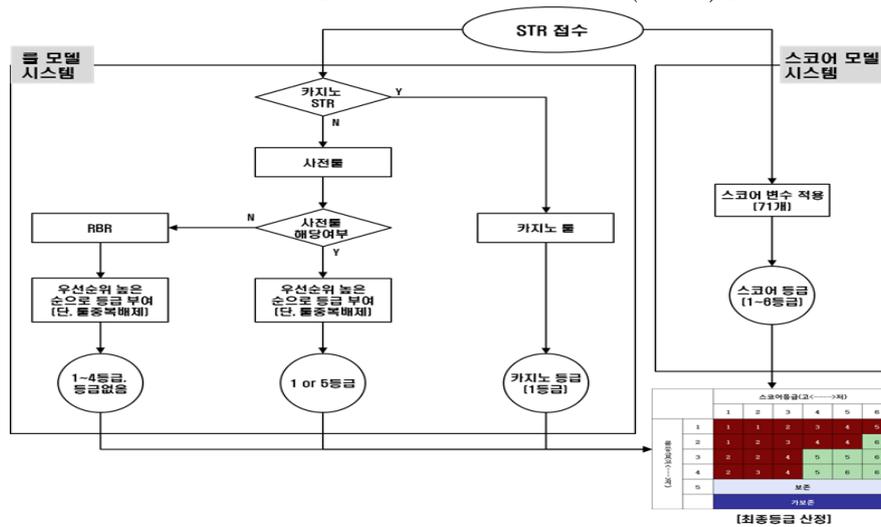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실제 수사 및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에서 보고된 STR은 전산분석 → 기초분석 → 상세분석의 3단계 심사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보분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법집행기관에 제공 된다. ① 정보화시스템에 의한 전산분석 단계에서는 톨&스코어 시스템⁴⁾으로 모든

4) STR의 거래정보와 의심거래자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혐의도 등급(1~6등급)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STR의 자금세탁 혐의도를 분석하고, ② 기초분석 단계에서는 기초분석관이 전산분석 결과 및 기존자료를 토대로 상세분석의 필요여부를 판단하며, ③ 상세분석 단계에서는 상세분석관이 기초분석 자료와 여타 제공정보를 종합하여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행위등과 연계여부를 분석한다.

STR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루어지므로 금융정보분석원은 접수된 STR이 실제 수사 및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8년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된 97만 2,320건의 STR 중 11만 6,566건 (12.0%)만이 기초분석관의 검토를 거쳤으며, 상세분석으로 이어진 건수는 26,165건 (2.7%)에 불과하다.

[의심거래보고(STR) 접수 및 상세분석 현황]

(단위: 건,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접수(A)	378,742	501,425	624,076	703,356	519,908	972,320
기초분석관 검토(B)	43,584	143,071	155,795	149,898	88,355	116,566
(B/A)	(11.5)	(28.5)	(25.0)	(21.3)	(17.0)	(12.0)
상세분석(C)	25,030	25,305	30,854	22,177	19,767	26,165
(C/A)	(6.6)	(5.0)	(4.9)	(3.2)	(3.8)	(2.7)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018년 STR 보고 건수는 97만건으로 전년 대비 86.5% 급증하였으며, 이는 가상통화 등 자금세탁 및 불법테러자금에 활용될 잠재적 위험이 높은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여 관련 가이드라인⁵⁾을 시행하였고, 해외의 자금세탁 관련 제재⁶⁾ 등의 영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인식 제도 및 자체 내부통제 노력을 강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STR 접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접수 건수 대비 기초분석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특히 기초분석 전담인력이 4명에 불과하여 분석 비율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5)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2018.1.)

6)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은 농협은행(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0만 달러의 과태료 부과(2017.11.)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접수된 STR 중 상세분석을 거친 정보만을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분석 비율이 낮을 경우 의심거래보고가 실제 수사 및 조사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명과 같이 STR의 급증이 가상통화 등 새로운 거래유형 등장에 있다면 새로운 거래유형을 활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실제 검토를 거치는 건수 역시 증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법집행기관⁷⁾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비율은 2010년 30.2%에서 2018년 96.0%까지 증가하였으나, FIU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법집행기관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비율은 2010년 69.8%에서 2018년 4.0%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

(단위: 건, %)

연 도	FIU 자발적 제공		법집행기관 요구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0	1,426	69.8	618	30.2	2,044
2011	1,251	60.7	809	39.3	2,060
2012	1,780	52.2	1,627	47.8	3,407
2013	2,542	31.8	5,443	68.2	7,985
2014	2,354	8.5	25,468	91.5	27,822
2015	2,637	8.0	30,525	92.0	33,162
2016	1,944	5.3	34,853	94.7	36,797
2017	1,268	3.2	38,439	96.8	39,709
2018	1,582	4.0	38,023	96.0	39,605

주: 1. 법집행기관 제공 공문 기준

2. STR, CTR 포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천만원 이하의 현금 거래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달리 의심거래보고(STR)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⁸⁾에 따라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7)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원

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있는 경우 등 일선 금융회사에서 그 요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에서 의심거래 요건에 해당함에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⁹⁾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일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기 위해 과도한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상통화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접수된 STR에 대한 기초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STR이 실제 수사나 조사에 활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은 STR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¹⁰⁾하는 과정에서 법집행기관 제공 이후 활용도¹¹⁾가 높았던 정보, 상세분석으로 이어지는 정보의 유형 등 그간 축적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는 과태료 상한이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10) 금융정보분석원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피드백 받고 있다. 2018년 제공된 33,392건의 제공 문서 중 6,295건이 처분에 활용되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이후 법집행기관별 처리 현황]

(단위: 건, %)

기 관	제 공	처리중	처리완료	소 극 ¹⁾	중 간 ²⁾	적 극 ³⁾
검찰청	890	472	418	6	-	412
경찰청	10,572	10,572	-	-	-	-
국세청	17,746	12,028	5,718	-	5,692	26
관세청	4,178	4,019	159	-	159	-
금융위	6	6	-	-	-	-
합 계	33,392	27,097	6,295	6	5,851	438

주: 1) 소극: 무혐의, 입건유예(검찰청), 공소권 없음(검찰청), 내사종결(경찰청) 등

2) 중간: 기소중지(검찰청), 내사중지(검찰청, 경찰청), 누적자료활용(국세청) 등

3) 적극: 기소(검찰청), 기소의견송치(경찰청), 고발·추정(국세청) 등

1. 혐의거래보고서, 전략분석문서, 재기문서의 집계 건수 기준

2. CTR, STR 포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의미¹⁾하며, 법적 정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공적자금은 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I, ②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 II로 구분된다. 공적자금 II와 관련하여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은 2014년 말 운용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적자금은 공적자금 I이다.

정부는 기 지원된 공적자금에 대하여 2002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심의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확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2002년 말 기준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채무원금 97.2조원 중 회수가능액을 제외한 69조원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융권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부보금융회사²⁾가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³⁾을 2027년까지 납부하여 금융권 부담분 20조원을 마련하고, ② 정부는 49조원을 출연한 후 재정을 통해 매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씩 25년간 상환⁴⁾하도록 하였다.

1)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18.8.

2)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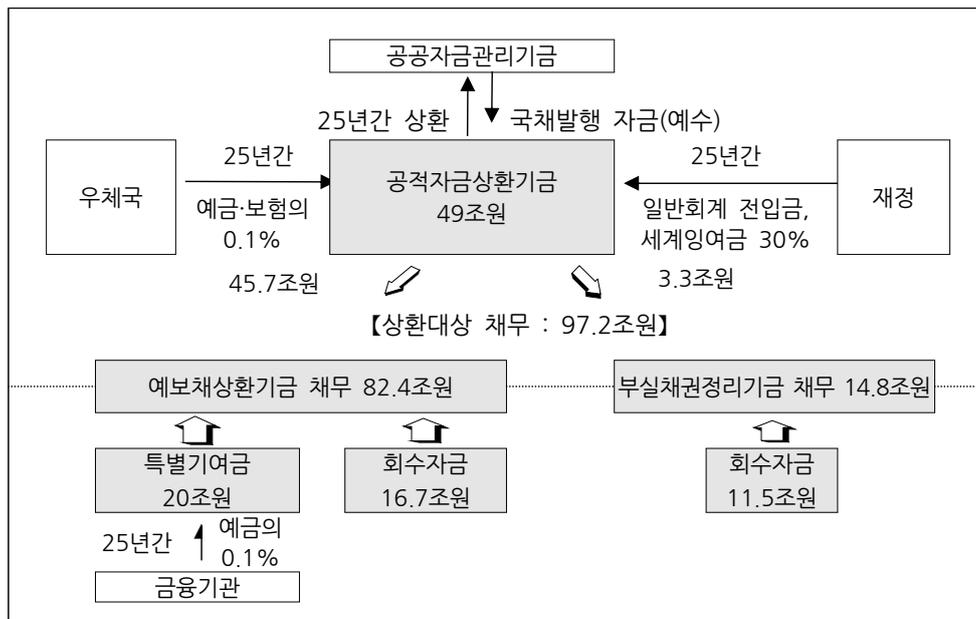
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4) 이와는 별도로 원칙적으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정부 재정에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⁵⁾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였다. 동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 발행자금을 예탁 받아 200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 중 49조원(원금 기준)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을 통해 상환하고,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2002년 현재가치 기준 2조원)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출연금(예금평잔 등의 0.1%) 등으로 25년 이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국채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2018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5.9조원이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3년 청산되어 채무 잔액은 없다.

[공적자금상환기금 구조와 자금 흐름]



자료: 금융위원회

5) 2003~2006년에 걸쳐 출연이 완료되었다.(2003년 13조원, 2004년 12조원, 2005년 12조원, 2006년 12조원)

5-1. 정부재정과 금융권 간 공적자금 상환부담비율 논의 필요

가. 현황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기 발행한 4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⁶⁾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18년 예산 2조 1,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목으로 전입된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전출금	2,100,000	2,100,000	0	2,100,000	2,100,000	1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상환대책에서는 69조원 중 20조원을 금융권에서 나머지 49조원을 정부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 중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부보금융회사⁷⁾가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⁸⁾하도록 하였다. 금융회사로부터의 납부액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법정부담금⁹⁾으로 수납되며, 2018년 1조 7,128억 5,13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7,120억 9,505만원을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법정부담금	1,601,462	1,601,462	1,601,462	1,712,851	1,712,095	756	0	99.9

자료: 금융위원회

6) 코드: 일반회계 8411-880

7)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8)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9) 코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9-593

나. 분석의견

2018년 정기 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금융권 간 부담의 명확한 의미, 금융권 부담의 조정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2년에 마련한 상환대책의 경우 회수자금 규모, 경제성장률, 금융자산 증가율 등에 대한 추정 및 전망에 따라 설계됐기 때문에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환대책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 등에 대비해 매 5년마다 정기재계산을 실시¹⁰⁾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계산 시 최초 상환 대책에 반영한 회수 규모 및 특별 기여금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주체별 상환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자금 상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3년 두 번째 정기재계산 당시 금융위원회는 총 상환부담 55.7조원(2002년 현가) 중 금융권에서 2003~2012년 간 6.4조원을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였으며, 2002년 상환대책 상 분담비율(재정 49조원 : 금융권 20조원)을 가정할 경우 2013~2027년 간 9.7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부보예금증가율에 따라 2013~2027년 간 10.9~13.4조원(2002년 현가)의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총 17.3~19.8조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2013년 정기재계산 시에는 금융권과 정부 재정 간 상환부담을 조정하지 않았다.

[2013년 정기재계산에 따른 재정 및 금융권 상환부담]

(단위: 조원)

구 분	경상/현가	합 계	재 정	금융권	
'02년 상환대책	'02년 현가	69.0	49.0	20.0	
'13년 정기 재계산	기 부담	'02년 현가	21.9	15.4	6.4
		'03~'12년 경상	28.1	19.8	8.3
	향후 부담	'02년 현가	33.8	24.1	9.7
		'12년 현가	53.9	38.4	15.5
총 부담	'02년 현가	55.7	39.5	16.1	

주: 향후 부담분은 '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재정 49: 금융권 20)을 가정할 경우 부담액임
자료: 금융위원회

1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세 번째 정기재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재정과 금융권 간 상환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재정과 금융권의 총 상환부담 58.1조원(2002년 현가)¹¹⁾에 대해 20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재정 49조원: 금융권 20조원)을 가정할 경우 2018~2027년 간 재정은 21.2조원을, 금융권은 5.8조원을 부담(2002년 현가 기준)하게 된다.

[2018년 정기재계산에 따른 재정 및 금융권 상환부담]

(단위: 조원)

구 분		경상/현가	합 계	재 정	금융권
'02년 상환대책		'02년 현가	69.0	49.0	20.0
'18년 정기 재계산	기 부담	'02년 현가	31.1	20.0	11.1
		'03~'17년 경상	42.0	26.5	15.5
	향후 부담	'02년 현가	27.0	21.2	5.8
		'17년 현가	48.6	38.3	10.3
총 부담	'02년 현가	58.1	41.2	16.9	

주: 향후 부담분은 '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재정 49: 금융권 20)을 가정할 경우 부담액임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부보예금 증가율을 고려할 때 금융권은 2018~2027년 간 9.5~10.6조원(2002년 현가 기준)의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¹²⁾되며, 2027년까지는 당초 분담액인 20조원을 초과하는 20.6~21.7조원(2002년 현가 기준)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정¹³⁾된다.

11) 총 상환부담은 2002년 상환대책 시 예상액인 69조원보다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수증가, 보유자산 가치 상승, 저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3년 2차 정기재계산 당시 총 상환부담 추정액 55.7조원보다는 증가하였다.

* 상환채(5년) 이자율(%), 연평균): '02) 6.44, '07) 5.46, '12) 3.42, '17) 2.19

** 국채(5년) 이자율(%), 연평균): '02) 6.31, '07) 5.27, '12) 3.24, '17) 2.00

12) 할인율은 2003~2017년 상환채(5년물) 평균유통수익률 4.00%를 적용하고,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 요율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의 예상납부액이다.

13) [부보예금 증가율 시나리오별 특별기여금 납부액 추정치]

(단위: 억원)

시나리오	기 납입액	향후 납입액	총 납입액
업권별 부보예금 증가율 ¹⁾	110,992	106,241	217,233
총부보예금 증가율 ²⁾		103,907	214,899
은행권 총부채 증가율 ³⁾		95,496	206,488

주: 1) 각 업권별로 부보예금 증가율을 1999~2017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인 은행(5.96%), 금융투자(3.38%), 생보(8.63%), 손보(10.94%), 저축은행(2.71%), 종금(4.05%), 신탁(7.19%)을 적용

2) 업권에 상관없이 동일한 총부보예금 증가율 적용

3) 보다 보수적으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은행권 부보예금 증가율을 2008년 이후의 총부채 증가율로 가정

1. 2002년 현가 기준

2. 할인율 4% 적용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연구용역(금융분야)」, 2018.10.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02년 상환대책이 금융권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담한 후 나머지를 정부 재정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의 예상 총 납부액 증가와 관계없이 금융권 부담액을 유지할 것인지, 증가액만큼 부담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02년 상환대책¹⁴⁾에 따라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당초 예상한 금융권의 부담은 2027년 이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러나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였을 때 20조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금융권 부담능력 확대에 따른 부담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부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향후 금융권 부담의 조정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향후 재정과 금융권 간 상환부담의 분담 체계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14) 금융권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2027년까지 부보예금 평잔의 0.1%를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여 20조원을 충당하고,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잔여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한다.

15) **[부보예금 증가율 시나리오별 특별기여금 납부액 추정치]**

(단위: 억원)

연도	업권별 부보예금 증가율 ¹⁾		총부보예금 증가율 ²⁾		은행권 총부채 증가율 ³⁾	
	향후 납입액 (누적)	총 납입액 (누적)	향후 납입액 (누적)	총 납입액 (누적)	향후 납입액 (누적)	총 납입액 (누적)
2018	9,406	120,398	9,377	120,369	9,235	120,227
2019	19,057	130,049	18,966	129,958	18,536	129,528
2020	28,962	139,954	28,772	139,764	27,904	138,896
2021	39,130	150,122	38,800	149,792	37,341	148,333
2022	49,571	160,563	49,054	160,046	46,848	157,840
2023	60,295	171,287	59,540	170,532	56,427	167,419
2024	71,312	182,304	70,263	181,255	66,080	177,072
2025	82,634	193,626	81,228	192,220	75,808	186,800
2026	94,273	205,265	92,441	203,433	85,613	196,605
2027	106,241	217,233	103,907	214,899	95,496	206,488

주: 1) 각 업권별로 부보예금 증가율을 1999~2017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인 은행(5.96%), 금융투자(3.38%), 생보(8.63%), 손보(10.94%), 저축은행(2.71%), 종금(4.05%), 신탁(7.19%)을 적용
 2) 업권에 상관없이 동일한 총부보예금 증가율 적용
 3) 보다 보수적으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은행권 부보예금 증가율을 2008년 이후의 총부채 증가율로 가정
 1. 2002년 현가 기준
 2. 할인율 4% 적용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연구용역(금융분야)」, 2018.10.을 바탕으로 재작성

① 1안은 2002년 상환대책에서의 재정 및 금융권 분담비율(49:20)을 유지하는 것이다. 2002년 현가 기준으로 향후 10년 간 재정은 21.2조원을, 금융권은 5.8조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특별기여금 요율의 조정이나, 특별기여금 초과 납부 시 금융권 정산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 상환 분담(20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 가정)]

(단위: 조원)

구 분	합 계	재정		금융권
		재정	금융권	
기 부담액	31.1	20.0	11.1	
향후 부담액	27.0	21.2	5.8	
총 부담액	58.1	41.2	16.8	

주: 1. '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재정 49: 금융권 20)을 가정
2. 2002년 현가 기준
3. 할인율 4% 적용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연구용역(금융분야)」, 2018.10.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2안은 금융권이 특별기여금(0.1%)을 2027년까지 납부하고 잔액을 재정이 부담하는 방안이다. 2002년 현가 기준으로 향후 10년 간 재정은 16.4~17.5조원을, 금융권은 9.5~10.6조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부보예금 규모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서 재정과 금융의 분담금액 및 비율이 사후적으로 결정되며, 금융권의 부담이 당초 상환계획보다 증가한다.

[공적자금 상환 분담(특별기여금 유지, 잔액 재정 부담)]

(단위: 조원)

구 분	합 계	재정		금융권
		재정	금융권	
기 부담액	31.1	20.0	11.1	
향후 부담액	27.0	16.4~17.5	9.5~10.6	
총 부담액	58.1	36.4~37.5	20.6~21.7	

주: 1. 금융권이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0.1%)을 납부하는 것을 가정
2. 2002년 현가 기준
3. 할인율 4% 적용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연구용역(금융분야)」, 2018.10.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3안은 금융권이 2002년 상환계획 수립 시 도출한 분담금액인 20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재정이 부담하는 방안이다. 2002년 현가 기준으로 향후 10년 간 재정은 38.1조원을, 금융권은 20.0조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권 분담비율이 소폭 상승(29%→34%)하게 되며, 20조원을 초과하여 납부된 특별기여금에 대한 정산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 상환 분담(금융권 20조원 분담, 잔액 재정 부담)]

(단위: 조원)

구 분	합 계	재정	
		재정	금융권
기 부담액	31.1	20.0	11.1
향후 부담액	27.0	18.1	8.9
총 부담액	58.1	38.1	20.0

주: 1. 금융권이 최초 약정부담금 20조원을 부담하고, 재정은 잔액을 부담

2. 2002년 현가 기준

3. 할인율 4% 적용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연구용역(금융분야)」, 2018.10.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¹⁶⁾에서는 청산 후 잔여 자산 및 부채 등은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7년 기금 청산시점까지 특별기여금 요율이 유지될 경우 22.7~29.7조원¹⁷⁾의 잔여재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과 금융권 간 상환 분담 조정과 동시에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청산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여부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 「예금자보호법」 부칙 <법률 제6807호, 2002. 12. 26.>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17) 업권별 부보예금증가율을 가정하고 운용수익률에 따라 22.7조원(0%) ~ 29.7조원(7%)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5-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수적 계획 수립 개선 필요

가. 현황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당해연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곤란한 만기 도래 부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의 보증 동의 하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차환(借換) 발행하고 있다. 채권 발행에 따른 수입은 국공채수입¹⁸⁾으로 수납된다.

[2018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공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국공채수입	2,100,000	2,100,000	2,100,000	1,480,000	1,480,000	0	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매년 보수적으로 채권 발행규모를 계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상환해야 하는 총 부채는 82.4조원인데, 이 중 16.7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20조원은 금융권 특별기여금으로 상환하며, 나머지 45.7조원은 재정에서 출연 받아 상환하도록 계획하였다. 예금보험공사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은 2008년까지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재원인 회수자금 및 금융권의 특별기여금은 2027년까지 수납하게 되어 있어 채무의 상환시기와 상환재원 조달시기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회의 보증 동의를 얻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차환발행하고 있다.

18) 코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1-811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따르면 2018년도 금융기관 특별기여금, 회수자금 등으로 자체 상환 가능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만기도래액 상환을 위하여 2.1조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예정이었다. 이는 2018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 상의 지출 7조 4,109억원과 자체조달 수입¹⁹⁾ 5조 3,109억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2018년 기금운용 결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자금소요액과 자금조달액이 전망과 차이를 보여 최종적으로 채권 발행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6,200억 원 적은 1조 4,800억원에 그쳤다.

[2018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규모 산출내역 및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전망(a)	실적(b)	차이(b-a)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자금소요(A)	74,109	58,989	△15,120
금융 구조조정 지원	438	9	△429
채권 원리금 상환	56,108	55,226	△882
기금운영비	42	39	△3
기말 보유자금	17,522	3,716	△13,80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자금조달(B)	53,109	44,189	△8,920
기초 보유자금	23,599	21,704	△1,895
출자주식 매각	10,306	1,100	△9,206
대출금 회수	113	113	0
배당금 등	2,667	2,903	236
특별기여금	16,015	17,121	1,106
이자수입 등	410	1,248	83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규모(A-B)	21,000	14,800	△6,200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이와 같은 추세는 매년 반복되어 왔는데, 최근 10년 간 국공채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차환에 따른 국공채수입 수납률이 2009~2013년까지는 2011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8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수납률이 하락하여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수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19) 기초 보유자금 +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자금 + 금융권 특별기여금 +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연도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공채수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A)						
2009	70,000	70,000	70,000	58,600	58,600	0	0	83.7
2010	84,000	84,000	84,000	68,100	68,100	0	0	81.1
2011	15,000	15,000	15,000	7,800	7,800	0	0	52.0
2012	58,000	58,000	58,000	47,700	47,700	0	0	82.2
2013	82,000	82,000	82,000	72,700	72,700	0	0	88.7
2014	14,000	14,000	14,000	10,100	10,100	0	0	72.1
2015	32,000	32,000	32,000	8,800	8,800	0	0	27.5
2016	24,000	24,000	24,000	19,700	19,700	0	0	82.1
2017	39,000	39,000	39,000	15,200	15,200	0	0	39.0
2018	21,000	21,000	21,000	14,800	14,800	0	0	70.5

자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채고자산매각대²⁰⁾ 등 자체수입이 계획대로 수납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공채수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높게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유주식 매각 등 자체수입이 당초 보수적인 가정보다 증가하거나, 지출이 계획 대비 감소할 경우 채권을 계획 대비 축소하여 발행하며, 이 과정에서 기말 보유자금인 여유자금을 실제 소요보다 큰 규모로 편성하여 국공채수입 변경을 대비한 완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공채 수입 산정 시에는 실질적으로 기초 보유자금과 특별기여금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주식의 매각 가능성이 유동적이라는 점 등 자체수입의 수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채권 발행물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20) 2018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우리은행(現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금융회사 지분 보유 내역]

(단위: 만주, %)

회사명	보유주식수	보유지분율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12,460	18.43
한화생명	8,686	10.00
서울보증보험	3,276	93.85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10,354	우선주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① 채고자산매각대 외에도 정부 보유주식의 배당금이나 이자수입 등 기금을 구성하는 다른 수입원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고, ② 현행과 같이 채고 자산이 전혀 매각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채권 발행액을 산정할 경우 채고자산 매각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9년 6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지주전환 완료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을 3년 간(2020~2022년) 분산 매각하는 내용의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③ 또한 정부가 매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정확한 산정 근거를 바탕으로 보증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서민금융지원 홍보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노력 미흡

가. 현황

서민금융지원 홍보 사업¹⁾은 저소득·저신용자가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보조를 통해 수행된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서민금융지원 홍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서민금융지원 홍보	500	500	0	500	500	1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에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던 홍보 프로그램을 보조금을 통해 집행하는 데 그쳐 새로운 홍보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8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예산 5억원을 통해 서민금융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TV(케이블) 홍보, ② 금융포럼, ③ 온라인 홍보, ④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⑤ 대중교통 홍보, ⑥ 라디오 홍보, ⑦ 추석 명절 귀성객 대상 현장 가두 홍보, ⑧ 옥외매체 광고의 방식으로 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황준연 예산분석관(scoll@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1

그러나 보조금으로 지원된 홍보예산 중 대부분이 전년도에 자체 예산으로 시행되던 홍보 사업에 집행되어 보조금 지원에 따라 추가적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2018년 서민금융진흥원 홍보 내역 비교]

(단위: 천원)

2018년 보조금 홍보 내역		2017년 유사 홍보 내역	
계약명	계약액	계약명	계약액
감동영상 온라인 광고에 관한 건	1,088	진흥원 온라인 동영상 광고	50,000
YTN 라디오 협찬 광고	20,000	YTN 라디오 캠페인 광고 비용	11,000
고속버스 후면 광고	49,500	고속버스 후면광고	24,750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송출(9~11월)	20,000	엘리베이터 광고	64,826
(자체재원) 프레스센터 엘리베이터 광고	5,500		
(자체재원) 엘리베이터 광고(11~12월)	20,000		
서민금융지원제도 리플릿 제작	20,000	리플릿 제작	48,280
(자체재원) 사회적금융 등 홍보 리플릿 제작	9,374		
서울법인택시 외부 부착 광고(7.14~9.16)	44,022	택시 외부 부착광고	19,855
택시 외부 부착광고 연장(9.17~11.16)	38,280		
(자체재원) 택시 외부 부착광고(1.1~4.30)	33,440		
제2회 서민금융포럼 협찬(아주경제)	5,500	제1회 서민금융포럼 협찬(아주경제)	5,500
서민금융진흥원 추석 명절 홍보 물품 제작 (물티슈, 복주머니, 볼펜, 치약칫솔세트 등)	32,125	추석명절 홍보 물품 구매	76,313
(자체재원) 설, 추석 홍보물품 제작(볼펜, 파우치 등)	52,875	설 명절 선물 발송 등 기타 비용	22,057
감성 홍보 영상 제작의 건	30,000	진흥원 홍보영상 제작 및 편집	37,895
시내버스 외부 부착 광고(8.9~10.8)	32,945	마을버스 외부광고(10~12월)	49,984
지하철 음성 광고(광화문역 안내, 6~8월)	9,900	-	-
지하철 음성광고(광화문역 안내, 9~11월)	6,600	-	-
TBS 교통방송 라디오 광고 협찬 계약연장 (자체재원) TBS교통방송 라디오 광고협찬(4~12월)	30,500 (76,500)	TBS라디오 추석특별방송 협찬금	20,000
TBN 전국교통방송 캠페인 협찬 방송계약	30,000	TBS교통방송 캠페인 광고 협찬	9,300
교통방송 라디오 광고 협찬 계약	15,500	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 광고비	54,750
세계일보 홈페이지 배너 광고(7월)	5,500	세계일보 사이트 배너광고 비용	5,500
지하철 옥외광고 실시(경복궁 3호선 스크린도어)	18,480	지하철 매체 광고비	15,814
(자체재원) 지하철 매체광고(스크린도어 등)	27,720		
종합편성채널(채널A) TV 캠페인 광고	30,000	-	-
2018년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홍보	60,060	바이럴 마케팅 비용	20,000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홍보 내용 또한 구체적인 상품 홍보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관 홍보에 그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의 경우 특정 상품보다는 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지원기관·채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입장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진흥원의 자체 예산이 아닌 보조금이 별도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체 홍보 외에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병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홍보 사례]

계약명	홍보 내용
지하철 음성광고	* 음성내용 : 이번 정차역은 광화문, 광화문역입니다. 당신을 위한 포용적 금융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실 분은 광화문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TBN 전국교통방송	나라 살림이 어려워 고난을 겪는 서민들의 안정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바람처럼 나타났다네.
TBS 교통방송 라디오 광고	전국 방방곡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채무조정까지 한 자리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다네. 하하하, 이제는 서민일세.
YTN 라디오 광고	희망을 전하는 숫자 일,삼,구,칠.을 꼬~옥 기억하시게. 이 캠페인은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추석 명절 홍보 물품 제작	- 물티슈 7,400개(개당 682원) - 복주머니 10,000개(개당 825원) - 볼펜 11,000개(개당 380원) - 치약칫솔세트 11,000개(개당 950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홍보 결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인지도가 2017년 44.7%에서 2018년 58.6%로 상승하였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018년 75.2만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실적 역시 7.9% 증가(2017년 90.6만건 → 2018년 97.7만건)하는 등 지원 채널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 서비스 수요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²⁾과 근로자 햇살론³⁾, 바뀐드림론⁴⁾의 최근 5년 간 대출 실적을 살펴보면, 바뀐드림론의 대출 실적은 2017년 대비 증가한 1,174억원이었으나, 미소금융(4,022억원), 근로자 햇살론(2조 6,028억원)의 대출 실적은 2017년 대비 감소⁵⁾하였다.

- 2) ①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대출금리 연 2~4.5% 이내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저소득층 창업지원, 신용회복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분야의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자금지원, 사업수행기관에 진흥원이 대출채권을 대여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자금수요자에게 대출을 실행
 ③ 전통시장: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 대상의 소액대출 지원
 - 일반자금: 점포당 1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금리 4.5%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명절 긴급자금: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에 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설, 추석)기간 5개월 동안 긴급자금 지원(시장당 2억원 이내), 점포당 1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5개월 이내, 금리 4.5% 이내
- 3) ① 상품개요: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 대출
 ② 지원대상: i)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ii)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③ 지원금액: 1,500만원 이하(대환대출은 3,000만원 이하)
 ④ 대출금리: 연 10.5% 이내
 ⑤ 취급기관: 상호금융권 및 저축은행
 ⑥ 보증비율: 90%
- 4) ① 상품개요: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
 ② 지원대상

구 분		자격요건
신용등급		신용 6등급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연소득	근로자	4,5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은 5,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5,000만원 이하(사업자 등록된 영세자영업자에 한함)
채무상환		20% 이상의 고금리 6개월 이상 정상상환(자영업자의 경우 15% 이상 고금리)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제외)

- ③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고금리 대출 원금범위 내)
 ④ 대출금리: 연 6.5~10.5%
- 5) 다만, 금융위원회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2016~2020년 동안 총 11조원 공급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나, 2017년 약 3조원이 공급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급목표를 2.5조원으로 조정하였고 목표 대비 104.1% 초과 공급되었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 간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실적]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미소금융	3,191	3,820	4,207	4,572	4,022
햇살론	19,280	22,144	22,129	33,463	30,007
근로자 ¹⁾	15,984	18,616	18,286	29,799	26,028
사업자 ²⁾	3,296	3,528	3,843	3,664	3,979
바꿔드림론	2,136	1,257	1,343	763	1,174

주: 1)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인 2015년까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운영하였고, 2016년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

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운영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민금융상품 홍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관 홍보 외 다양한 홍보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2-1. 특별협약보증 및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실적개선 방안 강구 필요

가. 현황

신용보증기금의 민간출연금¹⁾은 출연요율이 정해진 법정출연금 외에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에 의한 특별출연금 및 대기업, 공기업, 지자체 등과의 협약에 의한 특별출연금 수입으로 구성된다. 2018년 계획현액은 482억원이었으나 721억 6,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다.

[2018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 민간출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민간출연금	48,200	48,200	48,200	72,163	72,163	0	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2018년 수납액 722억원 중 농·수협은행 용자금의 일정비율(0.09%)로 납부된 출연금은 338억원, 특별협약보증 재원으로 납부된 출연금은 384억원이다.

[2018년 민간출연금 계획 및 수입실적]

(단위: 억원)

구분	계획	수입실적
농·수협 출연금	312	338
금융기관 협약보증	100	281
동반성장 협약보증	10	18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협약보증	43	45
공동구매지원 협약보증	-	30
혁신센터 협약보증	17	10
합계	482	722

자료: 금융위원회

황준연 예산분석관(scoll1@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신용보증기금 59-594

나. 분석의견

첫째, 일부 특별협약보증의 공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협약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민간 금융기관,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운영된 특별협약보증의 보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한도 대비 실제 보증 공급액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보증이 존재한다. 2018년 신규 보증프로그램인 혁신성장 일자리 특별출연 협약보증(20.1%), 공동구매지원 협약보증(65.0%)의 경우 협약체결 후 결산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2017년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보증의 경우에도 지자체 공기업 지역상생 보증(2차) 26.1%, 나들가게 지원 협약보증 45.6%, 창조경제 혁신센터 60.1% 등 일부 보증의 공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별협약보증 출연금 수납 및 보증실적]

(단위: 억원, 배, %)

구 분	협약			출연 및 보증공급 실적					
	출연 협약액	운용 배수	보증 예정액	출연 누계액	미출연 금액	보증공급 가능액	보증 공급액	보증 공급률	
금융기관 특별출연	8,927	3~20	117,195	8,712	215	113,175	107,451	94.9	
S-Plus 협약보증 (2016년~)	370	20	7,400	370	-	7,400	7,039	95.1	
신성장 고용창출 특별출연 협약보증 (2017년~)	448	20	8,960	428	20	8,560	7,980	93.2	
RG특례보증 (2017년~)	50	3	150	50	-	150	150	100.0	
혁신성장 일자리 특별출연 협약보증 (2018년~)	356	20	7,120	196	160	3,920	788	20.1	
현시청년창업기업 특별출연 협약보증 (2018년~)	65	20	1,300	65	-	1,300	1,301	100.0	
상생보증 프로그램	1차	173	16.5	2,859	173	-	2,859	2,856	99.9
	2차	83	16.5	1,372	83	-	1,372	1,215	88.6
	소계	256	16.5	4,230	256	-	4,230	4070	96.2

(단위: 억원, 배, %)

구 분	협약			출연 및 보증공급 실적					
	출연 협약액	운용 배수	보증 예정액	출연 누계액	미출연 금액	보증공급 가능액	보증 공급액	보증 공급률	
동반성장 협약보증	135	12~15	1,693	130	5	1,768	1,444	81.6	
지자체 공기업 지역상생 보증	1차	36	12	426	36	-	426	322	75.7
	2차	23	5	115	23	-	115	30	26.1
	기타	21	12	252	21	-	252	252	100.0
	소계	80	5~12	793	80	-	793	604	76.2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	618	12	7,416	578	40	7,416	6,268	84.5	
나들가게 지원 협약보증	25	10	250	25	-	250	114	45.6	
공동구매지원 협약보증	30	20	600	15	15	300	195	65.0	
창조경제 혁신센터	164	10~12	1,740	136	28	1,440	865	60.1	
합 계	10,235		133,916	9,931	304	129,371	121,010	93.5	

주: 출연액 및 보증공급액은 협약 시행 시점부터 2018년 말까지의 누계(운용 종료 협약실적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보증 공급률이 저조한 특별협약보증 내용]

구 분	각 특별협약보증별 설명
혁신성장 일자리 특별출연 협약보증 (2018년~)	금융회사가 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핵심 정책분야(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등), 협약 은행 추천 성장 유망기업 등에 대해 출연금의 20배 내에서 보증을 지원 [신보는 보증료(6년간 0.2%p 차감), 보증비율(3년간 100%, 이후 3년간 95%) 우대, 금융회사는 금리 등을 우대]
지자체공기업 지역상생보증	(1차) 지자체·금융기관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최대 2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12배 범위내에서 GM대우, 쌍용차가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 [신보는 보증료(0.3%p 차감), 보증비율(100%) 우대] (2차) 지자체·금융회사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최대 164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5배 범위내에서 GM대우가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 [신보는 보증료(0.3%p 차감), 보증비율(95%) 우대]
나들가게 지원 협약보증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은행이 신보에 특별출연하는 25억원을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유통업체에 대한 보증을 지원 [신보는 보증료(5년간 0.2%p 차감), 보증비율(최대 90%) 우대]
공동구매지원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이 신보에 출연하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의 20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신보 추천기업에 대한 공동구매 보증을 지원 [신보는 보증료(5년간 0.3%p 차감), 보증비율(5년간 90%) 우대]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회사, 대기업 등이 신보에 출연하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의 20배 범위 내에서 신보와 은행이 상호 추천하거나, 신보와 혁신센터가 상호 추천한 업체에 대해 보증을 지원 [신보는 보증료(5년간 0.2%p 차감), 보증비율(3년간 100%, 이후 3년간 95%) 우대]

자료: 신용보증기금

특별협약보증의 공급 실적 부진에 대하여 국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²⁾가 있었음에도 보증 공급률이 저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증 공급률 제고를 위하여 수요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출연기관의 추천을 독려하는 등 신용보증기금의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납부액 소진율 제고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이란 협약기관이 신보에 보증료 지원금을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약기관 추천업체, 신보 중점지원대상 등이 부담하는 보증료의 일정부분을 협약기관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약보증을 의미한다. 2018년까지 협약기관의 보증료지원금 납부액은 457억원이며, 이 중 253억원을 소진하여 잔액은 204억원이다.

[보증료지원금 활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합계
납부금액(A)	91	121	181	64	457
소진금액(B)	40	76	76	61	253
지원금 잔액(C)	51	96	201	204	204

주: 1. 2014년 체결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없음

2. 지원금잔액(C_y) = 납부금액(A_y)-소진금액(B_y)+전년도 지원금잔액(C_{y-1})

자료: 신용보증기금

2018년 현재 유효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사용액을 살펴보면 다수의 보증 프로그램의 지원금 소진율이 저조하였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경우 3~5년간 지원할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협약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일부 협약보증(2015~2017년 협약)의 지원금 소진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신용보증기금은 지자체 공기업 지역상생보증, 나들가게 지원 협약보증 등 공급 실적이 부진한 특별협약보증의 실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017회계연도 결산) 신용보증기금은 한도대비 보증공급 실적이 저조한 특별협약보증의 실적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대상이 주로 미래 성장성 우수기업이나, 에너지신산업 사업추진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약기관의 추천을 독려하고 수요자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보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유효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협약내용]

(단위: 억원)

구 분	협약내용	협약 기관	협약 일	협약 금액	납부 금액	사용 액
V-PLUS 보증	(대상) 미래성장성 우수기업 (보증료지원) 3년간 0.2%p	기업	'15.5	-	69	63
		신한	'15.5	-	40	36
		우리	'15.5	-	40	29
		국민	'15.5	-	48	32
		하나	'15.5	-	25	18
		농협	'15.8	-	20	12
		부산	'15.10	-	6	4
		경남	'15.10	-	6	3
		대구	'15.11	-	4	2
		광주	'16.04	-	2	1
		SC	'16.05	-	2	0.8
		전북	'16.10	-	1	0.5
씨티	'17.02	-	2	0.8		
메디시티	(대상) 보건의료 관련 기업(대구) (보증료지원) 산출된 보증료에서 0.7% 차감한 차액을 3년간 지원	대구	'15.4	5	0.8	0.2
GPS	(대상)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 수출기업 (보증료지원) 3년간 0.2%p	신한	'15.6	15	5	0.02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활성화	(대상)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 기업(경남) (보증료지원) 5년간 0.4%p	기업	'17.4	-	2	0.4
		신한	'16.9	-	3	0.3
ICT 융복합기업	(대상) ETRI 추천 기술력 보유 기업 (보증료지원) 3년간 0.2%p	우리	'16.11	-	3	0.2
에너지 신산업 (ESS+ 신재생에너지)	(대상) 에너지신산업 사업추진 기업 (보증료지원) 3년간 0.2%p	신한	'17.2	-	2	2
		국민	'17.6	-	2	0.6
		우리	'17.6	-	2	0.2
		기업	'17.9	-	2	0.2
		농협	'17.9	-	2	0.1
하나	'17.9	-	2	0.2		

(단위: 억원)

구 분	협약내용	협약 기관	협약 일	협약 금액	납부 금액	사용 액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보증료지원) 5년간 0.3%p	기업	'17.12	-	10	0.6
		국민	'18.6	10	10	0.2
		우리	'18.7	10	5	0.1
		수협	'18.7	1	1	0.03
		하나	'18.12	2	2	0
신성장 고용창출	(대상) 신성장, 고용창출, 창업기업 등 (보증료지원) 최장 5년간 0.4%p 이내	기업	'17.6	100	10	5
		농협	'17.9	20	10	1
M&A	(대상) 신한은행 추천기업 (보증료지원) 3년간 0.2%p	신한	'17.4	1	1	0.1
NEST 기업	(대상) Start-up NEST 선정기업 (보증료지원) 3년간 0.2%p	우리	'17.5	2	2	0.5
혁신성장 선도기업	(대상) 신성장, 고용창출, 창업기업 등 (보증료지원) 최장 5년간 0.4%p 이내	국민	'18.1	60	20	3
		신한	'18.3	40	4.8	2
		부산	'18.4	1	1	0.4
		경남	'18.4	3	3	1
		우리	'18.7	40	15	2
		수협	'18.7	3	3	0.1
		광주	'18.10	2	2	0.02
		하나	'18.12	14	14	0.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펀드	(대상) 대기업 추천 협력 중소기업 (보증료지원) 3년간 0.2%p	우리	'18.3	-	2	0.1
창업기업 보증료지원 (S-Plus, Blue-Elite)	(대상)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 (보증료지원) 5년간 0.2%p	기업	'15.12	50	6	4
		농협	'16.1	50	8	2
		우리	'16.2	50	7	3
합 계					427.6	232.27

주: 협약금액이 미기재된 건들은 협약서에 별도의 협약금액을 정하지 않고 협약은행과 상호 협의하여 추후 보증금 규모를 결정

자료: 신용보증기금

2-2. 보증연계투자의 적정 규모 재검토 필요

가. 현황

보증연계투자 사업³⁾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 신청기업이나 이용기업이 직접투자를 신청할 경우, 사업전망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 401억 4,000만원 중 98.4%인 394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보증연계투자	40,140	40,140	0	40,140	39,498	98.4	0	642

자료: 금융위원회

보증연계투자는 2004년 7월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주식 또는 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2011년 감사원 등에서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함에 따라 2011년부터 신규 투자를 중단하였으나, 2013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보증연계투자가 재개되었다.

[보증연계투자 개요]

구분	주요 내용	
투자대상	기술력, 사업성이 우수하고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중이거나 투자·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투자종류	주식(보통주, 우선주), 사채(전환사채 ¹⁾ , 신주인수권부사채 ²⁾)	
투자기간	주식 3~10년, 사채 3년(투자 최대 허용기간은 법인 설립후 17년 이내)	
한도	총액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의 10% 이내
	기업당	같은 기업당 30억원으로 보증금액의 2배 이내

주: 1) Convertible Bond,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2) Bond with Warrant, 발행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자료: 신용보증기금

3)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08

나. 분석의견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보증연계투자의 적정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61개 기업에 대하여 총 393억 6,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투자잔액은 1,467억 4,700만원이다. 보증연계투자 결과 투자수익 11억 6,800만원, 감액손실 33억원을 실현하여 총 21억 3,200만원의 손실(손실률 △1.9%)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4년 보증연계투자 재개 이후 첫 손실이다.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현황(2014~2018)]

(단위: 백만원, 개, %)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30,000	25,000	35,000	40,000	40,000
투자액	24,009	25,000	35,000	39,996	39,369
(창업기업 지원)	12,910	12,840	17,510	27,796	31,970
(일반기업 지원)	11,099	12,160	17,490	12,200	7,399
-업체 수	27	30	45	62	61
(창업기업 수)	15	17	24	47	51
(일반기업 수)	12	13	21	15	10
투자원금 회수	2,888	3,274	3,719	3,753	4,100
-업체수(전액회수)	2	3	3	3	3
-업체수(일부회수)	5	4	8	8	16
투자잔액	32,563	54,175	83,655	114,778	146,747
-업체 수	39	65	105	158	213
투자수익(A)	1,643	3,211	3,603	6,130	1,168
-매각차익	1,551	3,146	3,394	5,611	311
-배당금 등	92	65	210	519	856
감액손실(B)	-	115	1,800	5,120	3,300
-업체 수	-	2	2	6	4
투자손익(A-B)	1,643	3,096	1,803	1,010	△2,132
투자수익률					
-연간	14.4	9.5	3.3	1.2	△1.9
-누적	0.6	3.5	3.9	3.6	2.0

주: 1. 연간투자수익률=연간투자손익/직전연도말 투자잔액

2. 누적투자수익률=누적투자손익/누적투자금액

자료: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중기경영목표를 수립하면서 향후 유동성과 기본재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도 보증연계투자금액의 장기 미회수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보증연계투자의 확대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보증연계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의 중장기적인 유동성과 기본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연계투자 확대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향후 보증연계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유동성 및 운용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투자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1. 주식
2. 전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5) 2019년 600억원, 2020~2022년 매년 1,0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22년 보증연계투자 규모는 4,274억원까지 확대될 것이 예상되어 법정한도 1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가. 현 황

판매장려수당¹⁾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은행 상담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은행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당초 계획은 4억 8,200만원이었으나, 4억 6,900만원으로 수정되어 51.2%인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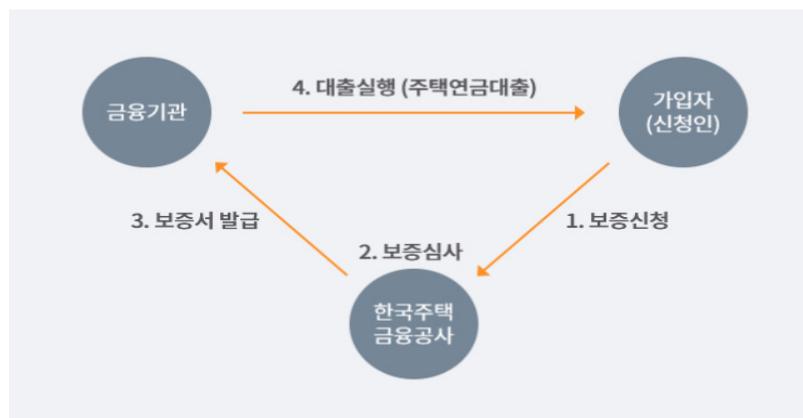
[2018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판매장려수당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판매장려수당	482	469	0	469	240	51.2	0	229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²⁾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황준연 예산분석관(scolll@assembly.go.kr, 788-4623)

- 1) 코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연보계정) 2631-304
- 2)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 9억원 이하)의 소유자가 가입 가능하며,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는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6년 내집연금 3중세트³⁾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출시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총액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⁴⁾하고, 동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0.3~0.4%를 판매장려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 대출 및 소득현황을 잘 아는 은행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행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판매장려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

구 분	판매장려수당 지급금액
선순위대출 금융기관 = 1곳	선순위 상환용 개별인출금 × 자·타행별 지급률 ¹⁾
선순위대출 금융기관 ≥ 2곳	∑ {선순위 상환용 개별인출금 × 자·타행별 지급률 ¹⁾ }

주: 1) 선순위 대출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같은 경우는 0.4%, 다를 경우에는 0.3%.
단, 선순위 대출이 공사가 유동화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해 온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인 경우 0.3%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금융위원회는 판매장려수당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확대를 위하여 판매장려수당 요율을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판매장려수당 지급 건수는 840건으로 계획(1,714건) 대비 49.0% 수준에 불과하였다. 2016년(23.7%), 2017년(26.2%)에 비하여는 비율이 상승했으나, 실제 판매장려수당 지급액이나 전환 건수는 2017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다.

- 3) 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
- ②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만 40세 이상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약정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금리우대분은 60세 이후 연금 전환시점에 '전환장려금'으로 일시 지급)
- ③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5억원 미만으로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2.7%(18년 기준)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
- 4)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연금지급한도(주택연금을 통해 100세까지 지급받게 되는 연금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50%에서 70%까지 확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2월부터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가 90%로 확대되었다.

[2016~2018년 판매장려수당 지급 계획 대비 실적]

(단위: 건, 백만원, %)

		주택담보대출의	판매장려수당 지급대상		평균 상환액(B/A)	수당 지급액(C)	평균 지급률(C/B)
		주택연금 전환건수	건수(A)	금액(B)			
2016	계획	3,440	2,600	260,000	100	910	0.35
	실적	1,128	617	47,159	76	173	0.37
2017	계획	4,560	3,510	245,700	70	860	0.35
	실적	1,643	919	70,401	77	261	0.37
2018	계획	2,448	1,714	130,264	76	482	0.37
	실적	1,732	840	64,393	77	240	0.37
비고	-		금융기관 경유 공사접수 건		지급대상금액/ 지급대상건수	총 집행액	수당지급액/ 지급대상금액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외부환경 영향, 은행의 이자수익 감소 우려, 고객의 은행 상담 미인식의 사유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입장이다. ① 외부환경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입 보류, 가입자의 등록면허세 부담발생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당초 계획(16,040건)의 63.8%인 10,237건에 그쳤고, ②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 금리 간 격차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시키는데 소극적이며, ③ 고객 요인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에서 모두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상담고객은 공사만을 상담 창구로 인식하고 있어 전환 물량이 계획 대비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 중 ① 주택연금 가입 저조와 관련된 외부 환경 요인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고, ③ 고객 요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홍보 강화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② 은행의 역마진으로 인한 주택연금 전환 실적 저조 현상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제도의 재설계 없이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8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3.39%, 주택연금 금리는 2.68%로 금리차가 0.71%p 수준인데 비해 판매장려수당은 상환액의 0.3~0.4% 수준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판매장려수당을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이자수입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받기 어렵다. 자행 대출을 전환할 경우 2018년 평균 역마진 3,800만원과 판매장려수당 평균 지급액 2,000만원의 차액인 1,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은행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전환 상담에 응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2016~2018년 주택연금 전환에 따른 금융기관 금리차 현황]

(단위: %, %p, 백만원)

구 분	주담대금리(A)	주택연금금리(B)	금리차(A-B)	역마진 ¹⁾	판매장려수당	
2016년	7월	2.66	2.29	0.37	47	46
	8월	2.70	2.17	0.53	56	38
	9월	2.80	2.16	0.64	46	27
	10월	2.89	2.20	0.69	34	18
	11월	3.04	2.26	0.78	43	20
	12월	3.13	2.36	0.77	48	24
	평균	2.91	2.34	0.57	46	29
2017년	1월	3.16	2.41	0.75	44	22
	2월	3.19	2.35	0.84	52	24
	3월	3.21	2.33	0.88	67	29
	4월	3.21	2.33	0.88	90	37
	5월	3.26	2.31	0.95	54	21
	6월	3.22	2.32	0.90	43	17
	7월	3.28	2.33	0.95	40	15
	8월	3.28	2.32	0.96	52	20
	9월	3.24	2.32	0.92	44	17
	10월	3.33	2.37	0.96	49	19
	11월	3.39	2.47	0.92	62	26
	12월	3.42	2.62	0.80	31	14
평균	3.27	2.37	0.90	52	22	
2018년	1월	3.47	2.64	0.83	53	23
	2월	3.46	2.63	0.83	54	24
	3월	3.45	2.62	0.83	34	15
	4월	3.47	2.67	0.80	25	12
	5월	3.49	2.64	0.85	50	22
	6월	3.46	2.67	0.79	35	16
	7월	3.44	2.69	0.75	47	24
	8월	3.36	2.66	0.70	44	24
	9월	3.29	2.65	0.64	38	22
	10월	3.31	2.68	0.63	30	17
	11월	3.28	2.78	0.50	24	17
	12월	3.19	2.81	0.38	23	23
평균	3.39	2.68	0.71	38	20	
전체 평균	3.19	2.46	0.73	45	22	
비고	-	-	-	개별인출금 ²⁾ × 금리차(A-B)	-	

주: 1) 역마진의 경우 1년치만 고려

2) 선순위채권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인출한 금액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시 “주택금융공사는 판매장려수당 운영 관련, 자행전환의 경우 전환에 따른 역마진을 감안하여 수당요율을 높이며 타행전환의 경우 수당요율을 낮추는 등 판매장려수당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이후 지급요율의 조정과 관련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판매장려수당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주택연금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주택연금 공급 확대, 홍보 강화, 판매장려수당요율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 시정요구로 채택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액 감액 편성, 주택연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일시 인출한도 확대(70→90%)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으나 판매장려수당요율 체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매장려수당은 자행전환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0.4%, 타행전환의 경우 상환액의 0.3%가 지급된다. 타행전환의 경우 주택연금 취급 은행 입장에서 타은행의 고객을 유인해 오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행전환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전환에 따른 역마진이 발생하는 등 은행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전환에 응할 유인이 낮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판매장려수당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주택연금 상품성 강화, 자행전환의 수당 지급 요율을 높이고, 타행전환의 수당 지급 요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 등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신용보증기금 장기보증 운용의 문제점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10
2	한국산업은행 출자회사 현황 분석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17
3	한국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의 보통주 확대 방안 검토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4
4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의 향후 청산 후 수익금 처리방안 마련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8
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출자사업 예산 규모 과다 추정 지양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입 결산은 3,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순증하였다. 이는 명예퇴직수당 환수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2018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	-	-	31	31	-	-	100.0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2018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7억 9,4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를 통해 확보되었다. 이 중 56.5%인 66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 7,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	-	11,794	6,664	2,152	2,977	56.5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자산은 18억 900만원이고 부채는 없다.

자산은 유동자산 4억 8,900만원, 일반유형자산 9억 2,400만원, 무형자산 3억 9,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순증하였다. 이는 2018회계연도 신설된 사회적참사특조위의 미완료 연구용역 관련 선급금, 공작물·비품 등의 취득, 소프트웨어 관리전환 등에 기인한 것이다.

[2018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809	0	1,809	순증
Ⅰ. 유동자산	489	0	489	순증
Ⅱ. 투자자산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924	0	924	순증
Ⅳ. 무형자산	396	0	396	순증
Ⅴ. 기타비유동자산	0	0	0	
부 채	0	0	0	
Ⅰ. 유동부채	0	0	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순 자 산	1,809	0	1,809	순증
Ⅰ. 기본순자산	1,809	0	1,809	순증
Ⅱ. 적립금 및 양여금	0	0	0	
Ⅲ. 순자산 조정	0	0	0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9억 4,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6억 7,900만원, 관리운영비 42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100만원이다.

[2018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79	0	679	순증
가. 프로그램 총원가	679	0	679	순증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II. 관리운영비	4,298	0	4,298	순증
III. 비배분비용	0	0	0	
IV. 비배분수익	31	0	31	순증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946	0	4,946	순증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VI)	4,946	0	4,946	순증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의 2018년도 기말순자산은 18억 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순증하였다.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67억 5,5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49억 4,6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66억 6,400만원과 무상이전수입 9,600만원, 기타재원조달 2,700만원, 국고이전지출 3,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0	0	0	
II. 재정운영결과	4,946	0	순증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755	0	순증	
IV. 조정항목	0	0	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809	0	순증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집 필

총괄 | 김일권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춘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황준연 예산분석관
이광근 예산분석관
안병후 예산분석관

지원 | 황아람 예산분석관보
인정은 행정실무원
유경민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81-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